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2001.10.

연구자: 문준조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서 론	7
제 1 절 문제의 제기	7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8
제 2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추진경과	11
제 1 절 중국의 WTO가입 목적	11
제 2 절 중국의 GATT/WTO 가입정책의 변화	13
1. 의 의	13
2. GATT복귀정책	13
3. WTO가입 정책으로의 전환	15
제 3 절 가입절차	18
제 3 장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EU 협정 및 WTO 다자간 협의	21
제 1 절 의 의	21
제 2 절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	22
1. 미국의 기본전략	22
2. 주룽지 총리의 1999년 4월 제안	23
3. 1999년 11월 15일 쌍무적 협정	25
4. 미국의 對中 PNTR 지위 부여	26
5. 2001년 6월 14일 3분야에 관한 최종합의	31
제 3 절 EU와의 쌍무적 협상	32
1. 2000년 5월 19일 EU·중국 협정	32
2. 2001년 6월 20일 보험 등 서비스분야 조정	34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	35
1.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35
2. 농산물 시장개방	37

3. 공산품 시장개방	38
4.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41
5.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46
6. 유통, 무역 및 운송 분야 개방	47
7. 기타 서비스 시장개방	51
제 5 절 미·중 쌍무적 협정상의 무역장벽완화 및 특약조항	54
1. 중국의 WTO가입후의 무역장벽완화조치	54
2. 특약조항(Specific Provisions)	58
제 6 절 WTO 실무작업단회의와 다자간 합의	61
제 7 절 갈등의 소지	63
1. 의 의	63
2. 내국민대우의 실행	63
3. 무역관련투자조치	64
4. 이행과정평가(Transition Review Mechanism)	64
5.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 보조금	65
6. 국제수지방어조치(Balance of Payments Measures)	65
7. 비시장경제조항(Non-market Economy Provisions)	65
8.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66
제 4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	69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69
제 2 절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72
1. 사회주의시장경제와 WTO 규범	72
2.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개혁	73
제 3 절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86
1. 1994년 대외무역법	86
2. 대외무역권의 확대현상	94
3. 관세인하	104
4. 비관세장벽의 완화	106

제 4 절 조세법제	109
제 5 절 외환관리법제	112
제 6 절 외국인투자법제	115
1. 2000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	115
2. 2001년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	119
3. 2001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	126
제 5 장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법제개혁 전망	133
제 1 절 WTO가입과 중국경제	133
1. 의 의	133
2. 긍정적 측면	135
3. 부정적인 측면	137
4. 산업 부문별 영향	138
제 2 절 법령의 정비방향	141
제 3 절 공산당 경제지도원리 및 헌법	147
1. 경제지도원리의 변화	147
2. 헌 법	148
제 4 절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완비	151
1. 계획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의 정비의 필요성	151
2.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의 필요성	152
3.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입법추진	154
4. 정부의 경제관리권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155
5. 안정적·통일적 시장경제법제의 확립	157
6.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간기업의 활성화	159
제 5 절 대외무역법 분야	161
1. WTO가입이 대외무역법에 미칠 영향	161
2.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확대	163
3. 덤핑방지제도의 강화	165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166

5. 수출환급제도의 강화	167
6. 무역관련 환경보호법의 강화	168
7. 외환관리와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의 변화 전망	168
8. 서비스교역법	173
9. 대외운송	176
제 6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야	178
1. WTO가입의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178
2.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 전망	180
3. 외국인투자기업조세제도	193
제 7 절 중국의 법집행의 실효성문제	196
1. 의 의	196
2. 법의 지배의 불충분성	196
3.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	196
제 6 장 결 론	199
참고문헌	20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중국은 1949년 공산당 정부 수립이후 30년 동안 고립(isolation)과 자급자족(self-sufficiency)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이후 1980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의 가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경제기구에 가입하여 왔다. 한편, 제2차세계대전 직후 형성되어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구성하고 있던 3개의 국제제도중의 하나인 GATT는 47년 동안(1947-1994) 체약국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중심적인 과제로 하는 국제조약이었다. GATT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 1995년 1월 1일 WTO라는 새로운 국제조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제무역제도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1982년 GATT에서 옵서버 자격을 얻었으며 4년후인 1986년 7월에는 GATT 사무총장에게 GATT 회원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GATT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좌절되었으며 WTO출범이후에는 WTO 가입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쌍무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국내법령을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준비를 하여왔다.

중국의 GATT/WTO가입신청은 국제법, 세계정치 및 범세계적 경제질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세계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그 가입을 위하여 수많은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중국의 가입문제를 협의해온 WTO 실무작업단은 가입조건 등을 담은 보고서와 가입 의정서 등을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한 뒤 2001년 11월 카타르에 도하서 열리는 정기 각료회의에서 가입을 승인하기로 함으로써 15년을 끌어온 WTO가입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특히 1986년 GATT 가입을 선언한 이후 폐쇄적인 국내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 기준

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93년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선언하여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비록 사회주의적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 EU등 주요국가들과 체결한 쌍무적 협상의 내용을 보면 향후에도 중국의 국내법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WTO 회원국들과의 쌍무적 무역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문적으로 또한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국제법 또는 세계정치의 관점에서 중국의 WTO 가입문제 자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거나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WTO의 가입과 관련된 문제들을 순수한 학문적 접근방법보다는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 작성되었다.

이 연구서는 중국이 GATT/WTO가입을 위하여 중국이 미국, EU 등과 체결한 쌍무적 협정 등을 통해 공약한 시장개방일정 및 중국의 가입조건 등을 통해 중국의 대외무역과 시장개방 분야의 법제에 관한 전망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GATT/WTO 가입에 대비하여 중국이 현재까지 추진하여온 국내법 정비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서는 제2장에서는 중국의 GATT/WTO 가입추진경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도 WTO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중국이 GATT/WTO체제에의 참여 형식과 관련하여 복귀(resumption)에서 가입(accession)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절차는 어떠한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WTO가입을 위해 미국 및 EU와 체결한 양자협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현재 37개국과의 쌍

무적 협상을 끝냄으로써 - WTO 실무작업단의 가입의정서 작성 및 가입을 위한 WTO 각료회의의 결의 및 중국에서의 후속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001년 11월 늦어도 2002년 초에는 가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의 WTO가입의 향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미국 및 EU 등 주요국가와의 협상의 결과 및 중국의 WTO가입실무작업단의 다자간 합의문서의 분석과 이를 통한 중국의 향후의 국내법과 제도 및 정책상의 변화의 기초와 방향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 GATT/WTO 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던 국내법 정비 현황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다. 물론, 특히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중국의 국내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 모두가 GATT/WTO체제에의 부합성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서에서는 GATT/WTO 규범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을 소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WTO가입 이후 중국의 법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헌법의 개정방향, 시장경제법률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향을 먼저 다루고 투자 및 무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분야, 외국인투자분야로 나누어 각 쟁점별로 관련 조문과 제도 그리고 정책시행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제정비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법집행상의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추진경과

제 1 절 중국의 WTO가입 목적

중국이 GATT/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WTO의 가입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대외신인도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명실공히 모든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경제적 이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는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국제무역규범을 형성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바, 그 가입으로 중국기업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차입과 해외기채가 용이해 질 전망이다.

둘째,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위한 개혁은 상호 상승 작용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내실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경제·무역체제를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개혁·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중국의 경제체제를 내실화하고 중국의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 EU를 포함한 주요 무역국으로부터 WTO협정상의 최혜국대우를 부여받게 되어 제3국의 기업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WTO 회원국의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중국의 개발도상국의 자격으로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중국 기업들은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선진국 시장에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WTO 협정에 의하면 어떠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WTO 협정에 따라 스스로 개도국임을 선언(self-declaration)하면 되지만 중국의 경우 그러한 선언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 EU, 기타 주요 선진국들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선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선진국들과의 쌍무적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인정여부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다.

한편 중국은 낮은 1인당 GNP 등을 이유로 WTO 개별협정별로 개발도상국의 지위의 가입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의 GDP총액이나 세계무역에서 점하는 위치를 내세워 선진국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¹⁾ 그러나, 1999년 11월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에서 중국은 농산물, 비관세장벽, 보조금, 상계관세, TPRM(무역투자정책검토제도) 등 각 개별협정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성공하여 일반 회원국보다 장기의 보조금과 비관세장벽 폐지기간, 경제력에 걸 맞는 무역정책 검토간격(2년이 아닌 4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었다.²⁾

중국이 2000년부터 WTO 가입에 대해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추세도 둔화되었으며 무역흑자규모나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대외수출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기술이전 효과로 중국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³⁾

또한,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한 미국측의 시장개방 압력을 WTO에 조속히 가입함으로써 회피할 필요가 있었으며, WTO 뉴 라운드가 개시되전에 가입을 마무리함으로써 뉴 라운드(주로 농산물 교역자유화)에서 유리

1) 세계은행의 World Bank Report에 의하면 중국의 GDP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1993년 이미 2조 7,400억달러로 일본의 2조 6000억달러를 추월하였고 미국의 6조 2,600달러에 이어 이미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속도라면 202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 실무작업단회의가 2001년 8월 작성한 합의문서에서는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규정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을 2년이나 4년이 아닌 거의 매년 하도록 하고 있다. KIEP Weekly Review, 2001년 9월 17일, p.20.

3)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한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속히 가입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가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뉴라운드의 성격상 2004년 이후에야 가입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임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제 2 절 중국의 GATT/WTO 가입정책의 변화

1. 의 의

WTO 가입자격을 대외통상관계의 설정이나 통상현안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state)나 독립된 관세영역(independent customs area)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중국의 가입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중국이 어떠한 자격과 지위로 WTO에 가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WTO에 가입하는 방법에는 WTO 협정 제11조에 의하여 원체약국 자격으로 복귀(resume)하는 방법과 제14조에 의하여 복귀하는 방법 그리고 제12조에 의하여 일반회원국으로 신규가입(accede)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 중국은 1986년 7월 가입협상 당시에는 GATT 원체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방식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1995년 WTO 협정의 발효시점이 이미 지났고 원체약국 지위 가입주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약해지자 중국은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일반회원국 가입절차에 따른 신규가입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GATT복귀정책

중국은 1947년 GATT의 원서명 23개국중 하나였으며, 1949년 10월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철수한 후 GATT, UN 등 대부분의 국제조직에서 중국의 자리(China seat)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는 1950년 3월 일방적으로 GATT 탈퇴를 선언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1년 유엔에 복귀한 후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서 대부분의 국제조직에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1980년부터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82년 9월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으며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시 1984년 특별 옵저버가 되어 GATT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다.⁴⁾

1986년 7월에는 GATT 사무총장에게 GATT 협정 당사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의사를⁵⁾ 통보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86년 10월 GATT 회원국 자격 복귀신청을 제출한 후 수개월 후 중국은 GATT 체약국들(Contracting Parties)에게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각서(memo-randum)를 제출하는 등 GATT 복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7년 3월 4일 GATT 사무국은 실무작업단(working party)을 임명하였다. 1987년 10월 중국의 지위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작업단이 최초로 회합을 가졌을 때에는 중국의 상품(goods)에 관한 무역제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

또한 동년 9월부터 중국은 비체약국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완전히 참여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원체약국이 된다”는 계획에 따라 복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1994년 4월 16일 모로코에서 최종의정서(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와 MTO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우루

4)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ring2000.htm>.

5) 중국은 국민당 정부가 1949년 이미 합법(legitmate) 정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그 탈퇴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이완 당국에 의한 GATT 탈퇴는 당연무효(null and void)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은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으며 새로운 가입의 신청이라기 보다는 GATT내의 원가입국의 지위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과이 라운드 기간중에 그리고 1994년 동안 내내 GATT 복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또한 중국은 1987년부터 GATT참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으며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건으로 인해 협상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1992년부터 재개되어 중국은 중국의 가입에 관한 GATT 실무작업단의 후원하에 미국, EEC, 일본 등 몇몇 일부 GATT 체약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GATT 체약 당사자들(1995년 1월 이후에는 WTO 회원국들) 특히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현재 및 장래의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을 감안해 볼 때 GATT 체제에 중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중국의 참여는 GATT 체제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각 체약 당사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1992년 10월 중국의 미국과 중국간에 1994년말까지의 중국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담고 있는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됨으로써 중국의 참여는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그 후 1994년 12월 20일 중국의 가입에 관한 GATT 실무작업단은 그 동안 19차례 회의에서의 중국의 지위, 참여조건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의 GATT 가입의정서 초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 EU가 중국시장접근과 무역자유화를 위한 시장개방조치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강화하였고, 중국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은 중단되어 1992년 미국과 서명한 시장접근에 관한 합의의 이행까지도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1995년 1월 31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중국의 가입의제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삭제됨으로써 중국의 노력은 무산되었던 것이다.

3. WTO가입 정책으로의 전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ATT 체약국 지위의 복귀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해지자(즉 중국에 원체약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후 중국은 가입을 위한 오랜 협상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국이 쌍무적인 교섭을 시작하게 되자 중국의 가입에 대한 다른 WTO 회원국들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과 무역정책의 주요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이 분명해졌다.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가 1995년 7월 11일 중국에 대해 옵서버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무역대국이면서도 여전히 WTO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5년 중국의 GATT 가입에 관한 실무작업단은 WTO 실무작업단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검토범위도 확대되어 종전의 상품교역이외에 서비스교역, 비관세 조치에 관한 새로운 규칙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게 되었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WTO 가입협상을 재개하였다. 1996년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평균 23%의 관세율 인하를 발표했고, 1997년에는 WTO 가입을 목적으로 오는 2004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7%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클린턴(W. J. Clinton)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중국의 WTO가입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측이 상당한 양보를 한 제안을 거절하였다.⁶⁾ 그 후 1999년 9월 제7차 APEC정상회담이후 미국과 중국간의 가입협상이 재개되었고 장쩌민 주석의 유럽순방이 개시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접근이 빨라지게 되어 1999년 11월 15일 Charlene Bashefsky 통상대표와 중국의 石光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EU와의 2000년 5월 19일 쌍무적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2001년 6월 14일과 22일에도 미국, EU와 현안으로 남아 있던 농업보조금 문제와 보험 및 유통부문에 관한 최종 합의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멕시코와의 쌍무적인 협의도 마무리 지었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농업보조금 8.5%를 관철시켜 개도국 지위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 승인을 받겠다는 시간적 압박감에 부닥쳐 쟁점사항에서 적지 않은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

6) William J. McMahon, "Cina-U.S. Reach WTO Deal",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NewArchive/secure/1999/november..

고 있다. 미국과는 중국 진출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 문제는 미국 AIG 등 이미 진출한 보험사에 대한 지사설립을 무제한 허용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앞으로 진출할 보험사와의 차별 대우에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외국보험사의 지사확장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절충함으로써 가입협상을 타결했다. 중국은 100% 출자로 이미 진출해있는 미국보험사 AIG가 확보한 보험사 지사확장권리를 인정하되 EU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인정해준다는 선언적인 합의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마지막 난관이었던 멕시코와의 개별협상도 마무리짓게 되어 WTO의 37개 회원국과 쌍무협상을 타결하였다. 2001년 6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6차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중국가입 실무작업단회의를 통해 미국·EU를 제외한 기타 주요 가맹국이 미국·EU와 중국간의 합의내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진 후 핵심 쟁점에 합의했으며⁷⁾ WTO 중국가입반의 루이지라르 의장과 중국측 수석대표인 룡융투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2001년 7월 4일 가입협상회의를 마친 뒤 “서비스 부문중 외국보험사의 지사 확장과 관세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7월 16일 제17차 실무작업단 회의를 재개하였다.

WTO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협상이 완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9-13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과 대만의 동시 가입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다. WTO의 정식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WTO사무국에 기탁하고 1개월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이 정회원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WTO에는 14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지난 86년 가입실무작업단이 설치된 지 15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95년 출범한 WTO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

7) WTO 중국가입반 의장을 맡고 있는 루이지라르 스위스 대사와 중국측 수석대표 룡융투(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7월 4일 제네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부문 중 외국 보험사의 지사 확장과 관세 쿼터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입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반대로 15년째 미루어져 왔다. 미국은 그 동안 미흡한 공산품 및 농산물 시장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요구하여 왔는 바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보다 많은 시장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를 가진 반면 중국은 가능한 한 시장개방 시기를 늦추고, 그 폭을 줄이려 하였던 것이다.

제 3 절 가입절차

WTO가입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가진 과정이다. 중국의 WTO 가입절차를 살펴보면, 현재 주요 가맹국과의 '양자간 협의'와 전체 가맹국과 협의하는 '다자간 협의' 등 2가지 계통으로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양자간 협의에서는 관세인하, 서비스 개방 등에 대하여, 다자간 협의는 '중국 WTO 가입 실무작업단'(Working Party on China's Accession to the WTO)에서 경제·무역 심사, 규정적용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WTO에 가입하려면 우선 가입 신청국은 WTO 사무국에 무역·경제정책 등을 설명한 보고서와 함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회원국에게 회람시킨다.⁸⁾ 그후 일반이사회의 의장은 WTO내에 가입 실무작업단(working party)을 설치하고 가입 신청국은 가입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입 신청국은 자국의 경제·무역체제를 설명한 메모랜덤을 양허계획표, 관련 법령의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⁹⁾

가입 신청국의 대외무역제도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실무작업단 참가국은 가입 신청국과 양자협상을 개시하는데 실무작업단 검토와 양자협상이 병행적으로 진행된다. 중국의 가입과 관련하여 양자협상은 회원국 전부가 아니라 실무작업단에 참가한 주요 관심국을 대상으로 전개되는데,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 케언즈 그룹국가 등 세계무역에서 점

8) WTO 설립협정 제12조.

9) 실무작업단 보고서는 가입희망국의 현행 무역정책·제도, 관세·비관세 장벽 등을 소개하는 일종의 개괄적 현황보고서로, 가입희망국의 사무위원이 WTO 사무국 위원과의 다자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과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세양허,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 시장접근(market access)에 대한 양허협상을 진행하여왔다.¹⁰⁾

이와 같이 중국이 미국, EU 등 WTO 회원국들과 타결한 양자협상 결과들은 통합하여 ‘통합 양허표’를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양허표는 중국이 WTO 가입과 관련하여 각국과 벌인 양자협상 결과중 분야별 최대 양허내용을 통합시켜 놓은 것으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 걸쳐 중국이 개방, 철폐, 인하하기로 약속한 관세, 비관세 양허내용과 일정을 분야별·품목별로 자세히 기록하게 되며 시장접근일정(market access schedule)이라고도 부른다.

WTO 사무국은 각 개별분야, 품목별로 중국이 제시한 최선의 제안사항(applicant's best offer)이 반영·통합된 통합양허표를 실무작업단 보고서(Working Party Report)와 함께 가입의정서 결정초안(Decision and Draft Protocol of Accession) 부속서류로 첨부시킨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양자협상을 선택한 37개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벌이면서 관세 인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어느 회원국과 규제완화 측면에서 유리한 합의 내용에 도달하면 그것이 다자간 협상으로서 WTO 실무작업단 보고서에 채택되어 최종적으로 공통의 결론이 되는 것이다.¹¹⁾

통합양허표는 중국의 WTO 가입조건, 개별협정상의 지위, 시장접근의 기본방향, 원칙 등을 명시한 “본문”, “특약조항”(specific provisions)과 함께 “중국 WTO 가입의정서 초안”(the Draft of WTO Accession Protocol)의 구성부분이 되며, 주요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어 수정을 거친 후 확정되면 가입의정서의 일부로 중국의 기탁서와 함께 WTO 일반이사회 각료회의에 회부된다. 이사회에서는 컨센서스 방식에 의해 이를 통과시키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원국들이 원할 때에는 가입 신청국의 WTO 회원자격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때 3분의 2이

10) 교섭방식은 관심국이 요구서(request)를 제시하고 신청국이 이에 대해 offer를 내면 다시 관심국이 counter-offer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 射手矢好雄, “中國ビジネス最前線” <43>, NBL No.697(2000.9.15) 54~55면 참조.

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초안이 통과되며 이때 1단계 공식가입절차가 끝나게 된다. 부속양허표는 통과되면 가입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로 본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부속서가 된다. 통과된 가입의정서초안(Accession Protocol)은 가입국 위임사항에 관한 사무국의 사항, WTO 협정 실행에 관한 가입국의 약속, 시장개방 일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약속문안(commitment paragraphs)으로서 추후 분쟁해결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후 가입 신청국은 필요한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없이 곧바로 국회의회의(중국의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WTO 협상 실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 동의 절차가 끝나면 가입 신청국은 WTO 협정 가입의정서 초안, 실무작업단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수락서(혹은 기탁서)와 함께 WTO사무국에 제출하고 수락서 제출후 30일 후에 WTO 정식회원이 된다. 통과된 가입의정서와 부속서류인 양허표(또는 시장접근 양허일정)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제 3 장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EU 협정 및 WTO 다자간 협의

제 1 절 의 의

198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협상대상이 된 WTO 회원국들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제분야들을 개혁하는데 꾸준한 진전을 이룩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입전 협정 등과 공약들은 (현행 WTO 요구조건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분야에 관하여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협상들 중 많은 부분이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일반적으로 폐쇄하고 보호하고 있는 경제를 WTO 회원국들이 부담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제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WTO 가입후 급격한 충격과 기타 경제적인 문제의 발생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¹²⁾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평균관세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인하하였으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제거하였고 수출보조금을 감축 또는 제거하였으며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체결하고 서비스교역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왔다. 이미 행하여진 예비적인 협정과 공약이외에도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bare minimum) 요건보다 강한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상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관심분야를 충족시켜야 한다.

WTO의 많은 회원국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관한 특별한 관심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중국이 가입하기를 기다렸다가 차기의 새로운 협상라운드에서 중국과 교섭하는 것 대신에) 쌍무적 협상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다. 쌍무적 협상을 함으로써 다른 WTO 회원국들은 그들의 협상 지위면에서 우월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훨씬

12) Bruce Stokes, "The China WTO Dilema," <http://socrates.berkeley.edu/~briewww/forum/berkeley2/strokes.html>.

빨리 그 결과로서 체결된 협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중국과 쌍무적 협상을 요청한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양국간 무역거래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 왔는데,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8월 타결지은 바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의 중요한 관문인 일본, 미국, EU와의 양자협상을 1999년 9월과 11월, 그리고 2000년 5월에 차례로 마무리 짓고 2001년 6월 28일부터 제네바에서 마지막 가입의정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0월 중국에 대하여 종전처럼 1년 단위가 아니라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 PNTR; 종전의 최혜국대우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대우조건을 중국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적용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미국, EU 등과의 협상의 경과 및 타결된 협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의 시장개방의 내용과 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 2 절 미국과의 쌍무적 협상

1. 미국의 기본전략

미국은 중국과의 WTO가입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하였다. 첫째, WTO 가입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장접근의 혜택을 얻는다. 둘째, 중국내 생산제품의 내수시장 유통에 관한 시장접근을 허용 받는다. 셋째, WTO가입 즉시 중국으로 하여금 관세인하를 얻어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과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한다. 넷째, 중국의 수입수량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한다. 다섯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¹³⁾ 규제문제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결한다. 여섯째, 3개

13) 미국은 중국이 엄격한 농산물 검역기준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국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왔다. 이에 대해서는 “China May Erect Barriers to Ag. Imports After WTO Entry”,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

의 다자간 협상, 즉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기본통신협상, 금융서비스 협상에 중국을 참여시킨다. 일 공급, 유통, 기본, 부가가치 통신, 은행, 보험, 프랜차이즈와 직접 판매, 법률과 회계, 녹음,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도록 한다.¹⁴⁾

2. 주룽지 총리의 1999년 4월 제안

1999년 3월 바세프스키 미 USTR대표가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시장개방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월에는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워싱턴에 가서 중국의 가입조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협상을 벌였으며 11월 이전에 WTO가입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 협상에서는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해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미국측은 이를 대단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중국의 대대적인 양보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대표부, 국무부 및 국가안전보좌관의 조언을 묵살하고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대신 주룽지 총리의 제안에 관한 개요를 공표하고 중국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의회에서 그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주룽지 총리의 제안에 대한 수락거부는 그때까지의 비밀협상 양보안의 공개와 맞물려 중국에서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정부는 즉각적으로 그러한 제안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으며 주룽지는 자신의 양보안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어 장쩌민은 그를 WTO 협상팀에서 제외시켜버렸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중적인 로비를 받고 중국이 주룽지의 제안을 새롭게 바꾸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5월 오히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벨그라데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과 더불어 냉각기간이 지속되었다.

com/industry/agriculture/NewsArchive/secure/1999/november/

14) 중국의 WTO가입으로 미국이 얻은 혜택에 대해서는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참조.

이 제안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시장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시장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그 동안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던 서비스 시장에서 대폭적인 개방약속이 이루어졌었다.

첫째,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수량제한이 폐지되고, 수입관세율이 인하됨. 중국측은 미국산 밀, 밀감류, 육류 등에 대한 기존의 검역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하키로 하였는데, 주요 품목별 관세는 소고기:45% → 12%, 밀감류:40% → 20%, 사과:30% → 10%, 치즈:50% → 12%, 포도주:65% → 20% 등이다.

농산물 수입쿼터에 있어서는 밀 수입 쿼터를 금년에는 730만톤, 2004년까지 930만톤으로 증가시키며(현재 미국산 밀 수입은 2백만톤 정도), 민간 수입업자도 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정부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도 폐지키로 하였다.

둘째, 공산품의 경우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쿼터 폐지에 합의하였다. 중국은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허용하며 중국내 도소매시장, 운수시장 등을 개방하며, 비료를 비롯한 일부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향후 5년내 미국기업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주요 공산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7.1%로 인하키로 하였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제조업체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제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중국내 타사제품을 수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정보기술협정(ITA)에 참가할 것이며, 반도체, 정보통신장비, 컴퓨터, 초고속 정보처리망 등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2003년까지 폐지하고, 2005년까지 정보기술 분야의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수입관세를 2005년까지 현행 80~100%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고, 주요 부품수입관세를 10%로 인하할 계획임. 또한 매년 수입쿼터를 15%씩 축소한 후 2005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하였다.

목재 및 종이제품에 대한 관세를 5%~7.5%로 인하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35%에서 5%~6.5%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비료,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쿼터 및 수량규제를 대부분 2002년까지 폐지하고, 2005년에는 완전 폐지키로 하였다.

셋째, 서비스분야의 경우 보험, 통신, 항공부문 등에서 상당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 중국은 통신시장의 독점기업인 차이나 텔레콤사를 4개 기업으로 분리하고, 이동통신장비를 기존의 유럽식 방식인 GSM대신 미국의 CDMA방식을 선택하였다.
- 외국계 은행, 보험사에 대한 진입,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완전 독자은행의 경우, 법인 설립후 8년 뒤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고, 현재 광주와 상해에만 허용된 외국보험사의 영업지역을 24개 도시로 확대한다고 약속하였다.
- 항공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각각 1개의 항공사가 양국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내 취항도시의 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3. 1999년 11월 15일 쌍무적 협정

1999년 9월에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APEC 회담이후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11월 6일에 클린턴 대통령이 장쩌민 주석과의 전화를 통하여 중국의 WTO 가입협상 재개에 합의하였고, 9일 미국에서는 바셰프스키(C. Bashevsky) 무역대표부(U.S.T.R) 대표등 대규모 대표단을 베이징에 파견하였다. 이후 양국간의 협상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 11월 15일에 타결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논제로 하여 6일간이나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동년 11월 15일 오후 13년간이나 지속되어오던 WTO 가입협상을 타결지었다. 사실 중국은 1986년 이후 WTO(GATT)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미행정부와 양자간 양허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었고, 미 의회가 인권침해문제와 핵탄두 기술유출문제, 대미무역수지 흑자문제, 코소보 사태의 반대입장 표명 등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비우호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WTO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중국은 WTO 회원국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가입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의 협정은 EU, 브라질 등 다른 회원국들과의 개별적 양자협상

의 기초를 마련하여 주었고 이에 앞에 이미 타결된 일본, 호주, 캐나다와의 양자협상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¹⁵⁾

4. 미국의 對中 PNTR 지위 부여

(1) WTO가입과 NTR지위

WTO의 가입과 미국의 국내법에 의한 NTR의 지위부여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 할지라도 미국으로부터 자동적으로 NTR의 지위가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후자가 미국에서의 무역의 지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NTR지위가 갱신되지 아니하면 중국산 제품은 『스무트-호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Law)에 의거하여 미국의 일반관세를 6%보다 훨씬 50%의 고관세를 물어야 하며, 일부 품목은 100%에 해당하는 관세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1980년부터 중국에 대해 매년 NTR을 갱신하여왔다. 종전에는 미 의회에서 매년 6월초에 NTR(정상무역관계)을 갱신받아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 갱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면에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반관세의 적용을 받은 정상무역관계의 지위를 향유하려면 NTR의 연례적 갱신 근거법인 잭슨-바닉무역법 수정법률(Jackson-Vanik Amendment to the Trade Act of 1974)이¹⁶⁾ 미 의회에서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하였다.

15)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ring2000.htm>.

16) 잭슨-바닉법은 냉전시대에 구소련, 쿠바,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고관세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1974년 미 통상법의 수정법이다. 이 법은 냉전시대 미국에 대한 이민을 제한했던 구소련·쿠바·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고관세를 부과하여 이민제한 완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이 법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은 NTR지위의 갱신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의 동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첫째, 쌍방간에 무역협정이 있는가¹⁷⁾, 둘째 MFN대우를 호혜적으로 공여할 수 있는가, 셋째 당사국이 대미 이민을 심각하게 제한하지 않는가를¹⁸⁾ 확인해야 한다. 그후 미국 대통령은 관련 비시장경제국이 이민규제 철폐·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거나 NTR 지위가 당해 국가로 하여금 이민정책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NTR 지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waiver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경제력의 급부상, 군사적 위협잠재력, 인권문제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NTR 지위의 갱신에 대한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며¹⁹⁾ 이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WTO가입에 관한 미·중국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NTR의 매년 갱신여부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영속적 지위의 부여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를 둘러싼 논란 끝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PNTR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종전까지 미 의회는 경제적 실리 때문에 중국에 대해 매년 NTR을 갱신하였으며 중국의 WTO가입이후를 고려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무대로 이끌어내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중간의 새로운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기적 견제보다 장기적 경제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중국이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우에도 NTR 지위를 매년 갱신하게 된다면,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맞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7) 제405조.

18) 제402조.

19) 중국에 대한 PNTR부여에 대한 반대론에 대해서는 콜럼비아 대학 법학교수 Mark Barenberg주장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No Permanent MFN For China: Legal Issues in the Congressional Debate over Permanent MFN for China”, March 1,2000, <http://no2permanentmf.house.gov/Barenbergstat.htm>.

(2) PNTR 지위의 부여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0월 중국에 대하여 종전처럼 1년 단위가 아니라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 PNTR; 최혜국대우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대우조건을 중국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적용하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급신장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9년 62억불에서 1999년에는 687억불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약 840억불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제한적 무역·투자관행을 비난하여 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축소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 미국의 무역제재 위협에 따라 중국은 무역장벽의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치를 취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다소의 개혁조치가 있었음에도 시장접근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중국내의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²⁰⁾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은 다른 많은 정치적 쟁점과 더불어 매년 중국의 최혜국대우(normal trade relations)의 재지정 또는 1998년 법률에 의한 NTR 지위 부여의 문제를 둘러싸고 의회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지난 수년동안 의회에서는 중국의 최혜국대우/NTR을 종료시키거나 별도의 조건을 붙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어떠한 것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은 WTO가입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미국과 다른 36개 WTO회원국들과 가입조건을 놓고 쌍무적 협상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까지도 미국과 중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관리들은 중국의 WTO가입에 관한 쌍무적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선언하였다. 중국의 관세인하 및 농산물, 공산품 및 서비스 거래

20) Wayne M. Morrison, "IB91121: China-U.S. Trade Issu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2000.9.20.) <http://www.cnie.org/nle/econ-35.html>.

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폐지하고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조치를 제거하며 미국이 일정한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입급증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의 사용을 용인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중국은 WTO에서 가입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멕시코와 스위스와 쌍무적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고 WTO 실무단과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할 상황이었다. 미국의회가 중국의 WTO가입에 대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WTO협정이 완전하게 미국과 중국간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WTO 가입에 앞서 PNTR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양국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2000년 5월 24일 미 하원은 중국에 대해 ‘항구적 PNTR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안을 찬성 237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그후 2000년 9월 19일 상원에서는 83대 15로 동법안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매년 NTR(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미국의 의회 심사를 거쳐 갱신해 오던 번거롭고 구차한 형편에서 벗어나 그 지위를 항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으로서도 PNTR을 부여받게 되어 중국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자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다. PNTR 부여 없이는 미국의 회사들이 매년 NTR 부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 중국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며 NTR이 중단되는 경우 다시는 갱신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부터 20년 동안 정상적 무역관계 지위갱신을 이유로 중국에 대해 인권·대만문제·종교문제·기술유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문제 등을 개선하도록 많은 압력을 행사해 왔지만 PNTR 법안 통과로 인해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PNTR 지위 부여에 관해 미국내의 노조, 인권단체, 기독교 보수파 등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단기적인 견제보다 장기적인 경제 실리를 더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이 법안이 부결되었더라도 WTO 협정에 의하면 MFN 대우는 무조건적이고 호혜적으로 공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 MFN 지위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로서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그러한 경우 중국은 WTO 협정 제13조에 의하여 미국에 대한 MFN 대우를 거부하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같은 PNTR 법안의 통과로 인해 미국은 국내법과 WTO 규정과의 모순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²¹⁾

더욱 중요한 것은 PNTR의 지위부여를 거부하면 중국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현행 6%에서 50%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에도 피해를 주게 되며, 그 반사적인 이익이 EU,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등 미국의 경쟁국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법적 제약이 없어 WTO 가입 전에도 이미 중국에 대해 사실상의 정상무역국 지위를 부여해 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통상교섭 과정에서 얻어진 중국시장 접근의 실익이 대부분 미국 외의 서방 선진국에게 돌아갈 것이고, 미국기업들은 중국내 대형 투자·조달·건설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 소비자들은 종전보다 비싼 가격에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²²⁾

그 밖에도 중국에 대한 PNTR의 부여 즉 최혜국대우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²³⁾ 첫째, 1999년 11월 서명된 미중간의 쌍무적인 WTO협정은 미국에 막대한 잠재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은 국내시장의 중대한 변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미국은 미국의 무역법령 또는 관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둘째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PNTR을 부여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PNTR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

21) Joseph J. Borich, "China, The WTO, an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pcom/currentnews/secureC0001.

22) Ibid.

23) Max Baucus, "PNTR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5>.

는다면 일본 및 유럽의 경쟁자들이 중국의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획득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노동자, 농부,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많은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1979년 미국·중국간의 쌍무적 무역협정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 지웠기 때문에 굳이 PNTR에 대한 표결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General Accounting Offi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및 일부 학자들은 1979년 협정이 주로 관세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간의 쌍무적인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많은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 못하며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미국은 PNTR 입법을 통과시켜야 중국에 대한 영향력(leverage)을 상실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매년 MFN 부여 문제를 이용하여 왔으나 그러한 시도 자체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다섯째, PNTR 입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대만의 WTO조기가입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대만의 가입은 요원해진다.

5. 2001년 6월 14일 3분야에 관한 최종합의

2001년 6월 14일 미국과 중국간 협의에서도 농업보조금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은 농업협정상 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수출보조금은 양보할 수 있지만 9억명에 달하는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보조금 감축에 있어 개도국 조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었다. 즉, 중국 측은 “농업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국내보조금과 관련해 개도국 조항을 주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WTO 가입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하고, 동시에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늘

24) Joseph Fewsmith, “The Impact of WTO/PNTR on Chines Politics,” <http://www.nbr.org/publications/analysis/vol11no2/essay2.html>.

릴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확보해 두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세계 최대의 인구와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농업협정상 중국에게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후, 上海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의 기간을 전후해 미국과 중국은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과 관련한 남은 문제들에 대해 협상을 벌여 농업보조금, 금융개방, 소매시장개방, 수출입권 등 그 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많은 문제들 혹은 일부 문제들에 대해 인식의 일치를 이루었다. 최대쟁점이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중국측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맞춰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의 농업보조금 지급 허용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5%로 맞서왔으나 8.5%로 타협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의해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보조금도 그 총액이 농업총생산액의 8.5% 이하이면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또한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이원화된 수입검사제도를 18개월 이내에 폐지키로 했다.

제 3 절 EU와의 쌍무적 협상

1. 2000년 5월 19일 EU·중국 협정

중국과 EU는 통신 및 보험 분야 합작 지분율, 자동차 관세율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협상 타결이 지연되어오다 2000년 5월 19일 시장접근의 시행일정(time schedule)을 단축하는 등의 형태로 협상을 타결하였다. 협정에 나타난 분야별 타결내용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 분야

중국의 이동전화 시장개방을 예정보다 앞당겨 WTO 가입후 3년 이내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는 중국이 WTO 가입시 25%, 1년후 35%, 3년후 49%까지 허용한다. 외국 통신업체의 국내 및 국제 통신사업을 위해 리스 시장을 개방(3년 이내)한다.

(2) 보 험

생명보험 합작사업에서 외국참가기업의 효과적인 경영통제를 위하여, 파트너 선정의 자율성 및 50:50 지분비율을 인정하고 중국은 생명 및 손해 보험 분야에서 유럽 보험회사에 7개의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EU 와 중국간의 협정은 중-미간 협정에 따른 이행기간보다 2년 빨리 외국기업에게 보험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후 5년 이내에, 외국 중개인은 어떤 합작조건에도 구속받지 않고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3) 수출입권에 대한 국가독점(Monopoly State Import/Export Restrictions) 완화

현재 중국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원유, 정제오일 및 비료 등에 관한 수입권을 민간부문에 개방하고, 실크(중국이 세계생산의 70% 점유) 수출의 국가독점을 2005년까지 완전 철폐한다.

(4) 관 세

중국은 기계, 세라믹, 유리, 섬유, 의복, 신발, 가죽제품, 화장품, 주류 등 150개 유럽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입관세를 8-1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한편,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자동차 생산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확대 허용하고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한도액을 3천만 달러에서 1억5천만 달러로 확대하며,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경우 중국기업과 반드시 합작하도록 하였던 종전의 관행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5) 유 통

대형 백화점과 체인점에 대한 합작조건을 철폐하고, 현행 외국인 소유 상점에 대한 20,000㎡이내의 면적제한도 철폐한다.

(6) 농 업

중국은 유채기름(rape-seed oil), 낙농제품, 면(pasta), 포도주 및 올리브 등 EU 주요 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율인하 또는 쿼터 확대를 통해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7) 수평적 조치

중국은 무역을 왜곡하거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수출실적·국산 원자재 사용·특정 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적용을 중단하고 정부조달 구매시 투명성과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약품, 화학제품, A/S, 담배 및 증류주 분야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8) 기 타

중국은 금융, 법률서비스, 회계, 건축, 관광, 건설 및 시장조사 분야의 시장접근을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2. 2001년 6월 20일 보험 등 서비스분야 조정

앞서 보다시피 EU와 중국은 2000년 5월 중국이 보험, 유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EU가 중국의 가입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져 동년 10월 시장개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재차 협의하여 주요 부문에서 합의하였다. 이 때 유럽의 보험 9개사를 새롭게 인가하는 것 등에 합의한 바 있었지만 EU는 중국이 이러한 합의를 신속히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보험, 유통분야에 해석의 차이가 있어 협상을 진행하여야왔다.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²⁵⁾

1.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1) 수입관세 인하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1991년 10월 평균 수입관세율을 절반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중국은 수 차례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단행하여 1992년 42.9%에 달하던 평균관세율이 1999년 1월에는 16.8%까지 낮아졌다. 1997년 필리핀 APEC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까지는 공산품 평균관세율을²⁶⁾ 개도국 평균수준인 15%까지 그리고 2005년에는 WTO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1999년 11월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²⁷⁾ 2005년까지 평균관세율을 11.7%로, 공산품 관세율(industrial tariff rates)을 9.4%로 인하하되 농산품 관세율은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관세인하에 있어 미국의 관심품목(priority industrial products)인 농산물, 목재, 종이, 화학제품, 자본, 통신제품, 의료장비의 평균 관세율을 2003년까지 7.1%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쿼터제도’(tariff-rate quota system) 및 ‘국가무역’(state trading)을 적용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간에 합의된 시장접근분야 양허안의 관세인하계획에 따르면 HS8 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6,223개 품목의 91.4%에 해당하는 5,685개 품목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폐지

중국은 지금까지 곡물, 식용유, 설탕 등 일부 내구소비재에 대해 수입허가와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여왔다. 1999년의

25) 미국과의 협정 내용은 “Summary of U.S.-China Bilateral WTO Agreement”, <http://uschina.org/public/991115a.html>.

26) 1997년 공산품 평균관세율은 24.6%이었다.

27) 당시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17%, 농산품 평균 관세율은 19%이었다.

경우 수입허가 및 쿼터제 대상품목의 수입액이 300억 달러로 전체수입액의 25%에 해당하였다. 이중 석유제품이 88억 달러로, 섬유류와 화학비료가 각각 44억 달러와 22억달러였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통제로서 고정가격제, 수출가격상한 및 하한, 반덤핑조치 및 보조금지금 등이다. 둘째, 금융부문에서 선급금 요구, 외환 분배 및 할당, 엄격한 수입외환 결제 조건, 송금제한, 자금이체 지연, 기타 금융통제 등이다. 셋째, 수량제한으로서 수출입쿼터, 수입금지, 수출입제한, 수출입허가 등이다. 넷째, 독점권 유형으로 무역 및 도매유통의 국유기업 독점, 수입창구 일원화 등이다. 다섯째, 기타 기술적 제약으로서 중국의 기술인증 표준 및 기준의 강요, 기술규제, 수송전 검사, 복잡하고 관료적인 통관절차, 국산품과 수입품의 이원적 검사제도 등이다.

현행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실시(6종 116개품목) 및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주요개방일정과 내용은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제 취소,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제 취소,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 점진 취소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 조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독자. 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얻어야 한다.²⁸⁾ 이에 관한 주요개방일정과 내용을 보면 TRIMs를 시행하고, 외환수지균형 요구를 폐지하며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도

28) 그런데, 중국의 WTO가입후 기존의 외국인투자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국내법 규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측 당사자와 종전 계약의 재협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할지라도 중국의 계약승인 주관기관인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지방의 관련 기관이 그 계약의 개정을 쉽사리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

폐지한다. 또한 수출의무비율제도를 폐지한다.

대외무역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는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는 자사 영업 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의 수출입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 3년 이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을 부여할 것이다.

2. 농산물 시장개방

중국은 외국 농산물에 대해 고관세, 수량제한, 비과학적 위생·검역기준 등을 통해 자국시장 접근을 배제하여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농산물 분야의 무역장벽완화와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여 왔으며, 농산물 시장개방을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였다.

(1) 수량제한 완화

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 철폐와 관련하여 WTO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곡물(쌀, 밀, 옥수수), 대두유, 면화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4월 미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중미농업협정에서는 곡물의 관세할당량을 WTO 가입시점에서는 1,400만 톤으로 하고 2004년에는 218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국영무역기업이 독점해왔던 곡물의 수출입권한을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민간기업의 중국 전체 곡물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매년 확대하기로 하였다.

(2) 농산물 관세인하

관세인하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을 현재 22%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되 그 인하는 매년 동일한 비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심품목(대두, 육류, 과일, 포도주)의 관세

율은 2004년까지 14.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대두 3%, 쇠고기 45%에서 12%, 돼지고기 20%에서 12%, 닭고기 20%에서 10%, 감귤류 40%에서 12%, 포도 40%에서 13%, 사과 30%에서 10%, 아몬드 30%에서 10%, 포도주 65%에서 12%, 치즈 50%에서 12%, 아이스크림 45%에서 19%로 각각 2004년까지 인하하기로 하였다.

EU와의 협상에서는 EU의 관심품목으로서 rape oil 85%에서 9%, pasta, butter 30%에서 10%, milk powder 25%에서 10%, mandarins 40%에서 12%, wine 65%에서 14%, olives 25%에서 10%, 밀가루전분 30%에서 18%로 대폭 관세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생검역기준은 중국이 미국 및 EU와의 협정에서 공히 WTO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Standard) 협정을 준수하여 밀, 감귤류, 육류 등 세 가지 품목에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를 WTO가입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3. 공산품 시장개방

(1) 관세인하

우리 나라는 1997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1,584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타제 등 비관세장벽을 중국의 WTO 가입후 2~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후 여러 나라와의 협정을 통해 관세율 인하의 폭이 커졌는바. 중국과 미국간의 협정에서는 현재 공산품의 평균수입관세율은 17%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2005년까지 9.4%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산품중 관세인하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차량 및 동 부품산업으로 평균관세율을 1999년 41%에서 2005년에는 15%로 63.1% 인하하고 목재와 가구는 63.9%, 인쇄 및 출판물은 63.1% 인하하기로 하였다. 전기, 전자, 섬유, 의류 등은 50% 이상, 음료, 담배, 철강은 40% 이상 관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상의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진 필름 및 인화지, 귀금속, 칼라 TV 수상기, CD플레이어, 진공청소기 등 사치품의 경우에는 30%이상의 고관세가 지속될 것이다.

(2)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의 점진적인 폐지

중국은 1999년 4월 주룽지 총리의 방미시 수입허가, 쿼터, 입찰 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관세 장벽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1999년 11월의 중미간 협정에서는 WTO가입 후 5년 이내에 수입쿼터 등 모든 수량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자동차 분야의 시장개방

자동차 분야 시장개방 합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미국 협정에서는 관세인하 분야에서 2006년 7월까지 완성차의 관세를 현행 80-100%에서 25%로, 부품은 현행 23.4%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하고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서는 5년내 쿼터 및 수입허가제를 폐지(initial quoter: 자동차 60억 달러, 오토바이 및 부품 2.86억 달러)하기로 합의하고 자동차 할부판매 및 A/S 사업을 허용하고 중국의 WTO가입 즉시 비은행 금융기구의 자동차 신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미국이 관세인하에 초점을 둔 반면 EU는 자동차업체의 중국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생산모델 및 배기량 제한, 엔진에 대한 100% 외국인 단독투자 제한)의 개선과 자동차 관련 지방정부의 허가권 확대를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장벽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국과 EU간의 협정에서는 투자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EU와의 협상에서는 WTO가입과 동시에 물류업자와 비은행 금융기구가 자동차 구매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내 외국계 합작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⁹⁾

그동안 자동차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모델과 생산규모에 대한 제한을 WTO가입후 2년 이내에 폐지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엔진 생산부문에 대한 합작(Joint Venture) 의무를 폐

29) 姜一春, “中國のWTOに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状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p.960.

지함으로써 외자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의 지방 정부 허가 권한을 3,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분야 진출 제한을 크게 완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와 허가제를 2005년까지 폐지하기로 합의하여 쿼터량은 WTO에 가입하는 년도의 60억 달러에서 시작하여 매년 15%씩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화학제품의 관세인하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화학제품 관세율조화(Chemical Harmonization)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35%에 달하는 화학제품의 관세율을 WTO 가입후 평균 5.5% ~ 6.5%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 중미간의 합의를 보면 현재 10%이상의 수입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샴푸, 합성수지제품은 2008년까지 6.5% 인하하고 유기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등 관세율이 6-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2003년까지 2%로 인하하게 된다.

(5) IT관련 제품의 관세인하 및 통신기기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지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보호가 대부분 폐지되는 분야는 IT관련분야이다. WTO가입후 중국은 WTO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가입하여 동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ITA 적용품목으로서 1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컴퓨터, 반도체, 전자통신설비 등 통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005년 1월 1일전까지 관세를 폐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통신기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WTO 가입후 4~6년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컬러 TV수상기, TV카메라, 컬러모니터,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서는 30%의 고관세율이 유지된다.

4.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중국은 금융체제의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의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미국 그리고 EU와 체결한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개방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1) 은행 분야

1980년대 심천에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와 상해, 대련, 광주, 천진 등 연해 주요 도시와 북경시에서의 지점설립이 허용되었다. 현재,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외환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위엔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과 중국인대상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독자 및 합자은행 설립은 허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의 설치를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도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하고 있다.

위엔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이 위엔화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으며, 중국내 3년 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 이상 흑자경영을 한 경우에만 위엔화 영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외국금융기관의 신규 진출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의 향후 은행시장은 중국계 은행과 외자계 은행의 치열한 경쟁으로 재편될 것이다.³⁰⁾ 중국은

30) 중국은 WTO 가입후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국영은행의

WTO가입이후 은행분야에서의 개방 방향은 인민폐 업무 취급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외자계 은행의 고객제한 완화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외자계 은행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엄격한 심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그러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엔화 업무 수행을 허용한다. WTO 가입 5년 후 이러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외국계은행은 외화와 인민폐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중국계기업과 중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인민폐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 금융업무로 국한되었던 업무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소매 금융업무가 가능하게 되며, 인민폐 업무에 있어서는 정부 채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인민폐와 외화를 결합한 금융파생상품의 취급도 가능하게 된다.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그리고,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도 허용할 것이다.

둘째, 외국계 은행의 지점에 대한 숫자 및 지역제한이 폐지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진출지역을 경제상황과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외자계 은행의 영업지점 수와 지역을 제한하여 왔으나 WTO 가입이후에는 수량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수준을 만족하는 외자계 은행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중국 각지에 영업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진출가능지역과 관련하여 외화업무에 대해서는 1993년 2월 이미 진출지역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인민폐 업무에 대해서는 WTO 가입후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2003년까지 23개 도시까지 개방하고, WTO 가입 5년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먼저, WTO 가입 5년이내 위엔화 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할 것인 바, [上海·深

공개와 정부소유 지분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회사들이 영세하여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공백을 외국은행들이 메꾸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

圳·大連·天津], [廣州·青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京],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한다.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엔화 영업을 허용하며, 한 지역에서 위엔화 영업을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보험 분야

중국은 현재 외국 보험사의 시장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였으나 보험 판매지역을 상해, 광주, 천진, 심천, 대련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지만 이와 같이 지역 및 업무영역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외국인독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하며, 각 도시별로 지점 1개 사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간의 협정은 WTO 가입후 5년내 지역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외국 독자보험회사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도시에 2~3년내 진출을 허용하고 단체·건강·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영업 허용하고, 향후 외국측 지분 51%를 허용하며, 재보험 100% 외국인 단독지분을 허용할 것이다.

업무에 있어서는 1)외자계 기업에 대한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 2) 외국인 및 중국내 개인이 보험을 납부하는 생명보험, 3)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재보험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며 단체생명보험, 중국 현지기업과 거주자 개인에 대한 재산보험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 진출자격도 엄격히 제한하여 본사 영업경력이 30년 이상이고 자산규모가 30억 달러 이상이며 중국내에 사무소를 2년 이상 설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시험적으로 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EU, 일본과 타결된 WTO 가입협상 내용중 보험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WTO가입즉시 외국계 상해보험사에 대해 대규모 위험에 대한 보험 업무처리를 허용한다.
- 2) 3년 이내에 모든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향후 2~3년 이내에 제한을 폐지한다.
- 3) 진출형태에 있어서는 생명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외자기분 50%의 합작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지점의 진출은 물론이고 WTO 가입즉시 51%, 가입후 2년내에 100%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용한다.
- 4) 전체 보험수수료의 약 85%를 차지하는 단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에 대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판매영역 제한을 폐지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개인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4년 이내에 연금보험과 단체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5)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후 3년 이내에 국내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손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6) 중국이 보험회사들에 대해 인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시장수요조사 등 경제적인 수요검사나 수량상의 제한 등을 가하지 않고 건전성 기준(prudential criteria)에 의거하여 인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 후 5년 이내에 화재보험과 상해보험분야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지역적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의 영업범위는 가입 후 5년내에 단체보험·의료보험·양로보험 등으로까지 확대되며 이 분야 수익이 전체 이윤의 85%까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허가 신청규제도 철폐된다.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다수지분 보유(majority ownership)도 인정되어, 외국기업은 합작보험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중국내 합작회사 설립신청조건이 철폐되고 중국 내 지점설립이 자유화되게 된다.

특히 EU와의 협상에서는 금융서비스에 있어서는 보험시장의 개방 시기를 크게 단축시켰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비생

명보험의 개방시기를 2년간 단축시키고 100% 외자의 보험중개업의 중국 내 진출 길을 열어 놓았다.

(3) 증권 및 자산관리 분야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외국계 증권사의 중국 진출에 대해 지리적 제한, 수적 제한, 지분제한 및 업무제한을 두고 있다. 현재 외국 증권사에 대해 B주의 거래 및 발행, 해외시장에서의 채권과 주식 발행 업무만을 허용하고 자산관리 업무의 참여는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WTO가입협상에 의하면 WTO가입 3년 이내에 외국인 33%까지의 소수지분이 허용되는 합작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작현지 법인에 대해 A주(중국인 전용 주식)의 인수, B주(외국인 전용주식)와 H주(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주식)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WTO 가입즉시 펀드 매니지먼트(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기업을 외자소수지분 33%이하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있어서는 중국내에서의 외화표시증권(주식, 채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WTO 3년후에는 그러한 합자기업에서 외가지분 49%까지 허용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향후 5~10년내에 증권시장의 완전한 시장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규범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주식발행 제도의 개혁, 사이버 교역추진, 제2증시 설립, 기관 투자가 육성, 금융기관의 상장 지원 등 5대 개혁조치를 확정하고, 1) 증시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2~3년내에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전용주식으로 구분되는 A주와 B주를 통합하며 2)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벤처기업 및 첨단기술수 중심의 제2주식시장을 심천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증권시장 개혁과 동시에 대외개방 차원에서 중외합작 펀드 설립은 물론 외국인의 내국인 전용주식(A주) 취득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5.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재,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업체도 보유(또는 경영)할 수 없다.³¹⁾ 그러나, WTO 가입후에는 WTO 경쟁원칙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까지도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다. 통신시장부분에서 중국은 WTO가입에 따라 통신기본협정에 가입해야 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경쟁촉진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³²⁾ 그리고 외국투자회사들은 통신서비스 기술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CDMA 기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개방일정을 WTO 가입후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입 2년 내에는 무선호출 및 부가 통신서비스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되고, 가입 후 5년 내에는 이동전화서비스 업무가 완전 자유화되고, 6년 내에는 유선전화서비스의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체 통신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곳은 WTO 가입 즉시 완전히 개방되게 된다.

중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 연통이 중중외방식(China China Foreign; CCF)으로 외국인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국진출을 허용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중국정부가 이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은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가입후 중국 통신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 EU 등과의 WTO 가입 협정에서 기초통신, 이동통신 등 부가통신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특히 EU와 협정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중미간 합의된 시장개방 일정을 2년간 단축시키고 중국내 외자계

31) Lester Gesteland, "China's Ban on Internet Foreign Investment: A WTO Negotiating Plo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1999/September>.

32) 정보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Xing Fan, "China's WTO Accession and Telecom Liberalization",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3.

이동통신사의 회선 리스 사업을 개방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개방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주요 개방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무선 호출 및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WTO 가입 즉시 외자지분을 30%까지 허용하고 1년 이내에 49%까지 2년 이내에 50%까지 허용한다.
- 2)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 지분을 25%까지 허용하고 1년 이내에 35%까지 3년 이내에 외자기분을 49%까지 허용한다. 또한 EU와의 협상에서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외자 50%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3) 고정전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WTO가입후 3년 이내에 외자비율을 25%까지, 5년 이내에 35%까지 6년 이내에 49%까지 개방한다.
- 4) 지역제한에 대한 규제철폐와 관련하여 북경, 상해, 광주의 3개 도시의 경우 WTO가입 즉시 부가통신과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2년내에 14개 주요 도시를 개방하며, 부가통신서비스는 2년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3년내에 지역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 고정전화 서비스는 WTO가입 3년내에 3대 도시를 개방하고 5년내에 14개 주요도시를 개방하며 6년내에는 지역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
- 5) WTO가입 3년내에 리스 회선 서비스를 개방한다. 즉 외자 이동통신 업체의 유희시설을 중국통신사에 임대하거나 국내의 통신사에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 6) 도시간 서비스 허용 및 도시내 업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6. 유통, 무역 및 운송 분야 개방

(1) 유통 분야

중국은 지금까지 도매업에 대한 외자계 기업 설립을 기본적으로 금지하여왔으며 연해 대도시 등에서 슈퍼와 백화점 등 소비재 소매업에 한정하여 외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개방을 실시하여왔다. 중국 정

부는 유통시장의 대외개방을 위해 1992년 6월 유통산업 육성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북경, 상해, 대련, 청도, 천진시와 5개 경제특구 등 11개 지역을 개방하였다.

1995년 6월에는 연쇄점과 슈퍼마켓 등 소매업종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정 규모이상의 중외합작 유통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며 중앙정부가 허가한 기업들에 한해 일정 품목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유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업체들에 대해 업체수를 지역당 2개사로 제한하고 외국측 합자지분도 49%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며 수입품 판매도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 등과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에서 대형체인점을 포함하여 유통분야에서 3년내에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내 도소매 유통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WTO가입후 3년내에 소매법, 도매업 공히 지역제한, 수량제한(설립기업수, 점포수) 출자제한을 폐지하고 5년내에 소금과 연초를 제외한 모든 영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EU와의 협상에서는 대형백화점과 체인점의 합자 의무규정이 폐지되고 그 동안 중국내 사업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유통체인에 대한 규모제한(20,000㎡ 이내)과 Outlet수의 제한(30개 이내)도 폐지될 것이다.

현재 도매분야에서는 상하이, 선전(深圳) 소재 합자무역회사 및 개방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내 유통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 사 설립허용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매분야에서는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WTO가입이후 도매분야에서는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여전히 불허할 것이지만, 2005년 1월 이전까지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을 허용하고, 2003년1월 이전까지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필름 유통을 허용할 것이다. 또한, 2002년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자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지역 및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제조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A/S 포함)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소매분야에서는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 WTO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青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에 대해 허용하고.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한다.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를 허용하고, 2002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의 설립을 허용하며, 2003년 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이라는 제한규정을 폐지(中-EU 협정안)할 것이다.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에는 WTO 회원국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무역 분야

무역분야에서 중국정부는 보세가공구의 지정된 지역이나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반무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부터 중국내에 설립된 투자성 공사에 한해 자회사 제품에 대한 수출업 대행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해 포동과 심천 지역에 한정하여 중외합작무역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9년 11월에 타결된 중국과 미국간의 협상에서 향후 3년내에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역업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자신의 생산품 뿐만 아니라 본사나 다른 기업의 생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 운송 분야

중국은 지금까지 운송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으로 설정하여 외국인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외국인 소수지분(50% 미만)만을 허용하고 극히 제한적·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인 단독투자업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영업이 가능하다. 항공기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지분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가입을 위한 협상에서 국내 운송분야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철도와 도로 운송분야에서는 WTO가입 즉시 외국측 소수지분의 합작 운송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외자지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운송분야는 WTO 가입후 3년후, 철도운송분야는 6년 후 100% 외국인지분의 운송회사의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 2) 보관창고업에서도 WTO가입 즉시 외자소수지분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가입후 1년 후에 외자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3년 후에는 100% 외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 3) 현재 소수지분의 외국인투자만이 허용되고 있는 화물탁송분야에서는 WTO가입 1년 후 외자다수지분을 허용하고 영업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외자계 기업에 대해 국내 지사 설치도 허용하고(등록자본금 US \$ 12만 추가 요구)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도 허용(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한다.
- 4) 항공기 정비 분야에서는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을 요구하며,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특사 운송분야에서는 외국측 다수지분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2004년 1월 이전에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할 것이다.

7. 기타 서비스 시장개방

(1) 호텔 및 관광 분야

호텔업의 경우, 현재 합자기업내의 외국측 지분을 2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WTO가입 즉시 다수지분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가입후 3년후에는 외자 100% 호텔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관광, 여행업체의 진출지역을 11개 도시로 제한하고 관광업의 외자 소수지분만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합자기업의 외국측 당사자에게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을 요구하고, 합자기업 등록자본금을 US\$ 500만 위엔 이상 요구하고 그 업무범위를 중국방문여행과 국내 관광에 국한시킴으로써 해외관광업무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의 제한이 심했다. 그러나 WTO가입 즉시 중국의 국가급 관광구 이외에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지역에서의 여행업을 허용하고 WTO가입 후 100% 외자여행사의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2)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WTO 가입후에는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하되,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로 관리하고, 합자건축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를 의무화하게 된다. 건설분야에서는 WTO가입과 동시에 외자 다수지분의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외국(IMF, IBRD 포함)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와 중국기업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다.

(3) 전문서비스 분야

중국은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및 회계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계 기업의 진출을 극히 제한하여왔으나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해 50% 이상의 다수지분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1)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 1)외국법률사의 중국 소송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2)법률사무소 지사 설립가능지역이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青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등 일부 도시로 제한되었고 3)중국내 1개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가입 2년내에 지역 및 수량제한이 철폐되고 법률사무소 설립에 대한 자격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로 하여금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 경험을 요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가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 따를 뿐이다.

한편, 중국은 2000년 11월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법률시장 개방의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1社(로펌)-1 사무소라는 기존 원칙을 WTO 가입 후 1년 내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EU와의 협상에서는 외국 로펌이 외국법뿐만 아니라 중국법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양보한 데 이어 최근 외국 로펌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WTO 가입 후 수개월 내로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미 120여 외국 로펌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모든 법률사무소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³³⁾

2) 회계서비스

회계서비스의 경우에도 법률분야 못지 않게 엄격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아 왔다. 회계분야에서는 현재까지 기존의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추가로 그 설립을 인가한 사례는 없었다. 회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외국인이 중국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회계사에 한정하여 B주 및 해외에 상정한 외국기업 및

33) 이와 관련하여서는 羅勝福, “中國開放法律服務市場之我見,” 『中國律師』, 2001,1(총 123기), pp.46-47참조.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WTO가입과 동시에 외국회계법인은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CPA시험에 합격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할 수 있으며 현지화 요구에 관한 강제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3) 도시계획

도시계획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지분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외국을 대상으로 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할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분야에서는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을 허용하고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의 숫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4) 상업서비스 분야

현재 광고분야에서는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나 WTO가입후 2002년 1월이전까지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지분 인정하고 2004년 1월 이전까지는 외국인독자기업의 설립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무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는 합자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2005년 이전까지는 외국인독자기업의 설립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서 3년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를 허용하고, 하드웨어 설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를 허용(단, 호화부동산은 제외)하고,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게 된다.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2002년 1월이전까지 합자기업내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 지분 허용하고 2004년 1월이전까지는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하되,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시청각, 교육, 환경서비스 분야

현재, 영화부분에서는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하고 있으나 WTO가입후에는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합자기업을 설립한 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의 유통도 허용될 것이다. WTO 가입후에는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우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을 허용하며 환경서비스분야에서는 합자기업만을 허용한다.

제 5 절 미·중 쌍무적 협정상의 무역장벽완화³⁴⁾ 및 특약조항

1. 중국의 WTO가입후의 무역장벽완화조치

(1) 중국의 특수한 지위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WTO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분류될 것인가 아니면 비시장경제(non-

34) 미국과 중국간의 WTO 가입에 관한 분야별 양허의 주요 내용은 The United States-China Business Council(1988), "China and the WTO: Critical Issues and Objectives", June 1988 그리고 "Market Access and Protocol Commitments", <http://www.uschina.org/public/wto/html>. August 1999; USTR (1999a), "U.S. China Sign Historic Trade Agreement", Dec.14, 1999, pp.1-3, <http://www/ustr/gov/releases/1999/11/99-95html>참조.

market economy)로 분류될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과거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이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 WTO 협정상의 최혜국(MFN) 대우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내의 시장메커니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정가격제, 외환할당, 국영무역, 고관세, 행정규제 등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고 무역·투자 관련정책과 법규, 관행이 WTO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2-15년 동안 법규와 정책상의 투명성 결여,³⁵⁾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 두터운 무역장벽(trade barriers), 차별적 행정규제, 시장접근의 폐쇄성 등에 있어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장경제권의 회원국은 중국에 대해 MFN 대우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특별한 긴급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투명성과 사법적 심사

가입의정서 초안 중 원칙에 관한 논의중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역장벽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중국내 무역투자관련 정책이나 지침은 비공개 내부지침이나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 무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잘 알 수 없었다. 미국·중국간의 협상의 주요 내용도 중국정부 정책

35)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는 GATT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령을 통일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in a uniform,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유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국제무역체조의 핵심적인 가치중의 하나인 투명성요건이다. 그런데 중국의 사법부는 국가 또는 지방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 법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가 지방보호주의(local protectionism)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관들의 법적 지식이 대단히 아직도 미흡하다. 행정과정도 자의적이고 불명료하다. 중국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하여야 하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다. 또한 무역관련 법률을 시행전에 공포하고는 있지만 그 제정전에 입법예고와 청문의 기회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중국도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GATT 제10조의 준수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Stanley Lubma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Unfinished business in Genev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의 공개성을 높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³⁶⁾ 예컨대, 중국정부는 1998년 8월 내부지침을 시달하여 중국내 모든 국내외 기업의 다단계 판매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이러한 내부지침은 공개되지 않아 Amway, Mary Kay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WTO 가입전이라도 필요하다면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와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겠다고 말하였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외무역권

미국과 중국간의 합의에서도 개입자(middlemen) 없이 직접 공산품을 교역할 수 있는 무역권과 유통권을 외국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개방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진전과정에서 밝혀진 양측의 입장으로 보아 WTO가입 3년후, 늦어도 5년후에는 외국제조업체들에게도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수출입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

(4) 국영무역관행의 단계적 축소

1979년 이후 무역자유화의 분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농산물, 생산재, 그리고 일부 전략적 상품의 경우 국가가 대외무역권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대두, 옥수수, 밀, 면화의 국유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중국시장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의 민간위임을 꺼려하여 부속서에 곡물, 식용류, 설탕, 면화, 담배, 화학비료, 원유 및 그 정제품 등 7개 품목을 일반거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목재, 합판, 면, 아크릴, 천연고무, 철강 등 7개 공산품의 경우 지정업체만이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지정무역거래(designated)제도를 시행하여 왔는

36)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pring2000.htm>.

데, 목재, 합판, 면, 아크릴, 천연고무의 경우에는 가입후 3년이내에, 철강은 5년이내에 이러한 폐쇄적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미국·중국간의 합의에서도 대두에 관해서는 국가무역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밀, 옥수수, 쌀, 면화 등의 경우 민간부문의 무역비중을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은 WTO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권 제한을 완화하고 무역거래의 정상적 거래를 촉진할 것이며 수출품의 가격, 관련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5) 외환통제

중국정부는 1996년부터 상품, 서비스 교역거래, 부채의 상환, 과실송금 등의 목적에 한해 인민폐 당좌계정(current account)을 개설·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7년 1월 1일부터는 IMF 8조국으로의 이행, WTO 가입 등에 대비하여 당좌계정 개설·운영에 대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제거·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거래에 관한 한 중국은 아직도 인민폐의 태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환수지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자·합작기업보다는 단독투자기업에 대해 그 요구가 강한 편이다. 미국은 무역·투자장벽 완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통제를 완화시켜주도록 요구하여 왔으나, 미국·중국간의 합의에서는 이에 관한 중국측의 명시적인 양허약속이 없었다.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중국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의 보호상황이 열악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방문시 주룽지 총리는 WTO에 가입하는 즉시 WTO상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법규의 정비, 감시, 처벌 강화의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지만 WTO협정이 규정하는 수준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RIPs 협정의 준수여부는 법개정의 문제라기 보다

는 그 시행상의 문제이고 시행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의 강화, 지방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WTO가입 즉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7) 기타 무역규제의 폐지·완화

중국은 미국, EU 등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정책의 수정, 경제특구관리규정의 개정, 중국내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중국의 수출입허가제도·절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각종 수출입 부과금의 철폐, WTO 협정에 배치되는 수입금지의 철폐,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금지 등 무역장벽의 완화와 관련된 쌍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과도 중국산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수입급증방지(anti-surge)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2. 특약조항(Specific Provisions)

(1) 투자와 기술이전

투자과 기술이전에 관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내국민 대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³⁸⁾

- 1)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설비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폐지한다.
- 2) 개도국에게 허용하는 유예기간없이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WTO 협정을 즉시 시행한다.
- 3) 외환지균형의무를 폐지·중단한다.

37)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는 Ibid.

38) "WTO entry to benefit U.S. companies despite problems",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e/C000110652.asp.

- 4) 현지 원부자재조달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를 폐지·중단한다.
- 5) 이상의 내용에 반하는 계약의 이행을 거부한다.
- 6) 중국내 기술·노우하우 이전 관련법규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는 외국기업의 대중 직접 투자시 중국측이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부품현지조달의무, 기술이전의무, 중국내 R&D 수행의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중국의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외자를 유치하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2) 반덤핑과 보조금방식

중국은 경제개혁과정에 있는 전환기 경제이다. 따라서 시장경제국에게 적용되는 WTO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등의 협정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덤핑마진의 산정, 보조금의 지급규모의 측정·확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 미국 정부는 반덤핑, 세이프 가드, 보조금 지급 등에 걸쳐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여왔으며 이것이 미·중간의 협정에서도 반영되었다.

동 협정에 따르면 반덤핑에 관한 한 중국은 향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가³⁹⁾로 분류되어 ‘특별반덤핑방식’(special anti-dumping methodology)이 적용된다. 다만, 중국 경제체제와 각 대별부문의 개혁상황을 장기적으로 점검하여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상경제국 개념의 조기졸업도 가능하다는 옵션을 포함시켰다.⁴⁰⁾ 사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가격·유통 등의 개별분야에서 시장경제화가 이미 상당히 진

39)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40) USTR(1999). “USTR Barshefsky’s Press Remarks Following Negotiations with China on the WTO”, p.5.

전되었으므로 중국이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수차례 걸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제품특정적 세이프 가드(product-Specific Safeguard)

‘특별반덤핑방식’과 함께 미국 정부가 협상에서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특별세이프 가드이다. 일반 세이프 가드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수입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무차별적으로 발동하여야 한다. 반면 특별세이프 가드는 중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중국의 특정 수입급증제품에 대해 차별적·선택적으로 긴급수입제한이나 관세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품특정적’(product-specific) 세이프 가드 조치로서 과거,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의 GATT 가입시 적용된 바 있다.

이 세이프 가드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중국측에게 매우 불리한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측은 이러한 차별적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주룽지 총리도 미국 방문시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미국이 쌍무적으로 수출급증 품목에 대해 ‘자발적 수출제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제도를 발동할 것을 우려하였고, 결국 12년 동안만 존속시킨다는 조건하에 미국의 제의를 수락하였다.⁴¹⁾

따라서 미국은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발생시, 중국산 특정품목에 대해 WTO협정상의 일반세이프 가드보다 훨씬 엄격하고 품목특정적인 긴급수입관세나 수량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세이프가드의 경우 유사한 피해를 준 모든 국가의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수량제한, 고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의 무차별 수출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특별 세이프 가드의 경우에는 중국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⁴²⁾

41)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42) Greg Mastel, op.cit.

(4) 국유기업 및 국가투자기업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대단히 높으며 그 역할 역시 대단히 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WTO 입의성 초안에 국유기업의 판매·조달·보조금 등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노력하여왔다. 비록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국유기업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유기업은 구입·판매 결정을 정치적인 고려(political consideration)이 아니라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등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에 의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판매, 구매시 경쟁조건에 있어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 3) 국유기업이나 국가투자기업의 상품·서비스 구입은 그 주체가 정부 자체는 아니므로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한다.
- 4) 보조금·상계관세 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 따라 미국은 미국 통상법을 중국 국유기업과 국가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록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타결되지 아니하였으나 향후 미국은 쌍무적인 차원에서 접근, 이를 중국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6 절 WTO 실무작업단회의와 다자간 합의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은 2001년 9월 10일 WTO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된 현안을 조속히 타결 짓도록 촉구하였으며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작업단 회의가 9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다자간 합의문서에는 기존회원국이 중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자국내 가격폭락과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산 제철에 대한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특별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다자간 합의문서는 가입의정서와 WTO 실무 작업단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에게 자유무역규정과

부합되는 경제의 운영 및 국내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행 WTO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 가드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의 양자협상을 완결하고 이제 최종 가입의정서 협상만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중국의 WTO 가입은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절차상으로는 WTO 각료회의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고, 중국이 가입의정서를 수락한 후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실무작업단이 마련중인 중국의 가입조건은 ①지적재산권 보호 법제정비, ②국산품, 수입품의 검사기관 통합, ③수입량 제한 폐지, ④외국기업에 대한 자유무역활동 보장 등 중국에 자유무역체제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문서에 의하면 기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 가드 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을 우려하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이프 가드 조치는 중국의 WTO후 12년동안만 과도기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섬유세이프 가드 발동기간을 중국이외의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만 허용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의 발동조건을 완화하여 중국의 WTO가입이후 15년의 과도기간동안 중국산 수입품의 정상 가격(normal price) 또는 덤핑마진의 산정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덤핑관세의 부과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당해 수출품의 정상가격이나 덤핑마진을 대상국의 국내가격이나 생산비용을 지표로 산정하지만 중국은 국영·국유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하여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재량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WTO가입이후 개개의 WTO 이사회가 거의 매년 중국의 시장개방, 자유무역규정의 준수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WTO 일반이사회

가 제도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EU 일본, 캐나다는 2년이고 무역량 규모 상위 20개국에 속하는 기타 국가들은 4년으로 하고 있는 무역정책심사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것이라 평가된다.

제 7 절 갈등의 소지

1. 의 의

관세인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시장 접근 문제에 관해서는 미·중간에 비교적 원만한 타결을 보았다. 그러나 내국민 대우,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이행과정 평가, 보조금, 비상경제조항, 특별세이프 가드, 정부 조달, 민간항공기 협정, 실무작업단 보고서 등에 관해서는 그 시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내부에서는 세이프 가드와 반덤핑에 각각, 12년, 15년 동안 비시장경제국가 대우를 적용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이 WTO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각종 법규, 정책 관행을 일정에 맞추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미·중간의 모든 통상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쌍무적인 통상문제가 미국의 요구수준 상향조정, 중국의 위상강화 등으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분쟁건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WTO는 투자장벽 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자체적인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않고 설립된 지 6-7년밖에 되지 않아 그 운용메커니즘이나 분쟁해결절차 등에 문제가 많다. 실제로 바나나 분쟁사례에서 보았듯이 WTO는 미·EU간의 사소한 통상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2. 내국민대우의 실행

내국민대우는 WTO협정의 핵심조항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외국기업이 내국기업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정부는 미국 등과의 협정에서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용하였으나 대부분이

상품분야이다. 그러나 화학업체 등록요구(registration requirements), 법규에 의한 검사(statutory inspection), A/S 보수 등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비시장경제 개도국지위를 내세워 아직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기타 서비스 분야에 관한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무역관련투자조치

WTO는 직접 투자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TRIMs 협정에서 현지부품 사용의무, 수출실적 요구 및 가격에 의한 수입제한, 외환할당 등에 의한 수출입규제 등을 투자허가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장려(실제로는 의무사항), 외환수지균형의무, 현지부품사용의무 등과 관련된 법규·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직접투자 허가과정에서 기술이전 요구 등이 실제로 없어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미·중 쌍무협정의 내용을 보면 투자허가 및 실행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자의적 금지 조치를 배제하는 것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 이행과정평가(Transition Review Mechanism)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자신의 법규·정책·관행을 보고하고 WTO 사무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밖에도 중국의 경제체제와 무역·투자·유통 등 관련제도의 개혁상황, 협정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후에도 그러한 강력한 이행과정 평가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중간의 협정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와 잠정평가(transitional review)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5. 변형된 형태의 실질적 보조금

중국에는 보조금 지급 등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특정 국유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국유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변형된 형태의 생산보조금 지급사례에 대해 통상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보조금 고지절차(subsidy notification process)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WTO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에서 금지된 대출형 보조금과 생산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6. 국제수지방어조치(Balance of Payments Measures)

WTO하에서 회원국들은 국제수지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합법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량제한보다는 부가금(subcharge) 또는 관세를 인상하는 등 가격수단을 통해 통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후 수입급증으로 무역적자로 반전되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미·중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다.

7. 비시장경제조항(Non-market Economy Provisions)

비시장경제조항은 미·중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조항중의 하나이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국의 현행 법률구조와 경제상황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과거 폴란드, 헝가리의 GATT가입시 적용되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는데 대한 불만이 높고 비시장경제권 국가 개념의 적용기간이 덤핑의 경우 15년, 특별세이프가드의 경우에는 12년으로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은 덤핑마진의 산정에서도 중국에 불리한 바, 시장경제국은 덤핑마진 산정시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국가격을 채택하지 않고 비교가능한 제3의 대

리국(보통 인도)의 가격(본국시장가격과 수출시장가격의 차이)을 채택하거나 생산원가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등 의제가격(constructed prices)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중국내 소비재 공산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고 극히 일부 품목만이 정부의 가격통제와 정부관리하의 자원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비시장경제 조항은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호주와 EU는 90년대 후반 중국의 시장경제화 추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마진 산정시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왔다.

특별 세이프가드비상경제국 개념과 연결된 문제이지만 미·중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품 특정적 세이프 가드’의 도입은 중국으로는 매우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직물,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였을 때 산업피해 구제차원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긴급 고관세나 수입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 EU 역시 시장혼란(market disruption)이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국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WTO가입의 정서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8.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무역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의 운영은 수입통제, 수출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문제를 야기한다. 수입통제를 위하여 국영무역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⁴³⁾

첫째, GATT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둘째, 중국의 WTO가입 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이다. GATT의 규범들의 관심은 국가소유 기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입과 관련된

43) Brett Williams, “China and the WTO Working Papers 200/1: China’s Accession to GATT and the Control of Imports of Goods by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China”, <http://law.and.edu.au/china-wto/seminars/seminar1/C&WTOno.1.htm>.

독점권 또는 기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국가소유기업 및 정부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부분적 정부소유기업 또는 100% 개인소유기업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GATT는 회원국이 수입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 소유 또는 지배 기업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제3조와 제4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비실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다.⁴⁴⁾

중국의 경우 국영무역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국영무역기업의 수입에 대해 지시함으로써 수입장벽에 관한 GATT 규정들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왔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가입협상에서도 국영기업의 수입량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7조에 언급된 별도의 의무에 대한 협상이 포함되어 왔던 것이다.

44) Ingo, M.D. & Ng, F., "Distortionary Effects of States Trading in Agricultur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915, World Bank Washington 1998, <http://www.worldbank.org/html/dec/publications/workpapers/WPS1900serious/wps1915.pdf>, p.5.

제 3 장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EU 협정 및 WTO 다자간 협의

제 4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중국은 1986년 GATT 가입신청한 후 대외무역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으나 중국의 기존의 대외무역법제도들은 GATT/WTO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막 비시장경제체제를 시장지향적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9년과 1978년 동안, 중국은 국가소유, 중앙계획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부 통제를 그 특징으로 하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통제경제체제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통제경제체제의 구성요소로서 대외무역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그 목적은 상품의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입대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1978년 공식적으로 개시된 경제개혁은 이러한 통제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외부세계에 대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국의 자본·선진기술 도입의 중요성 및 국제무역에의 완전한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협력과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요 국제조직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GATT에 복귀함으로써 개개의 체약국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한 GATT 체제하의 혜택은 중국의 급속히 성장하는 대외무역의 촉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혜택에는 최혜국대우, 장래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향유 자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GATT와 WTO 체약국들, 특히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은 중국이 종전의 통제경제체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지향경제로 괄목할 만한 변천

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GATT/WTO 가입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왔다. 기본적인 어려움은 중국이 개혁이전의 시대로부터 유지해온 비시장적 대외무역법제가 있으며 그 대부분이 GATT의 시장원칙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첫째, 계약국간의 모든 GATT 협정들 - 양자적인 것이든 다자적인 것이든 - 의 기초는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이다. GATT협정 어떠한 조항에도 무차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무차별은 상호주의(reciprocity), 최혜국 대우, 내국인대우라는 GATT 원칙들의 논리적인 귀결이라 할 것이다. 무차별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어떠한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이 자동적으로 다른 계약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개혁이전의 대외무역제도는 대단히 차별적인 것이었다.

국가가 모든 무역활동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상품의 교환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상품과 외화를 정부가 조달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외무역계획을 이용하여 평등대우의 원칙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무역정책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관세율, 환율 및 수출입 쿼터와 수출입허가를 조종함으로써, 국가는 대외무역기관들을 국내기업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산업에 대해 달리 취급할 수도 있었다.

둘째,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GATT의 구조는 다자간 관세인하를 통하여 무역량은 증가할 수 있고 무역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시장경제에서 관세인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소비자들의 경정 및 산업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관세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만약 중국이 개혁이전의 비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관세인하도 그 경제 메커니즘에 지엽적인 효과만을 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관세율은 GATT의 주요 서방계약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10%이하의 관세율에 비해 대단히 높은 평균 44%에 달하고 있었다.

셋째,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의 보편적인 이용은 대외무역을 강력한 중앙통제와 계획체제하에 국가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며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GATT 원칙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전에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위하여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정부보조금, 수출입 쿼터 및 허가제도, 환율통제 및 다양한 형태의 행정규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중국이 GATT/WT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관세장벽들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transparency)도 GATT의 또 다른 기본원칙이다. 투명성 원칙은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법규정과 분쟁해결절차가 국내외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게도, 개혁이전의 중국은 국가대외무역계획과 국가기밀로 다루어지는 “비공개 내부분건”에 대한 저한 이행이라는 기본전제에 따라 대외무역정책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어떠한 법령도 외국인에게 공개되거나 쉽게 입수될 수 없었다. 그러한 투명성의 결여가 중국의 대외무역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GATT 계약당사자들의 주된 우려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자신의 대외무역법제도와 GATT 원칙간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과 정부관리들 모두 그러한 불일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불일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GATT/WTO 체제에 머물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정부, 특히 개혁성향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의 정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극제로서 GATT 가입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 GATT 구조틀은 모방할 수 있는 가까운 참고자료이자 확립된 국제관행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방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를 현저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제 2 절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1. 사회주의시장경제와 WTO 규범

1996년 말쯤에는 10년을 끌어온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중국의 대외무역법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왔다. 실무작업단과 체약국들이 제시한 질문과 제안에 호응하여 중국은 그 대외무역법제를 폐쇄된 비시장경제 모델로부터 상당히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199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선포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 이전에는 중국은 항상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공식노선으로 고수하여 왔다. 그러한 입장은 시장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혁조치와 실험들이 실제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수에 따라, 동 개정 이전의 헌법은 국가는 경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계획의 종합적인 균형”을 도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3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경제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 권력이 제거되었고 국가의 역할은 미시적 통제로부터 법령의 제정·시행을 통한 거시적 통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1983년 개정헌법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시장경제”가 중국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론적인 면에서 급격한 선회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에 의하여 GATT/WTO와 같은 국제조직과 중국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뒤따르게 되었다. 개혁정책의 시장경제로의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전환에 따라, 중국은 또한 대외무역제도의 주요 분야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2.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개혁

(1) 계획경제법률의 개정·폐지

1994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WTO 가입과 관련하여 직면한 장애요인중의 하나는 계획경제에 관한 기존의 법률들이었다. 실제로 당시 중국의 대부분의 법률은 계획경제체제를 전제로 제정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한 것들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하 “중국헌법”이라 한다)이 경제체제개혁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2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시장경제체제에 부적당한 조항들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1982년 중국헌법 제15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공유제의 기초하에 계획경제를 실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만약 이 조항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개혁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1993년 개최된 중국인민대표회의 8屆 1차 회의에서는 중국헌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중요한 개정내용은 앞서 언급한 조항을 “국가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시행한다”라고 개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보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 1994년 5월 중국 국무원은 1993년 말 이전에 제정된 일부 행정법규의 폐지에 관한 결정을 작성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에 부적당한 21개 행정법규를 폐지하여 시장경제체제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길을 열었다.

(2) 소유제도의 개혁

1) 국유기업제도의 개혁

중국경제체제 개혁과정중 국유기업 개혁은 시종 소경제체제개혁의 중심이 되는 문제의 하나였다. 20여년 동안 국유기업 개혁의 모든 조치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대체적으로 다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이며 권리확대와 이익양여(擴權讓利)였다. 이것은 국유기업 개혁의 초

기 단계이며 주로 국유기업 경영자주권을 확대하고 利改稅를 실행하는 것이며 이익을 국유기업에 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국유기업의 활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⁴⁵⁾ 그후 두번째 단계인 1985년부터 1991년까지는 국유기업에 대해 도급(承包), 임대 등 여러 가지 경영방식을 도입하고⁴⁶⁾ 소유권과 경영권분리원칙을 채용하는⁴⁷⁾ 방식을 시행하였다.

세번째 단계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이며 경영구조를 전환하여 현대기업 제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GATT/WTO가입에 따른 시장경쟁원리에 국유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⁴⁸⁾

2) 비공유제 경제의 육성·보호

개혁개방전에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영경제의 존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며, 1978년 중국인대 5屆 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헌법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산요소 소유제는 현단계에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즉 사회주의 전민소유제와 사회주의 노동군중집체소유제이다”, “국가는 비농업 분야의 개체노동자가 城鎮(도시와 읍) 또는 농촌의 기층조직의 통일적인 안배와 관리하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타인을 착취하지 아니하는 개체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사회주의 집체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후 중국은 사영경제의 존재를 허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이 필요하여 1982년 이후 중국은 3차례에 걸쳐 중국헌법의

45)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예컨대, 《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자주권확대에 관한 약간의 규정》, 《국영공업기업의 자주권의 진일보 확대에 관한 잠정규정》 및 《국영공업기업이윤유보에 관한 잠정판법》 등이다.

46) 이에 관한 법령으로는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도급경영책임제잠정조례》와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소규모공업기업 임대잠정조례》 등이 있다.

47) 이에 관한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국유기업의 재산은 국가소유에 속하고 국가는 소유권과 경영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유기업에 경영관리를 위탁하고 국유기업은 국가가 그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을 점유, 사용 및 법에 의거한 처분의 권리를 향유한다.

48) 국유기업이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전민소유제공업기업경영메커니즘전환조례》를 공포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을 현대기업으로 설립할 필요에 적응시키기 위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8屆 5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유기업법》을 제정하였다.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최근의 개정은 1999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9屆 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헌법수정안이며 사영경제조항의 관련규정을 “법률규정의 범위내의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에 대하여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개정된 헌법에 기초하여 중국은 《중국인민공화국 사영기업잠정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을 공포함으로써 사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3) 시장경제법률제도의 확립

1) 의 의

GATT/WTO가 국내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국의 대외경제법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경제개혁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외국인투자과 경제교류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의 시행은 새로운 경제법제의 확립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 나타난 모든 법제도중에서 외국인투자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의 통일은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해서만 도입되었으며 1993년 말에는 많은 중국공산당내의 개혁적인 지도자들이 중국의 경제적·법적 구조조정 전반에 국제규범의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여왔다.

그들은 체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GATT/WTO 가입신청에 따른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왔다. Donald C. Clark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코 무역(trade)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국내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 있는 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僞裝馬(stalking horse)로서 GATT를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기업신문에서 게재된 기사는 “중국이 일단 GATT에 가입하면, 시장메커니즘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개혁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계획경제의 뿌리깊은 결함들(deep-level defects)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GATT가 (중국 경제의) 현행 구조에 미치게 영향은 단순히 활력(dynamism)을 얻도록 기업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계획·승인(행정)기관의 부존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폐쇄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고 채용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형성 등에 따라 고도의(경제적) 효율성이 수반될 것이다.

한편, 시장경제는 시장주체, 시장질서, 정부의 거시적인 통제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용환경으로 구성되는 하나의 큰 체계이고 그 자체가 미치는 사회관계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상황도 대단히 복잡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경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성질과 작용이 다른 여러 법률들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점에서는 중국의 국내법 체계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즉, 헌법 및 민법, 상법, 경제법, 사회법, 행정법, 형법 등 중요 법률들은 모든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정비되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내 시장주체에 관한 법률과 시장행위의 규율에 관한 법률,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법률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시장주체에 관한 법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주체의 자격을 규정하여야 하며 시장주체는 주로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관련법은 시장주체관련입법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조직형태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① 회사법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새로운 중국의 회사법이며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적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회사는 통상적으로 회사법에 따라 중국 국경내에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현대기업의 전형적인 조직 형태이며 중요한 시장주체이다. 회사법은 중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라 함은 출자자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자산 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주식회사는 그 자산전부가 等價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소유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지되, 회사는 그 자산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그 밖에 회사법은 중국의 현실적인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였으며 유한책임 회사중 국유독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규정을 두어 현재의 국유기업이 회사로 개조될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하였다.⁴⁹⁾

② 합자기업법(合夥企業法)

199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은 합자기업의 설립, 조직, 운영, 해산 및 대내외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합자기업이라 함은 합자기업법에 의하면 중국국경내에 설립된 각각의 동업자가 합자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출자하고, 공동경영하여 수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합자기업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의 연대책임을 지는 영리적 조직을 말한다.

③ 독자기업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은 개인독자기업의 설립, 운영, 終止 및 대내외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개인독자기업이라 함은 독자기업법에 의하면 중국 국경내에 설립되고 1인의 자연인이 투자하여 재산은 투자자의 소유이며 투자자가 그 재산전부로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영리적 조직을 말한다.

3) 시장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시장경제에서, 시장주체는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주체행위의 자주성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시장주체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주체의 행위는 다음 두 가지 방면을 지향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첫째는 권리행사이고 둘째는 의무이행이다. 그중 권리행사는 가

49) 王家福, “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 『中國法』, 2001년 1기(제99기), p.4.

장 중요한 것이며 시장주체가 영리적 목적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형식이다. 의무이행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며 시장주체가 영리목적을 실현하는 조건이자 보증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중 시장주체행위를 규범화한 법률도 시장주체의 각 부분의 권리와 그 본질적 내용의 실현을 규범화하고 보장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방면에서의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물권법

물권법은 통상적으로 공민, 법인, 비법인 단체가 직접 통제하고 지배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시장주체가 보유하는 자신의 재산은 상품교환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물권법은 시장경제를 발휘하는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중국개혁개방이후 한 걸음 한 걸음 물권법제도를 확립시켜왔다. 현재 물권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기타 몇 개의 단행법속에 각기 포함되어 있다.⁵⁰⁾

1986년 4월 중국인민대표대회 6届 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며 주로 평등한 주체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 있는 재산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소유권을 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인민과 집체 소유의 재산 및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된다. 그와 동시에 경영권과 사용권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유권과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자신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해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가 소유의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전민소유제 단위 또는 집체소유제 단위가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집체가 소유하는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집체가

50) 보다 구체적인 것은 楊振山, “社會主義市場經濟與中國物權法制度”, 『法學雜誌』, 2001년 제2기(총 제125기), pp.2-4.

사용하는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집체가 경영을 도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도급경영권을 보호한다. 넷째, 국가소유의 광산은 법에 의거하여 전인민 소유제 단위와 집체 소유제 단위가 개발채취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공민도 채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합법적인 채광권을 보호한다.

② 계약법

계약법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시킨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계약법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시장경제는 바로 계약경제이며 시장경제는 바로 자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많은 주체간에 계약관계가 부단히 발생하고 채무는 부단히 이행되고 채권은 부단히 실현되는 과정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계약관계가 없다면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보장하는 계약법은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시장경제도 없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981년과 1987년 계속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 3가지 계약법은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병존하는 이들 3 계약법들은 계획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구 법률 이론적인 내용을 반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이한 계약관계를 따로 따로 규율함으로써 상호간에 협조와 일치가 결여되었다.⁵¹⁾ 계약법의 통일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9屆 제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하 “신계약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계약법은 3개의 계약법이 병존하는 상황을 없애 거래규칙의 통일화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 계약자유원칙, 공평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및 위약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매매, 차관, 용자,

51) 王家福, op.cit., p.4.

임대 등 15종의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시장경제의 필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²⁾

③ 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제도를 규정하고 어음·수표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이후, 어음수표제도는 차츰 회복되어 어음수표는 지불, 환어음, 신용, 상계채무 및 용자 등의 면에서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여왔다.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은 사람들이 날로 발전하는 거래중에서 더욱 빈번하게 더욱 원활하게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가 가져야 할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④ 증권법

증권법은 증권발행, 거래 및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은 일찍이 1950년대에 국채를 발행하였고, 1980년대 초 일부 기업들이 주식과 기업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증권발행시장과 증권거래시장이 이미 전면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중국의 증권거래에 관한 입법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점보다 늦어졌음은 분명하다. 199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증권거래는 주로 《회사법》중의 주식, 회사채권의 발행·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였다. 《주식발행·거래관리잠정조례》 등 행정법규, 《증권거래소 관리판법》 등 행정규장 및 증권감독위원회가 공표한 규범성 문건에 따라 운용되었다.

입법지체 국면을 타개하여 더욱 원활히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의 공공이익을 보호하고 공개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한 증권발행·거래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중국 전인대 9屆 6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 통과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

52) 동법의 입법배경, 지도이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王胜明, “合同法的立法背景, 指導思想及適用範圍,”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다.⁵³⁾ 이 법은 증권 발행, 거래 및 감독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⑤ 보험법

보험법은 보험계약당사자 및 관계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아울러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의 법률이다. 199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총칙, 보험계약 및 보험업설립과 관리에 대한 규범을 통하여 상호부조의 형식으로 거래의 각종 위험, 신체위험,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완비된 보험제도는 기업과 개인이 특정한 위험으로 인한 사고 또는 특정한 사고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당한 의존할만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안정과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4) 시장질서를 규율하는 법률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바로 시장질서를 규율하고 보장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시장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평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며 정당한 경쟁을 보장하며 소비자와 사회공공이익 불침해의 확대가 포함된다. 현재 중국의 시장질서부분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운용메커니즘이다. 199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른바 부정경쟁이라 함은 경영자가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법률은 경영자가 시장경쟁중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부정경쟁행위의 범위, 부정경쟁의 금지를 집행하는 기관 및 부정경쟁행위의 처벌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정경쟁의 장려·보호, 부정경쟁행위 억제, 경영자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시장경제의 건전한

53) 이에 대한 전문은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update_chi.htm.

발전 보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하고 있다.⁵⁴⁾

② 광고법

광고는 기업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다. 각종시장영역에서의 활발한 광고활동은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완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심각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은 광고주, 광고업경영자, 광고발표자 등이 광고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준칙과 그에 상응하는 법률책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광고행위의 규율, 광고의 건전한 발전 촉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사회경제질서 유지, 시장에서의 광고의 적극적인 작용 발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③ 소비자권익보호법

시장경제조건하에서 그 일방은 현대화된 대회사, 대기업이며 이들은 강력한 경제적 실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활동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일방인 대규모의 소비자들은 분산된 개체로 표출되므로 경제적 실력은 미약하여 시장활동에서 가장 쉽게 피해를 입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경제법률제도로 하여금 약자 보호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의 의무, 국가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소비자단체, 경쟁의 해결과 법률책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고 있다.

5)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규율하는 법률

중국의 시장경제는 거시적 통제가 실시되는 시장경제이다. 정부의 거시적 통제를 규범화하는 법률은 국가가 사회 전체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간접적인 거시적 통제조치로서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54) 王家福, op.cit., p.6.

보증한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은 정부의 거시적 통제행위의 범위, 내용 및 수단을 규범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시적 통제행위의 목적실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중국의 현행법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예산법

국가예산은 정부가 연간재정수지계획의 형식으로 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국민의 일부 소득에 대하여 집중적인 통일분배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국가예산은 정부가 거시적 통제를 수행하는 주요수단중의 하나이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은 예산의 편제, 심의통과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 관리권능, 예산수지범위, 예산의 편제, 심사, 승인, 집행, 조정 및 결산, 감독과 상응하는 법률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앙과 지방의 依法 재정관리, 依法 재정처리의 보장 및 정부의 경제발전에 대한 거시적 통제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② 중앙은행법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지위, 조직 및 권능·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중국인민은행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임을 규정하고, 중국인민은행에 화폐정책의 수립·집행, 인민폐발행, 인민폐유통의 관리, 심사승인, 금융기관의 관리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국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중국의 중앙은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화폐발행고의 통제·은행자금환수방출, 이자율과 어음할인을 조정의 방법을 법률에 따라 운용하여,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세 법

세수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주된 원천이며 정부의 거시적인 경제통제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세수는 반

드시 법에 의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세수 관련법 정비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바, 몇 가지 법률이 제정·공포되었다. 예컨대, 1992년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7屆 2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1993년 11월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정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조례》 등으로 국가의 징세 실현을 보장하고 있다.

④ 가격법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가장 민감한 신호가 되며 가격의 경제조정 에 대한 기능은 극히 중요한 것이다. 1998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은 가격책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가격관리기구의 권능과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경영자의 가격책정행위, 정부의 가격결절행위, 물가수준조정, 가격감독조사와 법률책임 등을 규정하고 가격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작용의 발휘, 시장물가의 안정화,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강력하게 보장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6) 노동과 사회보장을 규범화하는 법률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안정의 유지,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볼 때, 사회안정을 유지·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형식으로 사회가 의존할 존재의 기초, 즉, 노동자의 노동권과 기타 관련 권리를 규범화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의 이 분야의 법률규정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노동법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노사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취업의 촉진, 노동계약, 노동시간 및 휴식·휴가, 임금, 노동안전 위생, 여성노동자와 미성년노동자의 특별보호, 직업훈련, 노동쟁의 등 일련의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노동자의 절실한 이익의 실현을 함

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는데 대해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② 사회보장법

이 법률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 당해 국민에게 특수한 곤란이 발생한 때 일정한 물질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중국에서 계획경제 체제하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사회안정을 보증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심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농후한 계획경제체제의 색채를 가진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보가 비틀거리게 되어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⁵⁵⁾ 시장경제의 필요에 적응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특수한 충격완화장치와 안전망으로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의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개혁을 진행하여 사회보장입법의 행보를 가속화하였다.⁵⁶⁾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사회보장개혁의 접근방법은 사회 전반적 계획 수립·배려(統籌)와 개인의 계좌(에서의 지출)가 상호결합된 양로 및 의료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사회구제제도를 완비함으로써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규율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기업직원양로보험개혁에 관한 결정》, 《통일적 기업직원기본양로 보험제도의 확립에 관한 결정》 및 《실업보험제도조례》 등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관련부처와 위원회에서도 《직원 업무상재해보험제도 試行판법》 등의 규장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령과 규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순조로운 진행을 추진하고 보장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7) 시장경제사범에 대한 처벌법령

법률수단을 운용하여 각종 위법활동을 제재하고 모든 범죄행위를 소탕함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시행

55) Ibid., p.5.

56) 龍翼飛,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保障法律制度,”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expert1_china.

하는 것은 중국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각양각색의 교란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강제력으로 실시되는 법률의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보장작용을 보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방면에서 특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1997년 3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8屆 5차 회의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중국 형법”이라 한다)에 대한 개정이다. 여기에서 중국 형법 제2편 각칙중의 제3장 “사회주의경제질서를 파괴한 죄”를 “사회주의시장질서를 파괴한 죄”로 개정하였다. 그 내용도 원래 15조만 있었으나, 개정하여 8절 89조가 되었으며 회사, 기업의 관리질서를 방해한 죄, 지적재산권 침해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중국형법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장이 더욱 완비되었다.⁵⁷⁾

제 3 절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1. 1994년 대외무역법

(1) 의 의

GATT/WTO가 중국법률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는 대외무역법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WTO와 그 전신인 GATT는 전세계 무역 자유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회원국들의 국내법인 대외무역관련법에 미치는 영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987년부터 대외무역정책, 대외무역체제, 세관관세제도, 상품검사제도, 수출입허가증제도, 수출입상품가격 책정방법 및 외환관리제도 등의 면에서⁵⁸⁾

57) 이에 대해서는 蔣志培, “中國知識產權的司法保護與展望”, http://ww/newchinalaw.com/chi_law/1999/3/obser1_chi.htm.

58) 張桂紅,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總第102期(2001.4), p.182.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개혁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중국이 GATT 복귀를 신청한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중국은 수출입보조금제도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1992년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감소시켜 왔다. 중국은 이미 1992년 43%에 달하던 평균관세율을 1999년에는 16.8%로 인하하였다. 또한 1992년에는 16종류의 수입허가증요구품목을 폐지하였으며 수출입관련 쿼터제와 허가증제도 등의 비관세조치를 1992년의 1200여 종

GATT 및 그 체약국의 요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왔다.

종전까지 중국 정부는 오직 행정법규와 지령에만 의존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여 왔다. 이러한 행정법규와 지령의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아 외부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1979년 대외무역개혁이 시작된 후 15년 동안 6개의 행정법규에 의하여 대외무역이 규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국제규범과 개별적인 행정규제들에 대한 법률 공개를 옹호하는 GATT 관행과는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중국 대외무역 관련 법령의 통일성과 투명성 결여를 초래하였던 전국성 법률의 부재는 중국을 무역파트너로 하는 국가들에게 깊은 우려를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중국의 GATT가입의 주요 장애요소였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자 대외무역법 제정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 결과 1994년에는 최초의 포괄적인 전국성 법률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 1994년 7월 1일 시행)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종전에 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중국의 대외무역관련법의 불통일성과 불투명성의 폐단은 상당한 수준까지 시정되었다.⁵⁹⁾ 동 대외무역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GATT 가입을 위해 필요한 반덤핑관세, 반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등 GATT 협정에 부합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서비스교역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제서비스교역분야에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다른 체약국에 대해 시장진입과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법은 최초로 법률형식으로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⁶⁰⁾ 법률상으로 GATT/WTO하의 자유무역제도

류에서 현재는 300여종으로 축소시킴으로써 비관세장벽 폐지 일정을 단계별로 진행시키고 있다. 1994년 대외무역법은 중국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와 사영기업의 수출입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1994년에는 이중외환제도(외환쌍체제)을 폐지하고 1996년에는 경상항목에서의 인민폐 자유태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59) 王超英, 孟憲剛, 藏耀明, 『對外貿易法實用問答』, (北京:中國商業出版社, 1994), pp.20-22.

60) 제15조.

를 중국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1994년 대외무역법의 입안자들은 이 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GATT의 원칙과 관행을 반영한 다음 3가지 원칙을 따랐다. 즉, 첫째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과 법령은 대외무역법에 반영된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되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출입에 대한 금지와 제한은 GATT 규칙에 부합되고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절차(legal proceedings)를 통해서 국내산업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외무역법의 공포이후 상품 및 기술에 관한 무역의 자유화와 서비스무역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제정은 GATT가 요구하는 무역제도의 통일성과 투명성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무역법제도는 종래 내부규정 및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의 요소가 많았고 또한 연해개방도시 등의 지방적인 제도와 규정이 중앙 및 일반적인 전국제도와 상이한 상태였으므로 집행면에서 혼란, 불통일성이 야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와 규정중 일부를 폐지하여 통일성을 도모한 대외무역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역에서 계획관리를 폐지하고 행정의 간섭을 축소시키고 무역기업의 자주권을 보장함으로써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수출에 관한 상품할당에의 입찰제도의 도입과 그 공개입찰의 실시, 수입허가증을 요하는 대상품목의 축소, 관세인하 및 수입조절세의 폐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대외무역관리의 분권화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혁은 대외무역관리의 분권화와 더불어 시작하였다. 1979년이전, 모든 주요 무역결정은 중앙정부의 대외무역부가 내렸으며 모든 대외무역거래는 10여개의 대외무역부 직할하의 대외무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중국은 중앙정부의 대외무역부이외의 다른 부처, 성·시 및 보다 많은 생산기업에 대외무역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외무역관리를 분권화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수백개의 대외무역

회사들이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 및 성·시의 후원을 받는 생산기업으로 설립되었다.

1987년 그 숫자는 1,500개에 달했으며 1990년에는 5,000개로 증가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대외무역은 9,000개의 대외무역공사, 제조업기업, 과학연구기관 및 공업무역기업 그리고 190,000개의 대외무역업의 외국인자금조달기업 등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국영대외무역공사와 기타 대외무역권을 가진 조직들은 여전히 특정의 국영무역공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16종류의 중요한 수출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그러한 무역의 분권화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 활력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최근의 중국의 괄목할 만한 대외무역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분권화의 이익을 얻는 대신 그에 부수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 전체의 무역정책 시행의 통일성과 일관성 결여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감독기능의 상실 등이라 할 수 있다.

지방당국과 중앙정부 산하의 여러 부처들은 때로는 중국의 정책과 불일치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성 법령과 다르고 때로는 그와 충돌하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대외무역정책과 법령은 통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중국의 대외무역파트너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을뿐 만 아니라 GATT 체결국들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통일성 결여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4년의 대외무역법은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대외무역정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국무원 산하의 대외경제무역 담당부서(현재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게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국 전역에 걸쳐 대외무역문제를 지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였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관리에 관한 통일성을 부활시켰으나 개혁이전의 대외무역체제를 특징지었던 고도의 중앙집권화된 구조는 부활시키기 아니하였다. 그 대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역할을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 일반 목표의 개발, 법령 시행의 감독에 있어서의 거시적 관리의 하나라고 정의함으로써 대외무역에 관한 통일성과 분권화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대외

무역법하에서 이러한 거시적 관리는 법령의 공포와 시행을 통하여 또한 점차적으로 관세, 이자율, 환율 및 대출 등의 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것이다. 계획경제의 특징중의 하나인 투명성 결여는 중국의 개혁이전의 대외무역제도에서 두드러졌으며 그에 대한 GATT 체약국들의 우려가 있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체약국들은 중국이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극히 제한된 수의 정부관리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흔히 내부문건이라 부르는 내부지침의 남용은 대외무역정책의 투명성이라는 국제관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⁶¹⁾ 중국의 이러한 관행에 의하여 연간 수출입계획은 국가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1980년대초 이후 중국은 대외무역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법령 특히 대외무역법의 제정은 대외무역제도에서 행정적 통제를 제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GATT 체약국들이 내부문서의 남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중국은 종전까지 비밀로 해왔던 상당히 많은 명령, 규칙 등 행정법규를 공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무역에 관한 공개되지 아니한 법률이나 행정법규, 행정지침 또는 정책조치등은 시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다. 대외무역법의 시행은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동 법은 외국무역파트너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국의 통일적인 대외무역법제를 확립한 것이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관할권, 권한 및 다른 대외무역관련 정부기관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로써 외국의 무역파트너들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이외의 무역관련 정부기관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비관세장벽, 시장접근, 정부보조금,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과 같은 국제무역상의 주요 문제들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은 GATT 헌장과 기타 국제문서상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서 모든 종류의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무역법은 비관세장벽을 축소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에

61)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GATT가 요구하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문건(interanal documents)의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한 낡은(oldstyle) 관리방식을 버리고 그에 갈음하여 보다 많은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WTO entry to benefit U.S. companies despite problems",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e/C000110652.asp.

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중국의 대외무역계획 관행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다.

30년 이상동안 대외무역계획은 중앙정부가 대외무역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온 가장 효과적인 비관세장벽이었다. 대외무역에 상품별 수출입에 관한 수량, 수출입 상대국 및 외환배정 등을 바로 그러한 대외무역계획에서 정하였기 때문이다. 대외무역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국가는 대외무역공사들이 수입계획에 포함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고 또한 수출계획을 집행하면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외무역공사들에게 외환을 배정하였다. 대외무역계획의 무역제한적 효과는 그것이 시장력(market forces)에 의하여 수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중에도 중국은 대외무역계획의 비중을 점차 축소시켜왔다. 강제적 수출계획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6년에 중국 수입액의 40%를 차지하였던 강제적 수입계획도 1992년에는 18.5% 수준으로까지 축소시켰다. 대외무역법은 그 입안자들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강제적 대외무역계획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계획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국의 새로운 무역제도하에서는 대외무역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3) 주요 내용

1994년 대외무역법은 종합적이고 법률적으로 정의된 중국의 대외무역정책과 관행에 관한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동법은 먼저, 1993년의 개정헌법에서 확립된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축진이 중국의 대외무역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선언하였다. 즉,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동법은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보호유지이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그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 법은 ‘대외무역’이라는 용어를 “상품의 수출입, 기술의 수출입 및 국제서비스교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GATT와 WTO와 같은 국제조약과 조직에서의 모든 의무를 중국은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

음을 확인하고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또는 회원국인 국제조약과 협정에 의거하여 또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체약국 또는 회원국에 대해 최혜국대우지위와 내국인대우를 부여한다. 이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대외무역법은 통일적인 국가무역정책, 투명성 및 비관세장벽, 시장접근,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한 GATT 원칙과 국제관례의 준수 등의 문제를 역설한 것이었다.

제9조에서는 물품 및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의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비생산물품,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를 수입하고 그 생산물품을 수출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물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운 수출입을 보장한다(제15조)고 하지만 뒤집으면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물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출입제한 사유를 열거한 제16조는⁶²⁾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품의 수출입 제한의 경우에는 쿼터관리 또는 허가증 관리를 하고, 기술의 수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품목은 허가를 얻어야 수출입할 수 있다(제19조).

제23조는 국제서비스교역분야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바, 국제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하여 허용되

62) 1. 국가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수출대상국가나 지구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5. 모든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의 경우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국가의 국제금융의 위상과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는 한도내에서 시장진입을 허용하거나 국민대우를 부여하며 몇 가지 사유에⁶³⁾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사유이외에도 한편 국제서비스 교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바,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에 해가되는 경우, 2.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제27조는 또한 대외무역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여 1.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경쟁자를 배척함으로써 불공평한 경쟁을 하는 행위, 4. 국가의 수출관련 환급세금을 사취하는 행위, 5.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은 무역금지, 덤핑, 보조금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직접 GATT에 규정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9조(긴급수입제한조치), 제30조(덤핑) 및 제31조(보조금)는 GATT의 제19조, 제11조, 제16조에 사용된 표현을 담고 있다. 적어도 중국의 이러한 분야에 서만큼은 국제관례에 한 걸음 더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32조는 제29조, 제30조,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국무원이 정한 관련부문이나 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29조는 “수입상품의 수량증가에 따라 국내의 동일상품이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가 심각한 손해나 손해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소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는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에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63)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의 유지보호
 2. 생태환경 보호
 3. 국내 특정 서비스산업의 육성
 4. 국가외환수지 균형 유지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한

손해의 위협 혹은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제31조는 “상품수출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이미 육성중인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해의 위협 혹은 장애를 초래할 경우 국가는 이를 제거,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외무역권의 확대현상

(1) 의 의

중국 국영무역기업의 역할은 과거 20년 동안 크게 위축되었음에도⁶⁴⁾ 불구하고 WTO회원국들은 중국의 국영무역기업들이 중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시장메커니즘 의해 輸入이 결정되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국은 WTO 회원국들은 중국의 현재의 상황보다는 중국의 과거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판단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여왔다. 물론 중국에서 국영무역기업의 역할이 변화되어 온 것만을 사실이며 대외무역권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상 국영무역기업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현저한 감소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국영무역기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한다.

1978년 당시에는 중앙정부의 소유·지배하에 있는 20개도 되지 않는 대외무역공사들이 광범위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

64) 국영무역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갖는 중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는 David Blumenthal, “Reform’ or ‘Opening’? Reform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WTO Access- The Dilemma of Applying GATT to Marketing Economies”, UCLA Pac Basin L.J. Vol.16(1998), p.188.; 국영기업 개혁프로그램의 실패 또는 제한적 성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논문들도 많아. 예컨대, Huang Yiping & Ron. Duncan, “How Successful were China’s State Sector Reform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es, Vol. 24(1997), pp.65-78에서는 그러한 개혁이 국영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⁶⁵⁾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는 200,000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⁶⁶⁾ 국영무역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수입량을 통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에서 여러 다양한 실체들이 어느 정도로 수입권을 허가 받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⁶⁷⁾ 현재 허가 받지 아니한 중국측 당사자가 수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무역에 종사할 수 없다.⁶⁸⁾

한편, 중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수입권한의 부여에 관한 법규정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아직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중국사영기업으로 하여금 대외무역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이다. 또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에 대한 실험적 조치들은 장래의 변화를 시사해주는 바 크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WTO가입후 5년 이내에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시킨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물품수입을 할 수 없다.⁶⁹⁾

영업기업(business enterprises)은 재판매를 통한 수입을 할 수 없으며 중국의 개인이나 가게는 자신의 소비를 위하여 또는 재판매를 위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는 없다. 한편 중국정부가 WTO가입후 수입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국영무역을 이용할 수 있을 지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에도 엄청나게 수입업체가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상품은 수입이 시장기능에 어느 정도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65) Will Martin & Christian Bach, "The Importation of State Trading in China's Trade Regime", in F. M. Abbot(ed.), *China in the World Trading System: Defining The Principles of Engagement*(Kluwer, Cambridge, 1998), pp.150-151.

66) Ibid., p.161.

67) 이와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는 Mark Williams and Zianhua Zhong, "The Capacity of Chinese Enterprises to Engage in Foreign Trade: Does Restriction Help or Hinder China's Trade Relations", *J. Transnational L & P.* Vol.8(1999), p.197.

68) 중국 대외무역법 제9조 참조.

69) 曹建民, "WTO加入與我國的對外經濟貿易立法," 『中國法學』 2000년 제1기, p.13.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러한 회사들에게 특정한 상품에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지령을 내리기도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 국영무역기업 또는 기타 허가받은 기업만이 존재하는 상품들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통일적인 감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설탕과 담배에 대한 대외무역권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다른 회원국들은 그러한 제한이 WTO 가입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에 대하여 이에 관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하였다.

(2) 대외 무역권이 부여된 기업의 유형

1) 국영무역기업

① 대외무역경제협력부 관할하의 국영무역기업

대외무역경제협력부는 전업 무역공사를 관할하고 있다. 1956년부터 1978년의 기간동안 이들 대외무역공사는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 그 기간동안 중국 상품생산기업들은 전업무역공사들로부터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전업무역공사들을 통해 수출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들 전업무역공사들중 일부는 아직도 특정한 분야에서 수출입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대외경제무역부이외의 다른 중앙정부 부처들도 1978년 이후에는 자신의 관할하의 전업무역공사들을 설립하였으며 당해 부처가 관할하는 상품생산기업들과 직접 관련된 상품들을 수입할 수 있다.

② 지방정부관할하의 무역공사

1978년 이후에는 지방정부도 대외무역공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무역공사들도 자신의 지방 경제에 필요한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게 되었던 것이다.

③ 국가소유생산기업

1984년이후 국가소유생산기업들은 국영무역공사들 통하지 않고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무역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이러한 신청은 대규모 생산기업들만이 할 수 있었으나 점차 확대

되어 현재는 모든 국가소유생산기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외무역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1995년 무렵에는 5000개의 대규모 생산기업들이 대외무역권을 부여받았다. 생산기업은 그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만 대외무역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대외무역권은 최소 수출액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5개의 경제특구에서는 실험적 프로그램으로서 생산기업의 대외무역권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모든 생산기업이 대외무역권을 갖게 되지만 그러한 대외무역권의 부여는 생산자로서 정상운영(현재 이윤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무역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등록제를 통하여 획득한 대외무역권은 아직도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④ 국가소유내국거래기업

1992년 이후 국가소유내국거래기업(생산기업에 대비됨)도 대외무역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외무역권은 수출입의 비율의 유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1995년, 62개의 내국거래기업들이 대외무역권을 획득하였다.

2) 외국인 투자기업

1984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외합영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자기업에 관한 중국의 법률들은 1979년, 1988년 및 1986년에 각각 그러한 기업들이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말까지는 약 140,000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그러한 제한을 조건으로 수입권을 허가받았다. 1992년 9월 이후 일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전업대외무역회사(이하 “중외투자대외무역회사”라 한다)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입권을 허용받게 되었다. 다만 이들 회사는 승인받은 경영범위 밖에 있는 상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수입허가를 얻도록

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쿼터량 배정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무원은 이러한 공사들을 통제하여 왔다.

3) 중국사영기업의 대외무역권

중국의 사영기업은 1999년 1월 1일부터 대외무역권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권리는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수입에만 한정되고 있다.

(3) 국영무역기업을 통한 수입통제가능성

1) 의 의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수입통제에 대한 규제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48년 GATT 출범시부터 GATT 규칙이 국가무역운동을 규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연혁적 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GATT체약국 및 현재의 WTO 회원국들이 국가무역 규칙의 불충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 가입협상과정에서의 국가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들에 관한 협상은 지금까지 충분하게 시정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중국법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외무역부 또는 기타 부처 관할하의 또는 지방차원의 국가소유대외무역기업에 의해 또는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타 실체들만이⁷⁰⁾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권은 일정한 조건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권을 일정한 수출량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중국의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내국인 대우 및 TRIMs를 포함한 GATT의 제규정과 일치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GATT하에서 회원국이 국가소유기업을

70) 국가소유생산기업, 국가소유국내거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외투자대외무역공사 등.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국가무역기업과 관련된 GATT규정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 -이것은 국영무역기업등을 통해 수입되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를 취할 수 있는 몇개의 GATT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금지 및 수입쿼터의 부과를 금지한 제11조의 규칙은 국가무역운영을 통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수입제한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회원국은 국가무역기업을 통하여 유지되는 어떠한 수량적 제한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4.2조에 의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GATT 11:2는 어떠한 상품의 수입 제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지 내국판매의 제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GATT 제3조상의 내국인 대우는 수입상품의 대우에 대해 적용된다. 이 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2 및 제3:4이다. 제3:2는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높은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offering),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법 규칙 및 요건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국가무역기업을 통하여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소유기업이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를 판매, 구입하는 경우 동 기업이 일단 문제의 상품을 수입을 하였다면 그 수입상품을 동종 국내상품을 거래할 때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GATT 패널은 「국내산 맥주는 사적 유통망을 통해 인도되는 것은 허용하면서 수입맥주는 당해 국영무역기업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인도되도록 요구한 맥주 수입독점권을 가진 국영무역기업이 수입맥주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제3:4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상품이 수입된 후에만 적용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조는 국가무역기업의 구매와 관련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평등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 자체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

셋째, 제8:1(a)조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통상적 관세이외의 수수료와 부담금(Fees and charges)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소유기업이 그 이윤(mark-up)에 추가하여 수입의 취급 또는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비스제공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넷째, WTO 회원국들은 국가무역기업에 관한 WTO 실무작업단에 의하여 검토되는 일정한 정보를 GATT Council on Trade in Goods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특별한 또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모든 기업들에 의한 모든 수출입 명세를 제공하여 표준질의서(standard questionnaire)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정보는 관세표(tariff bindings)의 대상이 아닌 상품과 관련하여 국가무역기업이 적용하는 이윤(mark-up)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GATT는 수입독점을 통한 관세양허의 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관심은 그 기업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수입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쏠려 있다. 제2:4조는 당사국이 자신의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초과하여 수입독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percentage mark(이윤 백분율)이 percentage bound tariff(구속적 관세 백분율)이 되지 않도록 수입독점업체가 부과하는 이윤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여섯째, 제17조는 수입상품의 원산지 국가에 대한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7:4조는 수입독점기업이 수입상품을 구매시의 무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적 고려”에 의한 수입상품의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원칙은 내국인 대우를 포함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17조는 수입상품의 원산지국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물품 구매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차별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가 내국인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제17조와 “상업적 고려” 의무는 수입상품 원산지 국가간의 차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GATT 규정의 비효율성

국가무역기업에 대한 GATT 규정이 외견상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중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때에도 중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GATT 규칙상의 몇 가지 불확실성과 불충분성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불충분성이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 중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중국의 경제규모 때문이다. 소규모 경제를 가진 국가에 의한 GATT 규정 일탈행위는 전체로서의 GATT체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회원국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용인하거나 관대하겠지만 중국의 규정 일탈행위는 세계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 무역체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

첫째, “통지”규정은 종전에 그다지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1980년부터 1994년의 기간동안 GATT 당사국의 약21%만이 국가무역기업의 활동에 대해 통지한 바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제17조의 통지 대상을 정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을 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헝가리는 자신의 국가무역기업 대부분이 제17조에 의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무역대상국들은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투명성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제17조에 의한 중국의 통지가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다.

둘째, 제11:1조의 적용은 정부의 특정조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당해 정부의 법령이 없다면 제11:1조에서 의미하는 수량제한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최근의 급속한 법제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행정관행과 지령을 통한 비공식적 통제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

셋째, 상품에 관한 회원국의 관세 양허표상의 관세율표가 없다면 제2:4조는 적용될 수 없다. 중국의 WTO가입에서는 중국의 관세양허표에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율표가 포함될 것이다.

넷째, 제2:4조는 제11:1조의 예외는 있지만 관세할당이 적절한(in place)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 왔다. GATT 패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윤(mark-up)은 수량제한으로 초래된 물품 부족상황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제2:4조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 제11:1조의 금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상품목록에 잔존하는 수입쿼터의 단계적 폐지를 조건으로 하여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2:4조는 그러한 단계적 폐지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한 국가무역기업의 이윤(mark-up)을 규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어떠한 상품에 대한 관세율표가 있는 경우 제2:4조가 허용가능한 이윤(mark-up)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허용가능한 이윤의 결정에 관한 규칙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에 관한 3건의 진정사건에서 GATT 패널은 「제2:4조는 수입독점업체는 정상적인 경쟁상황(독점의 부존재)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이윤 마진을 평균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허용가능한 이윤마진의 계산에는 몇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제2:4조는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제31조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 제31조 제4항은 이러한 계산에서의 내국세의 운송·유통비용의 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내국세, 운송비 및 기타 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 수집상의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제2:4조가 평균치(average)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치의 계산과 관련하여 사용될 데이터는 정의를 필요로 하며 데이터 수집기간도 정의되어야 한다. 이윤시의 경비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배제가 중국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인지의 여부는 적절한 기간동안 토지가격, 판매가격(및 여러 가지 비용과 내국세)에 관한 관련 정보 수집상의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여섯째, 국가통제기업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수입독점업체들이 세계시장가격에 준수 의무가 있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마진을 합한 가격

수준에서의 국내경제 수요보다 적은 수량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GATT 규칙을 통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준수의무 관세율이 있고 어떤 국가무역실체가 그 이윤을 준수의무관세율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소유기업이 어떠한 물품을 세계시장가격에 이윤을 합산한 가격하에서의 국내경제수요 수준보다 적은 수량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2:4조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4조에 대한 주석(interpretative note)은 하바나 현장 제31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동 제31조 4항은 이윤의 계산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윤의 계산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계산에서 운송·유통비용 및 내국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바나 현장 제31조는 또한 제5항에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입독점업체는 어떠한 수입상품에 대한 완전한 국내수요를 충족시기에 충분한 수량으로 당해 수입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바나 현장 제31조 제4항을 인용한 GATT 패널의 평결은 지금까지 몇차례 내려진 바 있지만 제31조 제5항을 인용한 평결은 없었다. 또한 WTO분쟁해결기구에서도 그러한 평결을 내린바 없다. 국가무역기업이 어떠한 상품에 준수의무관세율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윤을 적용했지만 완전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된 GATT/WTO 평결은 내려진 바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진정한은 제2:4조가 판매수량이 아니라 판매가격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제2:4조에 대한 주석에 의해 제31조 5항에 명시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패널 또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제2:4조에 대한 주석적 해석은 허용가능한 이윤의 계산과 관련된 하바나 현장 제31조의 규정을 제2:4조에 수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제2:4조의 해석에 기초하여 국가무역기업이 제2:4조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윤을 제한하면서도 그 가격하에서의 소비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유

통망의 후순위 단계에서의 경쟁은 그 상품가격을 인상시키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세계시장가격과 국내시장가격간의 격차가 초래될 것이다. 국내 시장가격은 관세율표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높게 책정될 것이다. GATT의 어떠한 규정도 유통망의 상당히 아래 단계에 있는 국내경제주체들에 의해 부과되는 이윤에 대해서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수입수량에 대한 자유재량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의 불충분성은 중국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에서 국가무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중국에서 그러한 GATT 규정의 불충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3. 관세인하

1980년대 중반이전에는 관세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서 단순히 지엽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었다. 중앙계획에 입각하고 행정적 지시에 통제되는 고도의 집권적인 대외무역체제하에서 관세는 몇몇 정부 歲入源의 하나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30년 이상동안, 관세는 거의 변동되지 아니하는 관세율에 따라 대외무역부에 의하여 징수되었다. 임의적인 국가계획에 따라 수출입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세계시장에서의 당해 상품의 실제 가치(value)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관세율은 수입품의 국내최종소비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가격은 국제시장가격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국내 대체재의 가격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중앙계획경제체제국가에서 그러하듯이 관세의 역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었으며 교역량 또는 수출입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자급자족 및 국내산업 보호라는 정책에 입각하여 관세는 당해 상품의 거래 금지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성장에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1956년부터 1977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국내 총생산의 4%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액의 비율은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브라질이나 인디아와 같은 인구와 영토가 큰 개발도상국의 그것에 훨씬

신 못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앙계획체제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는 여러 행정부서와 위원회가 중국의 대외무역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부서와 위원회는 기업업무와 행정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 그들은 행정목표를 직접 기업 결정에 반영하는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외무역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할 실제적인 필요가 전혀 없었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명제의 하나는 중앙경제계획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중국 경제에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대외무역계획의 범위는 대외무역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 국가는 관세와 조세를 무역정책 수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대외무역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중국은 중앙정부에 대외무역관리의 관료주의적 구조를 합리화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 초, 대외무역부의 舊 관세국(Customs Bureau)은 部級인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로 승격되었다. 이 기관은 국무원의 직할기관으로서 관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법령의 제정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87년 재정부 산하의 기관인 Customs Tariff Rate Commission가 폐지되고 새로운 Customs Tariff Commission으로 대체되었다. 동 위원회는 재정부장관이 의장이 되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무원 직할기관이 되었다. 그 구성원은 General Administration Customs 의장과 대외경제무역부의 부장(관)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대외무역업무를 보다 투명화하기 위하여 법령과 관세율표를 공표하였으며 1987년에는 종합적인 관세법을 제정하여 1951년 이후 관세에 관하여 규율하였던 잠정조례를 대체하였다. 새로운 관세법은 모든 “관세율표는 공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5년에는 수출입관세가 1951년 이후 최초의 종합적인 관세율표에서 공표되었다. 그후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General Customs Administration의 월보인 『中國海關』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관세를 인하하고 여러 국제조직과 협정에 구현된 의무를 보다 더 부담함으로써 국제관행기준에 부합되는 관세제도를 확립시키고자 하

였다. 1983년에는 중국은 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관세 인하의 노력은 대외무역관리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자국의 국내산업, 특히 자동차, 기계 및 전자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수입제품의 갑작스러운 유입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대한 관심 때문에 일반적인 관세율 수준을 인하하기 위한 조치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1987년 무렵에는 가중 평균관세율(weighted average tariff)이 39%까지 인하되었지만 5년후 비가중 평균관세율(unweighted average tariff)이 42.8%까지 인상되었다. 다만, 각 category별 세계시장가격에 따른 무역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 평균관세율은 31.9%였다. 다른 광대한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관세율은 브라질(31.9%), 파키스탄(35.9%)의 관세율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아르헨티나(17.1%) 및 콜롬비아(15.1%)보다는 높지만 인디아(54.8%)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였다. 1995년 말에 가서야 중국은 일반적인 관세율을 23%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하로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주요 개도국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가진 편에 속하게 되었다.

관세인하는 4회에 걸쳐 산술평균으로 세율의 23%에서 17%로 인하하였다. 2005년까지는 10%까지 인하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 결과 WTO 회원국의 13-145% 수준보다 낮아 개도국에 요구되는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역을 총괄하는 체제는 기업무역허가를 자동등록제로 하기보다는 종래의 국유단일체제로부터 외자, 합자 및 기타 기업에 의한 다원화 경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4. 비관세장벽의 완화

(1) 의 의

관세의 역할이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게 됨에 따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중국이

대외무역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였을 때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들이 개발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들은 강제적인 수입계획, 지정된 국영무역공사를 통한 수입의 계열화, 수입허가제도, 할당제 및 수입통제 등 다양한 행정적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느 추정에 따르면 1992년 취해진 모든 비관세 무역장벽(외환통제제도는 제외)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에 분류품들 전체수의 17.5%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동년 1/4분기동안 총 수입품의 51.4%에 대해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한 GATT 원칙과 양립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2) 강제적 수입계획제도의 폐지

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비관세장벽에서 핵심적인 제도는 강제적 수입계획과 수입 계열화제도였다. 수입계획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국민의 생활 또는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그러한 상품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국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 가격이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일종의 수입보조금을 필요로 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입계획의 중요성은 점점 떨어져왔지만 1992년까지만 해도 곡물, 비료, 광석, 면화, 목재, 플라스틱 펄프 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여 11개의 광범위한 상품군에 대해 수입계획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품들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Harmonized Customs Tariff Schedule 분류난의 9.1%에 해당하며 전체 수입품의 18.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수입계획의 적용을 받는 모든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역시 계열화되어 있었다. 즉 그러한 수입은 강제적 계획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상품별로 지정된 국영무역공사들만이 할 수 있었다. 1992년에는 전체 수입품의 32%가 계열화를 통한 통제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입중 약 3분의 2는 강제적 계획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이었다.

강제적 대외무역계획의 점진적인 폐지와 대외무역관리의 분권화와 더불어 중앙정부는 중앙통제의 소수 국영무역공사를 통한 대외무역의 독점을 포기하고 지방과 일정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 그들 각자의 지역 또는 산업

과 관련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991년 무렵에는 수출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폐지되었으며 각각의 국영무역공사가 자신의 경영으로부터 생겨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3) 수출입허가제도의 폐지

수출입허가는 대외무역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이 널리 사용하여온 또 다른 비관세장벽이다. 중국이 강제적 수출입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1980년대 초 대외무역에 대한 허가제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모든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허가제도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 국가계획에 기초한 중앙집권화된 대외무역체제가 공고히 정착된 1950년대 중반에는 포기되었다.

그런데 경제개혁이 시작된 후 허가제도는 강제적 계획의 기능을 대체하고 수지균형 및 국내산업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후 중국은 몇 번에 걸쳐 수입계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숫자를 축소시켜왔다. 그 결과 중국에서 허가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은 대부분의 GATT/WTO 회원국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러나, 허가(licensing)제도와 관련하여 1994년 대외무역법은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외무역법의 입안자들이 입안당시 이러한 관행을 폐지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외무역법에는 특정한 상품과 기술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licensing)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허가(licensing)제도를 행정통제의 핵심적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대외무역관행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장은 허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수출입쿼터배정업무의 투명성보장과 시장메커니즘 반영

또 하나의 비관세 무역장벽인 수출입 쿼터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행은 서방 자유무역국가들의 그것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사실상 수출

입 쿼터제도, 특히 수출품에 대한 쿼터제도는 원래 서방국가들(주고 미국과 유럽경제공동체)이 중국의 수출섬유제품에 대해 부과하였던 쿼터의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일부의 수입쿼터만이 중국의 기계 및 전자산업을 보호를 목적으로 또한 수지균형의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1992년 수입쿼터는 전체 수입품중 7.7%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며 수출쿼터는 전체 수출품중 15%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쿼터제도가 무역자유화과정에 장애를 줄 정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중국의 GATT/WTO 가입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요인도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 1994년 대외무역법이 대외무역에서의 쿼터제도의 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적어도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목록의 공표 및 그러한 목록작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쿼터배정업무에 투명성과 시장메커니즘을 반영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무역법의 제정에 뒤이어 중국은 수출쿼터의 입장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였다.

제 4 절 조세법제

무차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GATT는 각 체약국들에게 타방 체약국에게 평등한 관세 대우 및 최혜국대우 무역지위 뿐만 아니라 내국인대우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조세제도가 외국기업 또는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수입품을 배제하는 위장된 보호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GATT 제3조는 특별히 국내조세와 법령을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하여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인대우 원칙하에서 기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세 및 기타 부과금, 법령 및 기타 요건들은 평등하게 국내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외국의 실제 또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1990년이전 중국은 국내기업, 외국회사 및 외국인투자기업간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소유형태하의 국내기업간에도 불평등 대우가 존재하는 대단히 복잡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가소유, 집체소유, 개인소유 등 그 소유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개혁이전시대에는 국가소유기업은 어떠한 조세부담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얻어진 이익금을 국가에 전환하였을 뿐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55%에서 68.5%에 이르는 다양한 세율을 가진 기업 이윤세(profit tax)가 도입되었다. 집체소유기업은 최고 5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그들은 정부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하였다.

국내기업과는 달리 외국인참여기업들은 전적으로 다른 조세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즉 외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것이다. 중국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기업”이라 함은 중국내에 사업장(business place)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중국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법적 지위상의 주요 차이점은 외국인기업은 중국법인이 아닌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법인이며 따라서 중국법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투자의 유형과 비율에 따라 후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전액외국인투자기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내기업에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참여기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이중조세제도하에서 그 두 형태의 기업들에 대한 조세율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중국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은 33%의 소득세(30%의 국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국가소유기업과 집체소유 기업은 누진세율로 최고 55%까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참여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조세제도는 그 복잡성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첫째, 외국인참여기업은 기업소득세이외에 공상통일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공상통일세는 1958년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각기 다른 기업, 제품 및 거래에 대해 42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단히 복잡한 조세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외국인 참여기업들은 그 산업, 제품 및 거래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둘째, 중외합작경영기업내부에서도 중국측 당사자는 국내기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외국측 당사자는 특별히 외국기업들을 위해 제정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이중적 조세정책은 중국의 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원적 제도가 GATT의 내국인대우 원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를 확립된 국제기준에 보다 근접시키기 위해 중국은 1990년 새로운 조세법을 제정하여 1991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법은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통일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에 따라 3가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금의 30%라는 고정세율(flat tax)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밖에 3%의 지방소득세가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됨으로 총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3년 말에는 중국은 국내기업에 관한 조세법제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조세법령을 공포하였다. 그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내기업들에 적용되는 통일기업세가 확립되었다. 또한 그 세율을 33%로 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 결과 국가소유기업, 집체소유기업 및 사유기업 및 기타 국내 실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율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외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종전에 내국기업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business tax)를 외국인참여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매상

세(turnover tax) 제도를 개선하였다.⁷¹⁾

다양한 조세특혜대우를 외국인참여기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각기 다른 유형의 국내기업, 외국인기업 및 외국인 참여기업에 대해 과세에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다. 조세제도의 통일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조세제도를 점차 GATT의 내국인대우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 5 절 외환관리법제

1993년 3월 22일 중국의 가입신청에 관한 GATT 실무작업단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의 이중환율메커니즘은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자, 중국의 GATT/WTO가입에 대한 핵심적인 장애요소의 하나였다. 1979년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의 환율통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었다. 경제관리를 위한 계획성 지령을 내리는 구조와 국가무역독점제도로 인하여 국가는 외환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였다. 경제개혁의 출범과 더불어 투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출입하는 외국기업과 사업가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19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자 중앙정부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함으로써 국가의 외환통제를 완화하였다. 대외무역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일한 방향으로 외환의 관리책임과 사업적 활용을 분리시키게 되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중국은행의 지도하에 국가외환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은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환전문은행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행이 외환의 사업적 측면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외환교환센터 또는 스왑센터의 느슨한 망을 통하여 환율을 관리하는 이중환율제도를 조심스럽게 구축하여왔다. 1989년 무렵에는 중국 전역에 약 80%의 스왑센터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기

71) 程法光, “中國涉外稅收政策和稅制發展趨勢”, 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

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기업가 및 외국관광객이 중국에서 환전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비용지불을 위한 인민폐를 구하고자 또는 이익송금을 위하여 중국내의 수입을 경화로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였다. 중국기업 외국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수입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들 센터로부터 경화를 얻었다. 1993년 스왑센터는 중국내의 모든 외환거래의 약 80%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환율제도하에서 중국은행은 두 가지 환율을 시행하고 있었다. 첫째, 인민폐에 대한 공식환율을 정하고 있었다. 관광객들에 대해 또한 국가계획하의 우선적인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였다. 둘째, 중국은행은 스왑센터 관리자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변동하는 그날 그날의 환율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환율은 공식환율에 비해 높았으며 이것은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관리를 분권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로서 처음에는 도입된 것이지만 GATT체제하의 국제관행과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 미국의 재무부가 1992년 11월 처음으로 환율 조작을 지적하였으며 1993년 동안 계속하여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GATT 실무작업단내에서 EC와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이중환율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중국의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금지적 비관세무역장벽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첫째, 이중환율제도는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숫자의 중국기업들에 대해 정보보조금 지급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GATT 헌장과 GATT의 평결을 보면 이중환율제도를 명백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자국의 수지균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이중환율제도를 비판하는 논거는 공식환율과 스왑센터의 변동환율간에 인위적으로 차이를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중앙정부가 일정한 산업이 과대평가된 환율로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부 선별된 국가소유기업들은 중앙은행이 일부 외화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낮은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로부터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둘째, 이중환율제도는 외환거래에 대한 은폐된 조세라고 지적되었다. 중앙은행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중국내 소득을 공식환율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식환율은 스왑센터 환율보다 훨씬 낮은 환율로 인위적으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도 중국 인민폐를 매입하기 위해 공식환율을 사용하여야 했다. 외국투자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중국내 통화로 획득하므로 필요한 수입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외화소득의 전무하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익송금을 위한 경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리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전 3년 동안의 중국의 가입신청에 관한 중국과 GATT 실무작업단간의 협상과정에서 외환통제문제가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중국 대표단은 5년내에 단일환율제를 채택하고 그 직후 경화로의 태환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그 약속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인한 시급성을 인식하여 중국은 1993년 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후 불과 몇 일만에 중국은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도를 시행할 것을 선언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단일환율제도는 종전의 스왑센터의 1달러당 8.7위안의 환율을 채택함으로써 종전의 공식환율을 사실상 폐지하였다.

그 동안에도 중국은 일정한 기업이 자신의 외환소득을 최고 50%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 외화유보제도를 폐지하고 은행간 외환시장을 설치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 경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몇 달 후 중국은 상하하의 국가외환거래센터를 개설하였는 바. 이 국가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의 중심으로서 다른 주요 도시의 무역센터와 연계되어 있다.

환율의 통일에 의하여 수입상품을 구입하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이라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다. 새롭게 도입한 은행간 외환거래

메커니즘의 수행에 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자신의 외환 거래 구조를 국제규범과 일치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WTO가 공식적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GATT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중국이 그와 같이 혁신적으로 또한 그렇게 빨리 1994년 초에 이중환율제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불과 8개월 전인 1993년 4월 중국이 외환 스왑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법규를 공포함으로써 이중환율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환율 단일화조치는 놀라운 반전이라 할 수 있다.⁷²⁾

제 6 절 외국인투자법제

1. 2000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

(1) 의 의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GATT 가입을 위하여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많은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여왔다.⁷³⁾ 또한 1995년에 WTO협정이 발효하게 된 후부터는 WTO규범에 부합되도록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의 개혁이 꾸준히 모색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외자의 유치, 과세, 이체, 투자 등 많은 분야에서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왔다. 여기에서는 그중 중요한 분야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72) 중국이 즉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WTO 가입직후 인민폐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특히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회복 전망을 흐리게 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또는 손쉬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뿐이다. Greg Mastel, "Enforcing a China Deal on the WTO", *Journal of Commerce* - September 24, 1999,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5.htm>.

73)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이 1970년대 또는 8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며 당시 국제적인 규칙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으며 최근에 제정된 회사법이나 계약법 등과의 충돌이 있고 WTO 규칙의 요건들에도 부합시킬 필요가 있어 그러한 관련법들을 개정하게 되었다. "China to Align Its Laws with WTO, Newspaper,"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anuary/C0001103>.

2000년 10월 하순에 개최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⁷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이 개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초안도 상정되었지만 가결되지 못하였다. 합작경영기업법 제15조 제2문이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1년 3월 15일에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 개정은 중국의 WTO 가입을 촉진하는 일대 법정비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개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대해서는 구법 제19조의 내용을 변경하고 동 제20조를 삭제함으로써 조문 번호의 변경이 있었다. 외자기업법에 대해서는 구법 제3조 제1항 및 동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구법 제11조 제1항 및 동 제18조 제3항은 삭제함으로써 이에 따른 項번호의 변경이 있었다. 이번의 개정에 의하여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⁷⁵⁾이 삭제되었다. 또한 외자기업법에서는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제품이 관련 주관기관의 인가를 얻어 중국시장에서 판매되어 그러한 기업의 외환수지균형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도록 인가한 기관이 해결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⁷⁶⁾이 삭제되었다.

74) 중국헌법 제67조 제3호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제정할 법률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법 제15조에 규정된 『상무위원회의 법률개정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는 香港基本法 기타의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5) 구법 제20조.

76) 구법 제18조 제3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이 제정된 1980년대에는 중국의 외환 준비가 불충분하여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에서는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한다』⁷⁷⁾는 점을 명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외환관리는 완화되어 경상항목에 대해서는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 부품구입, 임금·배당금의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외환은 은행에서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구좌부터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구 제20조 및 외자기업법 구 제18조 제3항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삭제되었다.⁷⁸⁾

(3) 물자의 국내우선구입 규정의 개정

이번 개정에 의하여 외자기업법의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 물자에 대하여 중국에서 구입하루도 있고 국내 시장에서 수립할 수도 있지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구법 제15조)라는 규정이 『외자기업이 인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및 연료 등 물자에 대하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현 제15조)로 변경되었다.⁷⁹⁾

개정전의 『동등한 조건하에서인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 외환수지균형 규정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의 외환유출을 방지하고 중국 국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에

77) 원칙적으로 외국측 당사자가 출자금으로서 납입한 외환 및 자신의 수출활동으로 얻어진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78) 系賀了, 森川伸吾, 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29, No.1(2001), p.63.

79) 외자기업법 현행 제15조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국무원이 제출한 외자기업법 개정초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자의 국내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도입한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는 기업의 물자구입활동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조항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⁸⁰⁾ 외자기업법 구 제 15조의 변경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4) 수출의무에 규정의 개정

이번의 개정에 의하여 외자기업법의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고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고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여야 한다』(구 제3조 제1항)라는 규정은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 수출하고 기술이 선진적인 외자기업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현 제3조 제1항)로 변경되었다. 구법에서 수출의무규정이 설치된 취지는 외환수지균형의 유지촉진, 수출산업의 진흥 등에 있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자의 국내물품 우선구입 규정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즉, 사회주의시장경제 및 WTO가입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⁸¹⁾

이번의 개정이 실무에 미칠 영향중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상기 수출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부분이다. 합작경영과 합자경영의 형식으로 중국에 투자를 한 경우에 외국측 당사자는 중국측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것을 기피하여 100%외자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지만 비록 실제적으로는 수출의무가 形骸化되어 있지만 법률상으로는⁸²⁾ 수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외자기업의 설립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의 개정에 의해 외자기업의 수출의무가 법률상으로 폐지됨으로서 그러한 우려가

80) 系賀了, 森川伸吾, 大西宏子, op.cit.

81) Ibid.

82)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3조에서는 수출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이번에 삭제된 외자기업법의 수출의무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외자기업법에 의해 그러한 실시세칙상의 규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면 향후 설립되는 외자기업에서는 수출의무에 관한 실시세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된다면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개정전에는 여전히 외자기업의 수출의무 제도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bid.,p.64.

불식되었고 따라서 이미 무의미해진 수출의무조항을 현시점에서 반드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역시 WTO 가입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의 수출의무조항 폐지는 그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⁸³⁾

(5) 생산경영계획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번 개정에 의해 외자기업법에서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그 주관 부문에 제출하여 기록되어야 한다』(구 제11조 제1항)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에서도 『합자경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기록되어야 하고 경제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집행된다』(합자경영기업법 제9조 제1항)라는 조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있었다.

2. 2001년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

(1) 배경

동 실시세칙은 최초로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이 비준하여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하였으며 그 동안 한 차례의 수정도 하지 않아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1년 4월 12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개정되어 4월 23일 국무원령 제301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 實施細則)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내수 및 수출비율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종래 규정(제10조, 제15조)을 삭제하였으며, 외자기업의 경영기간중에는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제22조)는 조항은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본금 감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또한, 企業의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규정(제56조)은 삭제됐고 외자기업의 경제계약에는 계약법(合同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새로 마련된 시행세칙 개정안은 지난달 개최된 제 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83) Ibid.

회의에서 통과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이 변화하였다고 보다는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이후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 일부 조항들이 바로 잡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외국인 단독투자는 97년 이후 단독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는 97년부터 신규 프로젝트 승인건수에서 합자투자의 규모를 앞지르는데 이어 ‘98년과 2000년엔 각각 계약금액과 실제 투자금액면에서도 합자투자 규모’를 추월했다. 특히, 2000년엔 외국인 단독투자 프로젝트 승인 건수가 전년대비 46% 증가(12,200건)한데 반해 합자프로젝트 증가율은 25%에 그쳤다.⁸⁴⁾

동년 단독 투자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은 62.5%(미화 3백 40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합자프로젝트 계약금액은 15% 증가에 불과했다. 또한, 합자기업의 투자이행 금액이 7.3% 감소한데 반해 독자기업의 투자이행 금액은 2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는 중국이 민간기업과 외자기업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위기이후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자 중국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조치들이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⁸⁵⁾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정 내용

1) 제 3 조

중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고 경제효율을

84) 한편,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36만 4천 3백 45개(누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액은 계약기준으로 미화 6천 7백 67억 2천만 달러, 이행기준으로는 미화 3천 4백 86억 2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85) 중국사회과학원 다국적기업연구실의 루통(魯桐) 주임은 “중국과 외국기업간의 기업 관리방식과 문화적 충돌로 인해 합자경영은 결코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외국인 독자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현저히 높여야 하며, 적어도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선진기술과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2. 연간 수출액이 해당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써 외환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

이번 개정을 통하여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고 경제효율을 현저히 높여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개선 및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며 수출형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로 수정하였다.

2) 제4조 및 제5조

중전의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제 4 조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한다.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는 업종

제 5 조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한다.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투자신탁
5. 리스

전항에서 규정한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의 개정을 통하여 상기의 제4조와 제5조를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다”라고 통합하였다.

3) 제10조

종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외자기업 소재지 현(縣)급 또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외자기업 설립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중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요구 사항 등.

현(縣)급 또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상기의 규정중 ‘제품의 중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4) 제15조

종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지,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직책
2.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명칭, 주소
3. 경영범위, 생산품목과 생산규모
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금, 자금원, 출자방식과 기한
5.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조직형태와 기구, 법정대리인
6. 주요 생산설비와 新舊 정도, 생산기술수준과 기술내역
7. 제품의 판매방향, 지역, 유통경로, 방식 및 내수, 수출 비율
8. 외환수지균형을 위한 계획
9. 기업의 기구 및 인사조직, 종업원 채용, 교육, 임금, 복지, 보험, 노동보호 등의 사항에 관한 계획
10. 환경오염 정도와 그 해결책

- 11. 부지선택과 부지면적
- 12. 기본건설과 생산, 경영에 소요되는 기금, 에너지, 원자재 및 그 해결방법
- 13.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 14. 설립하려는 외자기업의 경영기간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기 제7호의 ‘및 내수. 수출 비율’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다.

5) 제22조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라는 종전 규정을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다만,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6) 제27조

종전의 제1항은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

…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이어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7) 제28조

종전의 제1항은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산업재산권, 특허기술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산업재산권, 특허기술은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에 속해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8) 제43조

중전의 “외자기업은 생산 및 경영계획을 자주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은 반드시 소재지 관할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중전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9) 제45조

중전의 “외자기업이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허가 받은 판매비율에 따라야 한다.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을 초과해 국내시장에 판매하려면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개정하였다.

10) 제46조

제46조 제2항의 “외자기업은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직접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상업 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11) 제48조

중전의 제2항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중국의 관련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및 제3항 “앞에서 언급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12) 제52조

제52조의 내용중에서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라는 부분을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로 개정하였다.

13) 제53조

종전의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를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로 개정하였다.

14) 제56조

종전의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비준기관은 이를 관련 부서와 상의한 후 회신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 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지 않는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목이 아닌 이유로 중국내 판매를 승인 받은 경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의하여 상기의 제56조의 내용을 폐지하였다.

15) 제84조

종전의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을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企業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로 개정하였다.

16) 제87조

“이 세칙은 대외경제무역부의 해석에 따른다”를 삭제하였다.

3. 2001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

(1) 배경

동 법은 1979년 7월 1일 개최된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후 ‘90년 4월 4일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된 1979년이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의 시발점이었다면 1990년의 수정안은 관련 규정을 국제관례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근 외상투자기업관련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부문, 학자, 변호사 및 외상투자기업간에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⁸⁶⁾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광범위한 심의를 거쳐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정비되고 있는 중국의사회주의시장경제 및 WTO가입이라는 목적을 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⁸⁷⁾

2000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에 대한 심의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은 여러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초안)보다 최종 채택안은 내용면에서 충실하였으나 개정된 부분의 법률용어의 조정을 포함한 8개에 불과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내용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정될 예정이다. 수정안은 전체적으로 수정범위가 1백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폭에 그쳤다. 총 15개 조문 가운데 제9조 제1항이 폐지되고 제2항은 일부 내

86)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p.582.

87) Ibid.

용이 수정되었다.

2000년 11월에 개최된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에서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그러한 견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각 대표들에 의하여 제출된 여러 제안에 반영되었다. 또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과 더불어 향후에는 1983년에 시행된 후 18년이 경과하여 이번 중외합작경영기업법개정에 따른 수정부분이외에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을 계기로 현행 외상투자기업법의 문제점 및 금후의 개정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것은 향후 중국의 섭외경제법의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된 내용과 그 평가 그리고 향후 외국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투자법의 개정에 관한 주요 문제점을 해설하기로 한다.

(2) 합자경영기업법 개정의 개요

1) 주요 개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개정은 3개 부분을 개정하는 초안이 국무원으로부터 제출되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심의결과 8군데의 개정이 있었다.

① 생산·경영계획의 제출의무의 폐지

제9조 제1항 『합자경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정부의 주관부문에 제출하고 경제계약의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合營企業生產經營計劃,應報主管部門備案,并通過經濟合同方式執行)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⁸⁸⁾ 기업은 법률에 따라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가지며 정

88) 현행 중국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시장경제라 함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대한 기초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라고 한다. 國家教委社科司編, 『中國社會主義建設』(遼寧人民出版社, 1996), p.158; 宋濤主編 『政治經濟學教程』(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p.294. 1993년 헌법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시장경제가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대체한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공유제는 유지되고 있다(중국헌법 제6조, 제15조). 이와 같은 사회주의공유제라 함은 생산수단(토지, 천연자원, 생산설비 등)

부는 주로 거시적 관리를 하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기업에서는 모두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에 생산경영의 계획을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되었다.

② 원자재등의 조달에 관한 개정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합자경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의 구입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합자경영기업은 스스로 외환을 조달하여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所需原材料,燃料,配套件等,應盡先在中國購買,也可由合營企業自籌外匯,直接在國際市場上購買)라는 구절을 「합자경영기업은 인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연료 등의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 또는 국제시장에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在批准的經營範圍內所需的原材料,燃料等物資,可以在國內市場購買,也可以在國際市場購買)라고 개정하였다.⁸⁹⁾

이번의 개정전에는 외국투자기업의 필요한 원자재, 연료, 부품, 설비의 현지조달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었으며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실제에 있어서도 현지부품 조달조달계획과 국산화율을 투자신청시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합자경영계약에 규정하도록 요구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에 따라서는 그 지방행정법규 및 산업정책에 따라 국산화율 및 현지부품조달 계획을 외국투자에 대한 승

을 공유(국가 또는 집단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국 경제체도의 기초가 된다(중국 헌법 제6조). 그러나 중국에서는 생산수단의私有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중국헌법 제11조, 제18조 등)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완화된 사회주의 공유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행하는 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영자주권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거래를 하도록 하여 수급관계가 반영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89)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초안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개정된 외자기업법 제15조의의 예에 따라 최종개정안에 삽입되었다.

인 및 면제등의 우대조치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었다. 예컨대, 어느 지방에서는 자동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제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도록 요구하였다.⁹⁰⁾

최근에는 외상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물자구입의 자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한 이러나 국산화율과 부품 등의 현지조달요구는 GATT 제3조, WTO 협정의 TRIMs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번 수정으로 그러한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⁹¹⁾

③ 이 법의 개정권

제15조 후단의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를 삭제하였다. 1982년 헌법 및 2000년 제정된 立法法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수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보충·수정만이 아니라 향후 대외개방의 확대발전에 의해 합자경영기업법의 전면적인 정비가 예상되고 있어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권은 전인대에 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⁹²⁾

2) 기타의 개정

전인대 회의에 제출된 개정안(초안)은 상기의 3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었지만 대표들이 많은 의견을 제기하여 5군데의 수정의견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① 제2조 제2항의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계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⁹³⁾

② 제6조 제4항의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기초하여 각 합자경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90) 劉新宇, op.cit., p.583.

91) Ibid.

92) Ibid.

93) 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및 외자기업법 제4조를 참조한 것임. Ibid., p.586.

규정을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등의 사항은 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합작경영기업법 제13조 및 외자기업법 제12도 참조한 것임).

③ 추가내용으로는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및 『합자경영기업은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7조로 삽입하였다. 94)

④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4항의 『합자경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를⁹⁵⁾ 『합자경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국내(境内)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⁹⁶⁾

⑤ 제14조를⁹⁷⁾ 제15조로 하고 1개 항목을 제2항으로 하여 『각 합자경영당사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지 아니하거나 사후에도 서면에 의해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⁹⁸⁾

상기의 ① 내지 ⑤의 기타 개정부분은 대부분 법률용어만의 개정에 의해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각각의 내용과 다른 규정들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⁹⁾ 이번에 통과된 제2차 수정안은 수정범위가 극히 소폭에 그치고 있고 그 내용이 법조항 수정에 앞서 실제로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을 앞둔 중대 시점에서 이처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대해 표시도 나지 않을 정도로 소폭 수정만을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전략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4) 합작경영기업 제14조 및 외자기업법 제13조를 참조한 것임. Ibid.

95) 초안에서 ‘합영기업의 보험은 마땅히 중국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개정안은 보험법 규정과의 상호 연결을 위해 ‘중국경내의 보험회사’로 수정하였다. Ibid.

96) 합자경영기업법 제18조 및 외자기업법 제16조를 참조한 것임. Ibid.

97) 구조항은 합영 각방이 분쟁발생시 중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98) 합작경영기업법 제26조를 참조한 것임. Ibid.

99) Ibid. p.583.

외국기업의 중국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대개 90년대 이후, 특히 '92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 덩샤오핑이 심천 등 광둥성 남부연해지방을 순회하며 개혁개방 확대를 강조한 조치)때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약 5년간에 걸쳐 세계 5백大 다국적기업중 약 3백여개가 중국에 진출했지만 단독투자 보다는 합자투자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단독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홍콩내 기업전략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중국의 WTO 가입이후엔 중외합영·합작기업중 상당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규 단독투자기업이 늘어나는 한편, 기존 합영·합작기업들도 지분양도 등의 방식을 통해 점차 외국인 독자기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전망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은 향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나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손질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에너지, 통신, 유통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합자경영만이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외국인 단독투자 확대추세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전략수립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

제 5 장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법제개혁 전망

제 1 절 WTO가입과 중국경제

1. 의 의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하는 內資기업들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출상품의 구성에 있어 기계 및 전자제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구미시장에 대한 접근환경이 개선되는 섬유와 의류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면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기계설비와 정보기기 이외에 지금까지 고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보호해온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관세할당제도가 도입되는 농산물 수입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무역상대국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이 중국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의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미국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의 대미수출은 현재 130달러에서 2005년에는 24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global economy에의 편입을 의미한다. 즉 국제무역규범과 준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란 ‘게임의 룰’을 배워야 한다. 이로써 중국경제는 세계경제로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 가속화 및 국내시장 질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낮추게 됨으로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 될 것이다.¹⁰⁰⁾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의 커다란 변화와 시장 재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동안 연해지역,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

100)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비스, 하이테크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국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왜곡되었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GDP 성장율이 0.5% 내지 1% 상승하는 효과가 전망된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특히, 현재 관세, 비관세 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농업부문(면화, 밀, 콩, 옥수수 등)과 일부 기계공업(자동차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가입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¹⁰¹⁾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2005년에 중국무역이 현행의 약 2 배에 달하는 연간 6,000억불, 외국인 투자도 연간 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무원 연구중심 등 중국측 연구기관은 국내 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고려, 연 10% 증가 등의 보수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과의 WTO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대륙, 홍콩, 대만을 묶는 중화경제권내에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수지균형은 WTO 가입의 결과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가입직후 수년동안에는 수입이 수출보다 빨리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 초기에 기술과 장비를 획득한 후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WTO에 가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될 것이지만 과도기의 실업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시련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WTO 가입은 또한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분야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은행, 국유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미변제 대출자금은 은행장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은행들은 예탁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구성재편성(recapitalization)이 요구될 것이다.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101) 方浩, 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律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년 제2기 (총 제125기), pp.28-29.

trusts)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거래소(exchanges)는 투자가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규칙들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 될 것이며 중국이 외국의 보험업자와 은행 등과 5년내에 경쟁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긍정적 측면

(1) GDP 성장

중국의 WTO 가입의 이점은 대단히 크고 광범위하여 중국의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선, WTO 가입은 중국의 개혁과정에 큰 추진력을 부여하게 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게 됨으로써 중국 경제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 효과는 GDP 성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과 외국인투자 개혁은 사법개혁과 법제개혁, 대규모 민영화 및 노동시장의 개혁과 중앙·지방정부관계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1세대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¹⁰²⁾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WTO 회원국들이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와 기술로 인해 번영과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다. USTI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1999년 4월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조건에 따라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의 GDP는 4.1% 성장할 것이며 복지(소비)는 2.1%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중국의 소득수준은 국유기업들이 폐쇄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난관의 일부를 (경제성장과 기술획득의 효과에 의하여) 상쇄하고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WTO 가입에 의한 GDP 성장으로 인해 매년 2백 5십만 내지 5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2) 교역량의 확대

중국은 WTO 가입으로 회원국들로부터 MFN 대우를 무차별적으로 향유하게 될 것이며 선진국들로부터 GSP 혜택을 얻음으로써 수출이 증가하

102)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참조.

게 될 것이다. 또한 대외무역권의 점진적 개방 중국의 무역과 교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출은 12.2% 수입은 1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무역량은 1998년의 3천 2백 4십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6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6년 현재 그 무역량은 GDP의 약 36%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 노동력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미숙련 노동집중제조업분야의 일거리, 특히 기술분야에서 중간수준의 부가가치 창출 일거리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빼앗아오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3)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국가로부터 보조금과 보호를 향유하여 왔던 국유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되거나 아니면 파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부분의 국유기업에 부여하던 보조금과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고 있던 국유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금융제도를 현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실업과 사회적 건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만 반면에 현재 국유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산업에서 사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고 외국과의 경쟁 및 외국인기업과 합자·합작기업이 가져다 줄 신기술의 이용을 통하여 성장과 발전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¹⁰³⁾

(4)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효율성과 성장의 증가라는 효과이외에도 중국은 자신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시장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외국인직접투자는 1998년 45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며 1,8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섬유, 의복 및 신발(모든 노동집약적 제품)분야에서, 중국은 엄청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섬유와 의복의 전세계 수출량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WTO 회원

103)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참조.

국 자격을 얻게 되어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섬유시장은 중국에 즉각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5) 선진기술 접근기회의 확대

중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선진기술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를 더욱 완화시키게 될 것이므로 중국의 선진기술접근가능성은 그 만큼 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정부가 중국이 (미국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미국에 주소를 둔 회사들의 중국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국제적인 존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협상테이블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장래의 무역협상과 정책결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또한 자신의 정책을 방어하는데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자국의 정책으로 인해 무역 기타 경제적 제재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제재조치를 당하는 때에도 용이하게 구제수단에 호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부정적인 측면

(1) 실업의 증가

중국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안정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3천만의 도시 노동자들이 실업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실업노동자들의 일부는 사영기업 또는 외국인기업이나 합영·합작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해고노동자의 약 25%는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큰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지나친 고용불안이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대확산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¹⁰⁴⁾

104)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참조.

(2) 농산물의 수입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

노동문제는 도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양보안은 관세와 관세쿼터(Tariff Rate Quotas)를 상당한 정도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쌀, 밀, 콩 및 옥수수를 포함하는 많은 농산물에 대한 사영기업의 접근과 대외무역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위생상의 이유로 종전에는 금지하였던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시장접근양허(access concessions)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WTO 가입과 더불어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중국소비자들의 식량지출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인하되면 농부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줄이게 되는 등 농촌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실업 또는 불안전고용 상태에 있는 농촌노동자들이 도시지역을 직업을 찾아 이주하게 하게 되고 이로써 도시의 인구밀집 현상과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다.¹⁰⁵⁾

4. 산업 부문별 영향

(1) 농업부문

중국은 WTO 가입이 중국의 농업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결국 농업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시장경제와 부합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거시적 통제시스템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¹⁰⁶⁾ 한편 WTO회원국으로서 중국은 자국의 무역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분쟁해결 관련 WTO 조항과 그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국내농업생산과 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루과이 협상에서 일본, 한국, EU 및 미국 등 일부국가들이 자국 시장의 개방확대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105) James H. Nolt, "China in the WTO:the Debate," Foreign Policy in Focus, Vol.4, No.38(1999), <http://www.foreignpolicy-infocus.org/briefs/vol.4/v4n38china.html>.

106) 人民日報(해외판) 2000년 3월 30일자.

중국의 곡물 수출은 확대될 전망이다.¹⁰⁷⁾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중미 농업 협력 협의> 및 WTO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농업은 2000년 이전에 평균 관세 수준을 반드시 17%까지 내려야 하며 또한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평균 관세를 14.50%까지 인하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밀, 옥류 감귤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국의 농업에 관련된 상장회사,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곡류 채소 과일을 재배하여 가공하는 생산라인 경영을 주로 하는 상장기업, 수산물과 우유상품의 양식과 가공을 생산에 주로 기업 등이 비교적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요즘 들어 국제 농업 상품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농업에 관련된 많은 상장회사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WTO 가입 후의 상황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일이나 과도기는 존재하므로 단기간동안에 받는 영향은 미리 감수해야 하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에 관련된 상장회사가 국제 상품시장에서 안정된 자리 메김을 하여 WTO 가입을 역이용하면 오히려 중국 농업, 예컨대 차, 마, 깨 등 중국이 전통적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에게 새로운 시장 경쟁 기회를 가지고 오는 데에 유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의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국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2010년경에는 중국이 곡물 수입국이 될 가능성(밀, 면화, 옥수수 등)도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외국농산품의 중국시장 반입으로 중국 농산품의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농민의 생산의욕 감소와 이른바 “식량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WTO 가입시 농촌노동력 등 약 1,000만명이 여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현대화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현재 농촌인구는 8.6억명으로 전체인구의 80% 차지)된다.

107) 중국정부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1천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할 것이며 9백만 명의 농부가 농업을 포기해야할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농산물 보조금 문제를 놓고 끝까지 줄다리기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참조.

(2) 공업 부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방직,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나, 자동차.철강.화학.의약품 등 부문은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측은 공업제품(특히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하,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현행 80~100% 관세의 보호하에서는 가격이 높아 소비를 진작할 수 없고, 공급과잉이 되고 있으므로, 개방 가격인하 소비증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⁰⁸⁾

(3) 서비스 부문

서비스 시장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 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은행·보험·소매·통신·관광·법률·회계 등 분야의 국내업체 타격 예상 및 외국의 지적재산권보호 강화에 따라 무역외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의 32.9%(98년)에 불과하며, 통신·교통·금융·보험의 미발달과 경쟁체제의 미비로 인해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4) 첨단과학기술 부문

중국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장기업이 받을 영향은 주로 아래에 서술한 두 가지 즉 통신사업과 컴퓨터사업 분야이다. 통신사업은 WTO가입 후 반드시 6년 이내에 무선호출기, 이동전화의 수출입 제한과 기지국을 설치하는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4년 이내에 외자로 투자할 수 있는 모든 통신사업 영역 중에 지주회사는 49%까지 제한하여 소유할

108) 曹建明, 賀小龍, “加入WTO餘我國對外經貿立法,” 『中國法學』, 2000년 1기(총 제 93기), p.9.

수 있으며 일부영역은 5.1%까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통신시설에 관한 전신설비의 관세 제한을 엄격히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통신사업 분야의 시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면 예를 들어 통신설비를 생산하는 중쌍통신, 도왕통신과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 즉 주인귀안 귀마이 통신 등 많은 상장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 WTO 가입설이 홍콩과 중국대륙에 전해지자 통신사업 분야의 주식이 대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일부주식은 역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약 WTO에 가입하더라도 통신사업 분야의 보호장벽은 단시일 내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¹⁰⁹⁾ 증권 시장은 WTO 가입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컴퓨터 및 외국설비의 관세 제한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생산을 주로 하는 상장회사가 받을 영향이 비교적 클 것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WTO에 가입된 후 받을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 2 절 법령의 정비방향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조세징수, 외환거래관리 및 대외무역법의 제정 등 일련의 개혁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GATT/WTO로 대표되는 국제무역제도에 자국의 대외무역제도를 접근시켜왔다. 그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통제는 미시적 통제(micro-control)로부터 거시적 관리(macro-management)로 轉移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외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점차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다

109) 중국이 미국과 WTO가입을 위한 쌍무적 협상을 타결지은 직후인 1999년 11월 10일 중국의 정보산업부의 관리는 중국의 WTO가입후에도 중국의 정보산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년 9월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및 인터넷컨텐츠 제공자(internet contents providers)를 포함하여 중국의 인터넷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China's Net Czar Downplays WTO Effect On High Tech Industry,"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infotech/NewsArchive/Secure/1999/november/C>.

양한 비관세장벽도 그 만큼 줄어들어 왔던 것이다. 분명히 지속적인 개혁하에 있는 현재의 대외무역제도와 WTO 체약국들의 기대치와는 여전히 약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여전히 대단히 많은 행정통제의 존재 및 상품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licensing) 및 쿼터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대외무역제도의 GATT/WTO 제협정과의 불일치를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격차가 남아 있는 것은 중국의 진지한 노력의 결여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경제와 법제도의 과도기적 성격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하여왔다. 1994년 3월 중국은 GATT에 관세인하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 따르면 공업제품에 대해 40% 관세율을 상한으로 유지하며 1998년에는 35%까지 그리고 중국의 GATT/WTO 가입후 5년내에 30%까지 관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비관세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중국은 수입 쿼터제와 허가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을 1,247 tariff categories로부터 2000년까지 240개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1996년 4월 1일 평균관세율을 23%로 인하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앞서의 변경약속이 실현되면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부분의 시장경제국가들과 거의 유사하게 된다. 현단계에서도 1994년 대외무역법상의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중앙계획경제국가였던 루마니아 헝가리 폴랜드가 1960년대와 1970년대 GATT에 가입할 당시의 경우보다 훨씬 더 자유화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서방선진국들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여 중국의 GATT/WTO가입을 경제적인 이유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근거하여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다.

현재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정비준비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 관계법령(약1,400여건) 정비, WTO기구 및 관계 규정 학습반 운영, 출판물 발행 등을 통해 가입준비를 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을 통하여 중국이 약속한 사항을 보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

이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다자간 협상결과가 WTO 실무작업단에서 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은 어디까지나 정부간 약속이므로 중국은 그에 부응한 구체적인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합의한 사항은 중국의 국내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과 행정법규(국무원에서 제정)의 형태로 정비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법제의 정비와 운용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가입이 언제 실현되느냐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변화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입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경험은 확립된 국제관계의 규범에 따른 국내법정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시대에 개개의 국가의 법제에 대해 국제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법의 세계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국내법의 형성이 당해 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다양한 힘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되고 있다.¹¹⁰⁾

또한 세계적인 제세력(global forces)이 법적·경제적 제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적·경제적 통합 또는 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GATT/WTO 제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중국의 대외무역제도가 지금까지의 무역자유화 조치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를 띄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중국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싫지만 수동적으로 국제규범을 받아들인 경우로서, 중국이 1993년 말 이중환율제도를 폐지한 것이 이에 속한다 할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경우이며 중국에서 대외무역제도의 개혁조치들 대부분은 중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110) 이와 관련된 한 분야로서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 강화의 필요성, 임시(ad hoc) 중재 도입, 중재기구의 전문성 강화, 중재인의 책임제도 도입들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만 하다. 이에 관해서는 肖永平, 胡英慶, “加入WTO與我國仲裁法律制度改革,” 『中國法律』, 2001.2, (총제100기), pp.13-19.참조.

둘째, GATT/WTO가 국내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대외무역 법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국의 대외경제법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경제개혁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외국인투자와 경제교류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의 시행은 새로운 경제법제의 확립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 나타난 모든 법제도중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의 통일은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해서만 도입되었으며 1993년 말에는 많은 중국공산당내의 개혁적인 지도자들이 중국의 경제적·법적 구조조정 전반에 국제규범의 광범위한 영향을 인식하여왔다.

그들은 체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GATT/WTO 가입신청에 따른 과정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왔다. Donald C. Clarke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혁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코 무역(trade)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국내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 있는 제도를 해체하기 위한 僞裝馬(stalking horse)로서 GATT를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기업신문에서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일단 GATT에 가입하면, 시장메커니즘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혁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계획경제의 뿌리깊은 결함들(deep-level defects)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 GATT가 (중국 경제의) 현행 구조에 미치게 영향은 단순히 활력(dynamism)을 얻도록 기업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즉, 계획·승인(행정)기관의 부존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폐쇄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업을 구하고 채용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형성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이 수반될 것이다.

셋째, 경제법제도정비의 초기단계에서 GATT/WTO 관행을 채택하게 된다면 중국은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범에 기초한 법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관행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적극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이 1970년대말 최초로 외

부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30년 동안 행정통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관한 이렇다 할 법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경제체제에 관한 법제도의 부존재가 중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법구조 또는 관습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지 아니하고 쉽게 가장 최근의 국제관례를 채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의 현행 경제법 구조는 비록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그 대부분이 서방세계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원칙과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은 GATT의 원칙과 관행을 거의 답습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외경제관련 경제계약에 관한 법령의 내용들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들은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 1993년 12월 공포된 회사법은 영미법제와 대륙법제를 혼합한 것이다.

넷째,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 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약화시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국내 법규, 정책, 관행, 절차상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그 동안 연해지역,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비스, 하이테크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직접투자, 수출, 기술 라이선싱, 경영관리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한 시장진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 서비스 시장에서의 외국업체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섯째, WTO가입은 중국에 있어서 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가격, 금융, 외환, 무역, 기업경영,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걸쳐 투명성이 부족하고 개방도시에 있어서도 국제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점차 關係와 재량권보다는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¹¹¹⁾

111)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중국이 공약을 한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MOFTEC official promises transparent legal system after WTO entr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1901.asp>. 참조.

여섯째, 중국은 무엇보다도 WTO 가입을 전후하여 가격개혁을 가속화하여, 시장메커니즘의 영역을 넓히려 할 것이다. 중국의 가격제도는 ①정부결정가격, ②정부지도가격, ③시장가격이 공존하는 다중가격제를 취하고 있는데 WTO 가입으로 향후 시장가격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격개혁을 통해 농·공산품, 완성품과 원부자재, 내수품과 수출품간에 존재하는 가격차를 좁히고, 공산품내의 불합리한 상대가격구조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생산, 무역관련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에 대해 기업적자보조금, 가격보조금 등을 주거나 금융지원, 세제감면 등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market access)”등의 WTO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국민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①외자유대 정책 개선 ②외자 관련 법규 정비 ③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정비 등,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①정부·행정 개혁(금융, 외환 등 제도)의 추진 ②무역·투자 관련 정보의 공개 ③법체제 및 운영 절차의 정비, 개선 ④부정부패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철폐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도매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소매업종에 대해서도 “1성 1기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WTO 가입후 3년내에 상당 부분을 완화해야 하며, 5년후까지는 외자기업의 진입을 완전자유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국투자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선진국 유통기업의 대중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고, 이들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증가할 것인 바, 중국 유통시장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함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제 3 절 공산당 경제지도원리 및 헌법

1. 경제지도원리의 변화

최근에는 중국이 WTO가입에 대비, 경제 지도이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새 이론은 덩샤오핑(등소평)이론으로 불리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한 단계 발전,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다. 이는 WTO가입 후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북경)의 정계 관계자들은 2001년 7월 4일 “중국이 내년 10월 열릴 제16차 전당대회에서 민간기업인 등 자산계급의 당 가입 허용을 당헌에 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쩌민 주석이 제기한 “3개 대표”이론도 당헌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이론이 당헌에 서술될 경우 중국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의 선봉대”라는 기존 이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정당으로 바뀌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에 따라 이전보다 유연한 대외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의 자산가계급 인정은 장쩌민 주석의 “3개 대표”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 발전”, “고급 문화 발전”, “광범위한 대중 이익” 등 3개를 대표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특히 이 중에서 광범위한 대중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은 곧 중국이 자산가계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장 주석은 최근 가진 창당 80년 연설에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 정치상의 낙후성과 선진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들을 중국 경제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자산가 계층은 민간기업인 투자가 자영업자 자유직업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연한 경제노선의 채택과 함께 경제정책 역시 점차 서구식 체제로 바뀌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자동차가격에 대한 정부지도가격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항공 유화 통신 등 정부 독점 산업을 대거 민간에 이양 또는 개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부정경쟁방지법, 반덤핑조례 등을 속속 제정, 경제관련 법률체계를 서구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다. 베이징의

한 정치전문가들은 “장쩌민 주석의 경제이념은 사회주의체제내 시장경제의 존재를 인정한 덩샤오핑 이론에서 한 발 더 나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사회주의체제속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WTO가입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많은 분야에서 서구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국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국가소유제와 사유제의 차이를 없애고 재산의 불가침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가입에 대비하여, 경제 지도이론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새 이론은 덩샤오핑(등소평)이론으로 불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한 단계 발전,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다. 이는 WTO 가입 후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¹¹²⁾

2. 헌 법

1982년 헌법이 발효된 후 3차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중에는 여전히 시장경제의 원칙 및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중국경제 발전에 불리한 것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헌법에서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전세계가 일체화되는 국제사회에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도달한 다변적 무역협상의 성과의 하나인 자연인이동 협상에 관한 결정(Decision on Negotiation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 및 전문가서비스에 관한 결정(Decision on Professional Services)에 근거하여 WTO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문가의 초국가적 서비스, 자연인의 초국가적 자유이동은 WTO가 지향하는 방향이므로 중국의 헌법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¹¹³⁾

그밖에도 현행 중국헌법중의 국민의 경제적 자유권과 재산권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체, 사영 등 비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나 중국의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종류의 경제구성부분들이 공동으로 발

112) 韓國經濟. 2001년 7월 5일자.

113) 王廣耀, “論我國憲法結構的完善”, 『法商研究』, 2000년 제5기, p.78.

전하는 방침을 견지하는 것”을¹¹⁴⁾ 관철하고 집행하는데 불리하다는 지적도¹¹⁵⁾ 향후 중국의 헌법의 개정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밖에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WTO가 기초한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만약 중국이 부담하는 WTO협정의 효력과 중국의 법률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WTO 협정이 우선적용되는가 아니면 중국법률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중국 헌법은 중국이 체결 또는 비준한 조약에 대해 규정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국무원이 체결권한을 가지는 협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과 폐지를 결정하는 국제조약과 중요한 협정,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에 근거하여 비준, 폐지하는 조약과 중요한 협정이다.¹¹⁶⁾

그런데 현행 중국헌법은 중요한 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하고 있지 아니한 바, WTO협정 또는 중국의 WTO가입의정서가 그러한 협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WTO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WTO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국내법 규정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중국의 WTO가입의정서는 중국법상의 중요한 협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WTO 협정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WTO 협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과 상충되는 때에는 어떠한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등도 역시 의문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중국의 현행 헌법규정이 명확히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¹¹⁷⁾

한편 중국의 민법통칙 제142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해상법 제268조 등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과 중국법률이 충돌하는 경우,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이외에는 국제조약이 중국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의 우선적용원칙은 최고인민법원의

114) 『關於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참조.

115) 張桂紅, op.cit., p.183.

116)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제89조.

117) 張乃根, “論WTO與我國的法律保藏機制”, 復旦學報. 1999년 제5기, p.34.

사법적 해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¹¹⁸⁾ 그런데 상기의 법률은 주로 민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이지만 WTO협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한 법체계이며 민상사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민상사 범위에 속하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상기의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해상법의 관련 규정을 직접 원용하여 WTO 협정이 중국의 국내법률보다 우선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WTO 협정이 정치적 조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각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효력은 당연히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등보다 상위에 있거나 동등하다고 보아¹¹⁹⁾ 민법통칙,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원용하여 WTO협정이 중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²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현재, WTO 규칙의 국내시행과 관련하여 각국은 두가지 방식중의 하나는 채택하고 있으며, 중국의 현행 헌법은 체약국이 비준후 WTO 규정을 직접 원용함으로써 그에 관한 국내법화 과정을 거치는 아니하는 제1의 방식과 둘째 WTO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변형(transformation)시키는 제2의 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¹²¹⁾

한편, WTO 협정의 중국내 실시 문제는 단순히 사법과 집행상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입법상의 문제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학자들의 논의가 주로 사법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향이라는 지적도 있다.¹²²⁾ 실제로 이러한 지적은 대단히 타당하며 중국의 문헌들이 주로 그 국내적용문제만을 다룰 뿐 중국의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하는 듯이 인상을 주고 있다.

118) 最高人民法院 2000년4월17일 《關於審理和執行涉外民事事件應當注意的幾個問題》.

119) 曹建民, “WTO法律體制餘中國相關法律,法規和定策措施比較”, 中國工商管理研究, 2000년 제9기, p.35.

120) 張桂紅, op.cit., p.184.

121) Ibid.

122) Ibid.

제 4 절 시장경제법률제도의 완비

중국은 현재 초보적인 시장경제법률제도를 확립하고 있을 뿐이다. WTO 가입은 비록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자유경쟁의 시장경제 정착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을 규율·유도·추진·보장할 수 있는 법제 정비는 WTO 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제도는 정비중에 있으며 시장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법령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의 정비의 필요성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중국의 현행 관련분야의 법령은 그 일부 내용이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중국의 기업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두 가지 입법형식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체제하의 소유제 형식에 의거한 입법,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민소유제공업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城鎮집체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이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조직형식을 갖고 있는 입법, 예컨대 《회사법》, 《합자기업법》, 《독자기업법》 등이 혼재된 중국의 입법상황은 기업의 법률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앞서 WTO의 협정과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의 이행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과도기에서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우선 발전산업과 상품목록에 근거하여 정부투자, 국유은행의 여신, 관세감면, 무역정책(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이루어지는 정책과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입정책 실시 역시 중국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WTO 가입 후에는 관세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시장 보호는 일부 유치 산업과 시장개방에서 제외되는 소수상품에 국한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운용범위 또한 축소될 것이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 역시 감소될 것이며,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WTO 가입 후 시장개방 적응기간 내에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배치, 자본금 확충, 채권의 주식전환, 기술혁신, 전통산업체제의 개조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유치산업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WTO 가입 후 과도기간 내에 소수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할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8억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어 비교적 장기간동안 중국정부는 “농산물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농산품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특별히 농업과학연구, 기술확장, 품종개량, 구조조정과 환경보호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의 국가안전과 중국관습에 어긋나는 문화상품의 진입 환경보호등을 목적으로 제한에 들어갈 것이다.

2.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의 필요성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 내지 충돌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994년 7월부터 5년 이상 시행되어온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이상3가지 법률은 이하 “三資기업법”이라 한다)간에도 부조화현상이 존재한다. 회사법 제18조는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³⁾

123) 1999년 9월 23일 공포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외경제협력부 국가공상 행정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합병과분할에관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 제 1조는 이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및 외상투자기업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외상투자기업의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三資기업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三資기업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회사법과 三資기업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반면에 三資기업법은 외상이 투자한 유한회사에는 주주총회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률의 부조화, 입법상의 雙軌制(2원화된 입법)는 中資유한회사와 外資유한회사에 대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의 회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회사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사법의 개정은 먼저 중국자본회사와 외국자본회사 모두에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¹²⁴⁾

중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시정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관련입법은 몇 가지 문제 특히 다음 3가지 점에서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다. 첫째, 회사법과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문제이다. 둘째 회사법 자체의 존재 문제이다. 즉 회사법 자신의 존재문제라 함은 그 첫번째가 회사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과 주주출자납입규정과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회사관리구조와 같은 적지 아니한 문제들의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한편, 회사법을 완비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9屆 제13차 회의는 회사법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회사법이 실시된 이후, 동 법에 대한 첫 번째 개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현재의 중국이 개별적으로 급히 필요한 실제문제에 대해서만 회사법의 관련조문을 개정한 것일 뿐인 바, 다시 말해서 국유독점기업의 외부감사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신기술주식회사가 공업산업권과 비특허기술을

124)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4(총 제 96기), p.17.

출자액을 환산하여 점유할 수 있는 회사등록자본의 비율 그리고 신주발행과 주식상장신청에 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었다.

중국의 회사법의 개정은 중국의 실제와 부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외국의 회사입법의 경험을 과감하게 흡수·차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권자본인수제도, 회사설립무효제도, 독립이사제도, 소액주주보호와 회사채권자보호제도 등등이다. 개정후의 중국의 회사법은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접목되는 현대화된 회사법이 되어야 한다.

한편, 2001년 9월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중국 주식시장 상장을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해외 투자가에 대한 주식 시장 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며, 당분간 현지 법인에 한해 상장을 허용하되 장차 도쿄 주식 시장 외국부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기업의 상장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자 100% 출자 기업을 포함한 상장을 인정하되 외자기업의 출자비율을 상장후에도 25%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일부 유력 기업은 이미 상장 준비에 착수, 이르면 내년 초 제1호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닷케이는 중국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도 존재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²⁵⁾

3.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 입법추진

어떠한 의미에서 시장경제라 함은 경제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되는 경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아울러 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는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중국이 1993년말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경쟁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도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독점금지법을 통하여 담합, 우월적 지위의 남용, 과도한 합병은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독점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고 정부와 정부 부문이

125) 王先東, 何紹軍, “入世在即, 《公社法》修改不容緩,” 『中國律師』2001.3(제125기), pp.32-35.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독점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금지하여야 하다고 생각한다.

독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는 경쟁메커니즘의 상실을 유도하게 되므로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정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독점금지법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제한 담합,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의 경제독점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지방봉쇄, 부문별 분할도 정부·정부부문이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정독점의 주요형태이다. 경쟁제한행위의 존재는 통일적인 개방, 경쟁질서시장의 확립에 장애가 되어 시장은 자원배분의 기초적인 작용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점금지법과 통합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기업 우선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지방기업들에 의한 공정경쟁위해 행위 또는 독점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외부에서 확장하는 제한하고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경제관리권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먼저 시장경제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직과 추진이 투명하여야 한다. WTO 가입이후에는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국에는 이 분야와 관련된 몇 가지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그러한 관리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¹²⁶⁾ 예컨대, 중국의 행정조직입법은 아직 완비되지 아니하여 정부의 경제적 직능에 대한 규범은 원칙적인 간단한

126) 石佑啓, “WTO與中國行政法治建設的影響,” 『中國法律』 2001년 제1기(총 제 99기), pp.13-15.

내용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¹²⁷⁾

예컨대,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조직법》은 너무 간단하여 全文 11조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국무원 직능에 대한 규정은 “경제업무와 도시·농촌(城鄉)건설을 영도하고 관리한다”라는 1개의 條에 불과하다. 다음 국무원의 조직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은행, 審計署와 監察部의 조직과 직권을 관련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을 포함하는 기타 부문의 임무와 직책 등은 국무원의 행정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범성·안정성·권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¹²⁸⁾

또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조직법과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등 두 개를 하나로 만든(合二而一) 입법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내용도 번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행정조직법의 상황은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경제적 직능을 행사하는데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¹²⁹⁾ 오늘날, 세계대다수의 국가들은 모두 시장경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중의 하나는 개방성과 국제성에 있으며 중국의 사장경제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¹³⁰⁾ 중국은 WTO 가입이후 급속하게 개방성 시장경제로 옮겨 갈 것이며 따라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접목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경제관리를 위한 정부조직의 권능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³¹⁾

한편, WTO 협정이 국제무역분야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행위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으며 정부관리활동에 의한 무역활동의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WTO 협정과 정부권력운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권력의 법에 의거한 엄격한 행사가 요구되므로 행정제도의 발전과 완비가 뒤

127) 揚解君, “WTO加盟餘中國行政法的任務,” 『中國法學』, 2000년 제6기, p.3.

128) 楊景宇, “目前形勢與法制工作 - 加入世貿組織對法制工作帶來的影響,” 『法學雜誌』, 2001년 제1기, p.6.

129) 石佑啓, op.cit., pp.4-9.

130) 姜一春, op.cit., p.963.

131) 揚解君, op.cit., p.6.

따르게 될 것이다.¹³²⁾ WTO 협정이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로 행정기관에 의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적용되는가에 좌우될 것이다.¹³³⁾

중국이 이미 행정심판법(行政福議法), 행정소송법, 행정처벌법 등을 제정하여 행정법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행정법은 WTO 협정과 아직까지 상당히 괴리가 존재하는 바, 예컨대, - 특히 일부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 WTO의 사법심사에 관한 요구 또는 정부의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나 명령 등에 대해서도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¹³⁴⁾은 현행 중국행정법에서는 시행될 수 없다.¹³⁵⁾ WTO 설립을 위한 Marrakesh협정 제16조 제4항은 “각 회원국은 자신의 법률, 규칙, 및 행정절차가 WTO 협정이 부과한 각협정상의 의무과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행정절차는 WTO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중국이 WTO 협정을 전면적으로 국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정법의 정비가 시급하다.¹³⁶⁾

5. 안정적 · 통일적 시장경제법제의 확립

(1) 의 의

더 나아가, 중국은 WTO의 자유무역규칙에 합치되면서도 중국국내상황에 적합한 건전하고 완비된 경제법률제도를 가급적 빨리 확립하여야 한다.

132) 石佑啓, op.cit., p.25.

133) 江偉, 王景琦, “WTO協議與中國民事司法制度的完善”, 中國法學, 2001년 제1기, p.28.

134) WTO의 사법심사에 관한 조항으로는 주로 1994년 GATT 제10조 제3항(b) 및 이를 근거로 한 기타 협정의 관련 조항 예컨대,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ntidumping Agreement) 제13조, GATT 1994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船積前檢査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제4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제23조,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제6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IPs) 제1조 내지 제50조 및 제59조 등이 있다.

135) 甘文, “WTO與司法審查,” 『中國研究』, 2001년 제7기(총 135기), pp.136-143.

136) 張桂紅, op.cit., p.185.

경제행정에 있어서도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정적·통일적 법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동안의 중국시장경제입법은 국내법률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 공동규율을 반영한 법률개념, 법률원칙 및 법률제도에 대하여 각국의 성공한 입법경험과 판례, 학설을 모두 대담하게 흡수하고 차용하고 있다. 2000년에 공포된 신계약법에서 이 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시장의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고 정보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역방식이 부단히 출현하고 있는바, 이러한 것들이 전세계의 경제단일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장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국제경제속으로 융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시장경제입법도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며 중국시장경제입법중의 많은 원칙, 제도 및 구체적 규범 등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 관례의 내용과 상호 조화되거나 더 나아가 일치되어야 한다. 21세기 국제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직면하여 WTO가입요건에 근거하여 중국시장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중국이 제정·완비하여야 할 시장경제관련분야의 법률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의 정리 및 완화된 법률환경의 조성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특정한 시기에 시행된 일종의 특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혁개방초기, 일부 기업들을 각각 제한, 장려하거나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유지·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각급 주관부문이 칩칩 산중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가 남용됨에 따라 기업설립의 정상적인 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시장개방원칙에 따라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를 정리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였는 바, 600여건의 법률, 법규 및 문건을 조사하여 법률로 제한을 받은 업무 또는 항목 37항,

행정법규로 제한을 받은 업무행위 또는 항목 50항,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의 발송문서에 의하여 제한받는 업무 또는 항목은 30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공상행정관리국과 기타 부문이 공동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여 제한 받는 업무와 항목은 36항 등 이상과 같은 총 153항을 찾아내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의 기업심사승인전치주의 대상이 되는 업무 또는 항목을 400여항에 달하였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이러한 정리결과를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선정작업을 하여 필수적인 것만 유보하여 주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품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완화된 법률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재산귀속관계의 명료화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점진적으로 물권법제도를 정착시켜왔지만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은 너무 간단하여 재산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중국입법기관은 물권법 제정을 입법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 起草작업의 착수가 늦어졌다. 199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해 구성된 민법 기초작업팀은 1999년 10월 중국물권법초안 건의안을 제출하였다.¹³⁷⁾ 이 건의안은 12장 4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용익물권에 기지사용권, 농지사용권, 인접지이용권, 임대권을 포함시키고 있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물권을 포함시키는 등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물권관련 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산귀속관계를 규범화하고 재산귀속 질서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WTO 가입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¹³⁸⁾

6.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간기업의 활성화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WTO에 가입하면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적용 받게 되고 WTO 무역분쟁처리절차

137) 江偉, 王景琦, op.cit.

138) 王家福, op.cit., p.4.

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 중국은 상품거래 이외에 서비스 교역,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과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유기업의 개혁, 금융개혁 등도 가속화될 것이다. 국유기업의 경우 외국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유기업의 개혁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¹³⁹⁾

WTO 가입에 따라 국내에서의 공정경쟁원칙이 정착되어야 하므로 중국의 기업들중 국유기업의 역할의 상당부분이 민간기업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영기업의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¹⁴⁰⁾ 최근 중국경제에서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사영기업과 개인경영기업 등 민간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¹⁴¹⁾ 특히 중국이 WTO가입을 위해 공약한 여러 부분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본·기술집약적인 분야의 국유기업의 시장으로부터의 퇴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1997년 제15차 공산당 대회에서 비공유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고 그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99년 3월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경영경제와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구성요소를 격상시키고 2000년 1월에는 개인독자기업법을 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금융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용보증기구를 설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부여하고 있다. WTO의 가입과 더불어 일부 개인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있는 분야가 개방되고 대외무역권의 확대에 따라 민간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사영기업들은 중국의 미래를 이끌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가소유기업보다 훨씬 적응력과 탄력성이 뛰어나서 중앙정부는 그들이 국가소유기업의 잉여노동자들을 흡수하고 도시 실업노동자들에게 고용기회를

139) 姜一春, op.cit.,pp.958-959.

140) 沈敏榮, “WTO與國民待遇,” 法學雜誌, 2001년 3기(총 제126기), p.37.

141) John Schauble, “China needs more reforms, report finds,” <http://www.theage.com.au/bus/20001020/A61462-2000Oct19.html>.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다. 사영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조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영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특히 자본화(capitalization)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 은행부문은 개혁되어야 할 마지막 남은 분야중의 하나이며 가장 고도의 통제를 받고 보수적인 부문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오늘날 중국에서 사영기업의 기술혁신(innovation)과 발전에 대한 가장 큰 애로사항들 중 하나이다. 간혹은 중국의 사영기업이 외국인회사와의 합작기업의 중국측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데 점점 중국경제에서 사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⁴²⁾

제 5 절 대외무역법 분야

1. WTO가입이 대외무역법에 미칠 영향

GATT/WTO 규칙은 반세기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상호주의는 중국의 쌍무적 무역관계에서 하나의 규범이 되어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제도의 틀밖에 있어왔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등과 같은 일반원칙을 반영한 몇 가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모든 법인과 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무역실체들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장래 발전되어야 할 종합적인 법제도의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품거래분야에서는 충분히 확립된 교역제도들이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제조약과 협정에서 중국이 부담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고려하여 국내법을 시행하라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서비스교역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요소라 할 수 있다. 서비스교역분야에서는 정비되어야 할 법령들이 엄청나게 많다.

WTO 가입은 중국의 법제발전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협정은 중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가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모든 협정상 의무를 부

142) China & the WTO- an Analysis.

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협정들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들을 향유하게 된다. 대외무역법은 이미 이러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제6조는 중국은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라 또는 호혜와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방 계약국 또는 참여자에게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국가 또는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6조는 정부로 하여금 국제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제7조는 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합법적인 무역이익의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은 WTO규칙과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모든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WTO가입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입법도 주춤해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왔으나 이제 WTO 가입문제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⁴³⁾

첫째, 중국은 WTO의 투명성 요구에 따라 WTO에 모든 법령을 통보하고 정보공개와 협의요청에 지체없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중국과 외국의 경제주체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위생 규정 및 대외무역권에 대한 제한¹⁴⁴⁾ 등과 같은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WTO 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들은 기본적으로는 WTO(TRIPs)협정에 부합되지만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중국은 Agreement

143) Li Zhongzhou,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he Impacts on its External Trade Law: Presentation at the German-Chinese Colloquy. Hamburg, 11-12 June, 1998", <http://www3.itu.int/missions/china/lionwto.htm>.

144) 수출입허가증제도 및 금액배정제도 등도 GATT1994 제11조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廣東省鼓勵外商投刺實施辦法》 제10조, 《加快海南經濟特區開發建設的若干規定》 제13, 14조 등 지방법규들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 바 전국성 법률이외에 이들 규정도 WTO가입을 이전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4(총 제96기), p.16.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투자관련 이행요건(ance requirements)을 폐지하고 모든 법적 실체(corporate entities)가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셋째,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의 세부분야에서의 시장접근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최근의 발전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서비스 부문의 다른 세부분야에서도 관련 법령이 부족한 실정이다.¹⁴⁵⁾

넷째, WTO 관련 협정의 시행은 WTO규칙에 능통한 많은 법률가들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실들은 WTO가입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입법 변화분야의 예시에 불과하다.¹⁴⁶⁾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관련 법규의 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있다. 그 중에는 기술수출입 등에 관한 새 법규도 포함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불허, 이들 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었으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개방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수입 시장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한편, 대외무역권의 개방은 외자기업의 직접 수출 또한 가능케 하므로 외자기업은 자사 생산품 이외의 상품도 해외

145)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雜誌』, 2001년 제21기(총 제 125기), p.6.

146) Li Zhongzhou,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he Impacts on its External Trade Law: Presentation at the German-Chinese Colloquy. Hamburg, 11-12 June, 1998”, <http://www3.itu.int/missions/china/lionwto.htm>.

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¹⁴⁷⁾

중국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금년내 WTO가입이 확실시되자 2001년 7월 20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공표하였다. 생산형 외자기업의 수출경영권, 모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투자성 회사의 수입경영권, 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용 하이테크 제품 수입경영권 등 3개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통지문은 중국이 WTO가입을 앞두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출입 권한을 소폭으로나마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수출액 1천만달러 이상의 (신청전) 2년연속 세수, 외환 및 수출입과 관련한 위법 기록이 없고 국제 무역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형 외자기업은 非쿼터허가관리 품목 및 非특정상품(전문적으로 수출상 지정하지 않는 상품) 수출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사 생산 제품의 수출쿼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모기업이 생산을 위주로 하는 투자성 회사의 수입경영권을 확대한다. 투자성 회사가 시스템 부품 및 테스트용 제품을 수입할 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투자성 기업에 대한 잠행규정' 보충규정²에¹⁴⁸⁾ 의거 시행한다.
- ③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는 연구개발 상품의 시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모기업이 생산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 혹은 판매할 수 있다. 수입량은 시장 테스트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그밖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통지문에서 생산형 외자기업, 투자성 회사, 외상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상술한 수출입 권한과 관련, 기존 허가부서에서 경영범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47)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148) 보충규정 2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성 회사의 기투자기업 생산제품 및 관련 시스템의 국내외 판매를 허가한다.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스템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외에서 관련제품 구매를 허가하나 구매한 제품의 가치가 전체 시스템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덤핑방지제도의 강화

덤핑방지법은 반덤핑의 기준, 덤핑방지조치, 덤핑으로 인한 손해의 제거 등에 관한 법률이다. 덤핑행위는 실제로 일종의 부정경쟁행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해 상품을 덤핑 수출하였는 바, 예컨대, 신문지의 경우, 국제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은 톤당 550달러였는데 중국시장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톤당 480원이었다. 이와 반대로 국제시장에서 일부국가는 중국상품의 반덤핑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구두, 라이터, 연필 등이 덤핑제조를 당하여 무거운 덤핑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다. 현재 중국의 반덤핑분야 관련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에서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자로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덤핑방지 및 보조금방지 조례》(이하 “덤핑방지조례”이라 한다)가 있을 뿐이다. 이 조례는 중국이 WTO 가입에 대비한 대표적인 입법으로서 중국이 상대국에 무역 보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WTO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은 것이지만, 아직도 WTO의 반덤핑규칙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출상품이 외국에서 빈번하게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외국상품의 덤핑이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정된 동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국의 시정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¹⁴⁹⁾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은 현재의 덤핑방지조례에 기초하여 덤핑방지법을 제정하여 외국이 공정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중국에 상품을 덤핑수출하는 경우 중국의 민족공업을 보호하고 중국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조치 등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WTO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출에 의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 정부가 반덤핑관세를

149) 張桂紅, op.cit., p.184.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¹⁵⁰⁾

이 규정에 의하여 중국정부는 1994년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왔으며 특히 1995년 5월에 발표된 대외무역법에서 외국제품의 수입급증, 덤핑, 수출보조금 등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97년 3월에는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호조치조례의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반덤핑조례의 제정이후 2000년까지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를 발동한 것은 아직 5건에 불과하다.¹⁵¹⁾ 최근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WTO 가입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중국상품에 피해를 주는 외국상품에 대한 반덤핑제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중국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덤핑조례에서는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응조리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체계는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며 WTO가입에 대비하여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이 있었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관련법은 WTO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및 국제재산권보호 제도와는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있으며 현재 각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입법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¹⁵²⁾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무역관련 지재권인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 관련 법규를 WTO 수준으로 개정하고, 이를 보다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외국 하이테크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150) 史樹林, op.cit., p.6

151) 중국이 반덤핑및반보조금조례 실시이후 첫 번째 반덤핑사건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7년 12월 10일 정식으로 공고하여 1999년 6월 3일 最終裁定을 내린 사건으로 캐나다, 한국 및 미국이 원산지인 수입신문지에 대한 것이었다. “中國反傾銷和反補貼條例實施后境內第一起反傾銷案”,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landmark_chi.htm.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다.

152) 張桂紅, op.cit., p.184.

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자들이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된다면 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중국내의 지적재산권과 다른 나라들과의 지적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며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 신청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WTO 가입과 보조를 맞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가정 기기의 특허 신청율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실용신안과 설계특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계자는 기술적인 혁신에 따른 특허 신청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특허법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적 재산권 준수는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 조항으로서 WTO 협약에서 다루어지며 중국의 관계자들은 중국의 특허법 개정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런 협약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로 준수하게끔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WTO 멤버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선진국 수준의 준수를 원하고 있다.

5. 수출환급제도의 강화

중국은 1994년에 제정된 增値稅暫定條例를 제정하여 수출환급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출을 장려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율을 상향조정하여 왔다. 중국은 WTO 가입과 WTO규정에 위반되는 수출 촉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WTO 규정과 합치되는 수출촉진정책으로서 수출환급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가입이후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 환급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환급제도의 변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증치세 잠정조례를 발표하고 100% 환급을 하였으며 1995년 7월에는 환급율을 14%, 10%로 인하하고 1996년에는 다시 9%, 6%로 인하하였으며 1998년 1월에는 섬유제품, 선박, 철강, 시멘트, 석탄, 기계, 전자제품 등의 환급율을 2% 상향조정하고 다시 1999년 상반기에는 의류, 기계, 전기제품의 환급율을 17%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6. 무역관련 환경보호법의 강화

WTO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이 세계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유지하며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하에서 자신의 필요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WTO는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 및 정책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⁵³⁾ 현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선진각국 모두 환경보호를 자국 상품과 시장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중국은 1995년 일부 수출상품과 그 포장 이 선진국의 환경법규와 환경표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경험도 있어 수출상품이 선진국의 환경보호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출입상품에 대해 환경영향의 檢測, 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시장을 보호하고 중국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보호법의 정비가 있을 것이다.¹⁵⁴⁾

7. 외환관리와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의 변화 전망

(1) 환율 메커니즘 변화

WTO가입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수단이 종래의 고관세와 비관세장벽에서 외환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를 방지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폐의 평가절하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system)을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을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왔다. WTO 가입은 중국

153) Ibid., p.185.

154) 중국이 미국등 선진국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생태관세, 환경덤핑관세 및 무역금지와 제재라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이 이 점을 주의하여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賀小勇, “論世界貿易組織協定在我國法院的適用問題”, 國際貿易問題, 2001년 제3기.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 바, 중국의 국제수지와 외환시장도 필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향후 국제수지 변화추세에 대한 일반의 예측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다. 만일 국제수지가 균형을 유지한다면 외환시장의 수급도 반드시 대체로 이와 유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외환시장의 수급변화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 같은 변수들은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첫째, 관세인하로 외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직접 본국에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게 되고, 둘째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은 강제적인 외환 결제제도하에서 부분적인 자율성이 존재하는 기초 위에 구축된 것이다. 환율수준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은행의 외환매매를 통해 직접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자체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현재의 은행간 외환시장은 거래주체가 적고 거래품목이 단일한 점 등 단점을 갖고 있는 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환시장 개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외환시장은 은행간 외환시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외환시장은 거래주체가 적고 거래품종이 단일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한국 등 일반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 말하는 외환시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외환시장 시스템을 빨리 바꾸지 않는다면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순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현행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이 외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인 외환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처방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외환시장에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자유화에 따른 환율불안정은 최대한 방지한다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국제수지의 균형, 인민폐 환율 안정이라는 3가지 목표를 전제로 하여, 외환시장을 육성 및 발전시키고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을 개

선 및 완비시킴으로써, 인민폐 환율이 상이한 경제환경하에서도 국제수지 균형과 중국경제 발전에 유리하도록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다.

어찌 되었건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국외로부터의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폭이 작아 기본적으로는 거의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즉, 은행간 시장에서 인민폐 환율의 일일변동폭은 상하 기준율 $\times 0.3\%$ 이고 기준율은 前日 오후 4시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환율이 장기적으로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4년 이후 인민폐 환율은 평가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인민폐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율의 유연성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환율결정의 시장화 정도가 부족하다. 중국의 외환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민폐가 시장의 수급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달러화에 단일하게 연동되어 있다. 인민폐가 유로화나 엔화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미달러화와만 연계되어 있어, 기타 통화의 가치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이 인민폐 환율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실시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으나 인민폐 환율 변동폭 확대가 빠른 시일내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점차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환율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WTO가입이후 1-2년내에 외환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폐지하고 환율의 일간제한변동폭의 확대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주요한 조치로서 1)외환시장의 공급을 제한해온 외환의 강제매각제도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허용비율(현재 수출액의 15%이내)을 확대하고 2)외환시장의 수요를 제한하여온 외환사용사전허가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입기업으로 하여금 외환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3)외환시장에서의 1일 인민폐 환율 변동폭을 $\pm 0.3\%$ 범위내에서 실험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 변동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⁵⁵⁾ 동시에 은행의 대고객 환율결정폭(현재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0.15\%$ 에서 -0.15%)을 확

대하는 조치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개혁과정에서 인민폐의 가치하락을 불가피할 것이다. 현행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은 강제적인 외환 결제하에서 부분적인 자율성이 존재하는 기초 위에 구축된 것이다. 환율수준은 은행간 외환시장의 수급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은행의 외환매매를 통해 직접 형성된다. 그러나 시장자체의 발전 방향으로 볼 때 현재의 은행간 외환시장은 거래주체가 적고 거래품목이 단일한 점 등 단점을 갖고 있는 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외환시장 개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외환시장은 은행간 외환시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점차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환율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¹⁵⁶⁾

중국정부도 WTO 가입 이후 인민폐 환율이 당국의 개입보다는 시장 논리에 입각해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동의하였다. 미성숙된 외환시장과 미개발된 자본시장이라는 현상황하에서,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환율정책의 대전제는 국제수지 균형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 대전제와 외환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변동폭의 급격한 확대는 중국정부가 용납치 않을 것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인 확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이 예상하는 변동폭은 3~5% 수준이고 확대시 환율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정부관료들은 중국정부가 현재 중점 추진중인 산업구조 고도화에 방해가 되는 "절하"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인민폐의 태환화

수년전 중국에서도 인민폐를 국제결제통화로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의 내부적인

155) 다만, 현재 상하 0.3%로 되어있는 환율변동폭을 WTO 가입즉시 당장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156) <중앙일보, 2001년 6월 22일자>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인민폐 환율 메커니즘의 변화 전망.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과 상화이청 중국 재정부장이 몬트리올에서, "WTO 가입과 관련 인민폐 환율이 당국의 개입이 아닌 시장 논리에 입각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10월 26일 북경에서는 KIEP 북경사무소 주관으로 "韓中經濟懇談會"가 열렸는데 이 연구서에서의 내용은 중국국가외환관리국 國際收支司 鄒林(조우린) 副司長이 발표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도 유럽이나 미국 등 교역상대방이 인민폐로 결제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실물부분의 개방과 더불어 자본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면서 인민폐의 태환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WTO가입이후 3-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인민폐에 대한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태환화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외환시장의 개방일정에 대해 전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현재 미달러, 유로화 등 소수의 통화와만 국내에서 태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외국환의 종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먼저 거래외환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WTO 가입후 5~10년내 점진적으로 자본거래에 대한 자유태환을 실시할 것이므로 환율 변동폭의 급격한 확대는 없을 것이며 설사 확대한다 해도 최대 변동폭은 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인민폐 자유태환을 실시하려면 우선 국내자본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고 법적 환경을 개선하여 외환관리수단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매년 국제수지상 150~200억불의 수지에 대해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폐 환율 변동폭 확대 시기는 주로 인민폐 자유태환, 금리시장화 정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인민폐 자유태환에 5~10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현행 외환시장규제는 공급측면에서는 외환집중제를 통해 외환의 강제매각, 외환은행의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외환사용의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1일 변동폭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외환의 불법유출이 확대되고 은행간 시장에서의 초과공급 구조를 야기하며 은행간 시장조절기능이 제한됨으로써 외환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1999년 중국과 미국이 WTO 가입협상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외국의 외환업무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외국은행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환의 송금 및 결제업무는 가입후 2년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은 5년내 가능하다. WTO 가입으로 증권시장이 개방되면, 달러

화의 유입이 늘어나 환율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더라도 외국인이 A주에 직접 투자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자본계정에서 자유 태환을 허가해야 외국인의 A주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기관과 중국기관이 합작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A주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합작펀드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다.

8. 서비스교역법

중국의 서비스교역분야 입법은 WTO서비스 교역일반협정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중국의 일부 규칙은 불합리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령간의 충돌도 극심하다고 한다.¹⁵⁷⁾ 서비스 교역일반협정은 단계적 자유화 등의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교역의 경우 특히 금융, 보험, 법률서비스시장, 증권, 여행, 기본통신, 상업소매, 항공 등의 부문에서 특히 관련법이 극히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EU 등을 비롯한 WTO가입을 위한 쌍무적 협상에서 통신, 해운, 민항, 은행, 보험 등 36개 분야의 개방 및 지속적 개방에 대해 약속하였다. 향후, 이와 같이 중국이 새로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련 입법이 향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⁵⁸⁾

한편, 중국에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및 제안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금융법제도이다.¹⁵⁹⁾ 현재 중국 국내에서 금융분야의 영업에 대하여는 상업은행법, 보험법, 증권거래법에 의해 외자측의 금융분야에의 직접투자가 규제되고 있는 이외에 외자금융기관에 관한 관리조례와 국무원의 관련조례에 의해 개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개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¹⁶⁰⁾ 첫째, WTO가입후 외자계금융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157) 張桂紅, op.cit., p.184.

158)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년 제3기(총 제95기). pp.14-20

159) 중국학자의 입장에서 본 중국 금융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江平, “關於金融立法的講演,” 『中國律師』2001. 5.(총 127기), pp.56-60.

160) 姜一春, op.cit., p.959.

면치 못할 중국금융의 구조개혁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속화, 비국유자본의 참여규제 완화 등 국유상업은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업의 통합재편, 업무제휴, 리스크 관리 등의 금융시스템 전체가 건전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주식, 채권, 상업형태등부터 생산관리, 재무투자, 가정은행, 소비자금융, 자산주식화에 이르기까지 금융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¹⁶¹⁾

둘째, 투자가, 소비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자에 대해 대내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외자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취지는 약한 입장에 있는 예금저축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는 감독역할이 종래 이상으로 줄이지 않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 그러한 감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 자체가 안정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설정하는 외자진출기준과 조건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⁶²⁾

실제문제로서 중·미 양국간의 협정에 의해 중국정부는 외자은행에 관한 소유권, 경영과 설립방식, 지점 및 허가증 제도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외자금융의 중국국내에의 참여, 진입에 대한 심사기준, 조건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외자금융기관에 관한 관리조례를 기초로 하여 외자참여의 자본구조, 수량, 관리자상황, 업무범위, 경영능력등을 심사하는 기준, 조건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외자은행에는 인민폐를 취급하는 업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역을 초월하여 인민폐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정부에 사전신고, 법제에 의한 심사·허가, 외자은행의 경영방식의 합법성, 자산리스크, 자본충실, 유통자금과 준비금 등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독의 내용과 외자은행의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권 등에 관한 법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⁶³⁾

161) 이에 관해서는 “Financial Reform in Chin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instreform/currentnews/secure/c00. 참조.

162) 張忠軍, “關於WTO規約與中國金融法制度的整合性,” 『中國法學』, 2000년 제3기, p.16.

163) 史樹林, op.cit., p.4

셋째, 외자측의 금융기업은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금융은 아직 업계의 전통적인 수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송금, 전자화폐 등의 중개시스템은 금융서비스의 이용자(user)와 자금의 제공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종래보다 낮은 가격에 간편하게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그 이면에는 동시에 금리의 변동, 금융, 이체시장의 유동성, 리스크 등을 조합시킨 투기적이면서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과 그룹이 국제적인 금융상황을 신속하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중국은 그러한 면에서는 외자에 비해 열세에 있다 향후 법적으로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에 금융수단의 공급자와 구조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넷째, 보험법과 관련하여 외국보험회사의 상환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일정비율로 억제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총량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조만간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중국의 금융시장은 차츰 전지구 금융시장일체화의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외국금융기구들이 차츰 중국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현재 준비중인 조치는 외자은행, 외자보험회사가 중국자본회사와 함께 일부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 중외합작투자기금을 설치하는 형식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중외합자기업과 외자기업이 중국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것,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자에게 일정한 한도내에서 중국국내주식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허용하는 것 등이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금융업무 기업으로 하여금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¹⁶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

164) 최근 중국은행(BOC)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1천개 이상의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국내의 정보기술(IT) 센터 숫자를 1천40개에서 110개로 감축했으며 2002년 5월까지 추가로 106개 사무소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 한다. BOC는 기술적 기반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일치로 인한 낮은 정보 공유율 때문에 애를 먹어왔으며 IT센터 중앙집중화 프로그램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취해진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은 가능한 빨리 경제체제개혁의 행보를 서두르고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금융기업이 외자기업의 경쟁가운데서 생존, 발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상응하는 관련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법률은 그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운용규율과 부합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무역일반협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국이 현재 구상중인 단계적인 금융시장개방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현행 상업은행법, 보험법 및 증권법 등 관련법률에 대해서 개정과 완비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제관례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투자기금법과 先物法 등의 법률의 제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점차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건전해지고 완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¹⁶⁵⁾ 稅收 및 사회보장 등의 관련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도 중국이 가능한 빨리 제정, 개정, 완비하여야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여 중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의 통일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9. 대외운송

중국의 해운능력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세계 9개 해운강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해상운송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해상법은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에 중

165) 중국의 WTO가입에 관한 1999년 11월 US-China Bilateral Access Agreement는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0년 5월 중국과 EU간에 체결된 쌍무적 협정의 일부 규정도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협정 및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협정은 1999년 9월 중국의 정보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발표한 중국의 인터넷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금지선언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방의 문화와 정치이념의 영향 그리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부당한 외국의 영향과 경제적 지배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Jon Eichelberger and Annabel Allen, "A Legal Perspective: The Impact of WTO on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Internet/E-commerce Sector," <http://www/perinscoie.com/resource/intldocs/wtoimpact.htm>.

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은 중국이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최초의 상법 분야 입법이며 그 시행은 중국의 GATT 복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최초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합리적인 시간” 등 서구의 자본주의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만 중국법에서는 종전까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최초로 법률상으로 계약당사자 자치원칙을 구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¹⁶⁶⁾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률이 종전의 입법에서 상용되던 “국가이익의 유지·보호”라는 표현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유지·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¹⁶⁷⁾ 계획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적 색채와 객관적 현실조건의 제약을 받아 해상법률중에는 WTO의 관련 규정과 불일치하는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¹⁶⁸⁾

또한 중국의 WTO가입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이러한 대외무역의 발전은 해운이외의 중국항운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후의 항운 및 관련 시장 개방 약속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정부에 의한 항운시장 통제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며 중국계 항운기업과 외국계 항운기업간의 정책상의 차별대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운관리 및 정책이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계 항운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와 경영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항운서비스 관련 입법개혁은 WTO 가입후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166)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15조, 제16조, 제91조, 제94조, 제127조, 제158조, 제160조, 제162조, 제163조, 제179조, 제203조, 제218조, 제225조, 제227조, 제234조,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8조 등.

167) 1991년 3월 이전이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 초안 제1조와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1조의 규정을 비교한 것임.

168) 張桂紅, op.cit., p.183.

제 6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야

1. WTO가입의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현재 외국기업들은 1949년이래 가장 높은 시장접근과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의 GDP 성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사영기업 부문의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노동력의 14.5%(비국영기업부문의 25.8%)를 떠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사기업부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이 해고되는 국가소유기업 노동자들 흡수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전문기술, 훈련, 장비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현재 많은 합작기업들이 합작사업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총 국가조세수입의 약 11%를 납부하고 있고 중앙정부 외환보유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 시장접근제한, 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함된다.¹⁶⁹⁾

WTO가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부품사용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균형의무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중국기업과 외자기업간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라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169) China & the WTO- an Analysis.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¹⁷⁰⁾

평균관세율이 22.1%에서 11.7%로 인하되며 특히 부품, 원자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원자재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역업을 개방하고 WTO가 입즉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품의 물류 및 관련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지역 및 수량제한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월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판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하게 될 것이며 WTO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 및 유통분야 개방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내 자체적인 판매망과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해져 외자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금융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수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로 중국내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것이다.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의 은폐된(hidden)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이 고관세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보호하여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WTO가입으로 중국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기업 제품, 외자계 기업간의 제품, 수입제품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세제상의 우대, 수출기업 우대)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게 됨에 따라 기업의 수입(收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의 경우 외자계 기업의 인민폐 업무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내에서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이다.¹⁷¹⁾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살펴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비교해보면 수입시장은 높은 관세율로 인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각종 수입금지, 수입쿼

170) 安心, “WTO《丁部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2(총 제100기), pp.10-11.

171) 姜一春, op.cit., p.958.

터, 수입제한 및 비공식적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무역장벽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내수시장의 경우, 특정산업의 투자진출 또는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많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통산업의 경우 두드러졌다.¹⁷²⁾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개방은 수입시장의 개발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내부경제체 개혁의 진전, 산업발전, WTO가입, 중국내 유통·운송산업의 발전 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¹⁷³⁾

2. 외국투자관련법의 정비 전망

(1) 의 의

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¹⁷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상투자기업¹⁷⁵⁾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률, 법규, 외자유치 정책등의 정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가입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을 해

172) Ibid.

173)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1998년 제13기 p.23.

174) 중국어로는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이다. 흔히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5년 제정)에 기초하여 설립되며 外國株主의 持株가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5%이상인 주식회사이며 동 잠정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 기타의 관련법규정이 적용된다(동 暫行規定 제2조, 제3조, 제25조).

175) 우리나라에서는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국투자가투자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결하기 위한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은 WTO의 방침에 근접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해 내국인대우를 부여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¹⁷⁶⁾

중국의 외자관련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협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¹⁷⁷⁾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문제, 외국인 투자와 투자기업의 내국인대우문제, 수량제한문제¹⁷⁸⁾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종전의 그 어느 때보다 중국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상투자기업관련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인 단일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협력 및 상호관계도 입법론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⁷⁹⁾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내자기업보다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참입 규제 기타 관계에서 내자기업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당하는 점도 있다. 또한, 현지부품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수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병행하여왔다. 그러나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은 WTO 규칙에 부합되도록 중국의 외자정책 및 관련법제도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⁸⁰⁾

(2) 기본방향

첫째, 중국은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

176) 劉新宇, op.cit., p.583.

177) 예컨대, 합자경영기업법개정법률의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 자체도 WTO협정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張桂紅, op.cit., p.184.

178) 예컨대 《福建省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補充規定》 제5조 등도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2000.4(총 제96기), p.16.

179) 張桂紅, op.cit., p.185.

180) 姜一春, op.cit., p.958.

한하는 조치들을 폐지하여야 한다. 특히 TRIMs에는 현지부품사용의무 (Local Contents) 2)수출의무부과, 3)외환규제, 4)수출규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WTO에 가입하면 지체없이 TRIMs 협정을 준수하고 수출입 및 외환수지균형요구, 현지부품사용요건 등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승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요구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0년말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 경영기업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이들 기업에 부과되었던 수출의무 조항, 외환수지균형 의무조항, 국내물품우선구매조항¹⁸¹⁾ 및 생산경계계획보고의 무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둘째,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라 함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서비스 시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국내시장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개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²⁾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1995년 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특구와 상해시 등 연해도시지역에서 실험적으로 내수 판매와 수출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기업에 부여하였다. 수출의무 규정도 사전심사단계에서만 점검하고 사후 그러나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2000년 10월과 2001년 3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의무조항들은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이후에는 이러한 규제적 내용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시행되어야 한다.¹⁸³⁾

셋째,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여하였던 세제측면

181) 1994년 2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정한 《汽車工業產業政策》 제31조 제1항도 “합자기업이 부품을 선정할 경우 국내부품이 동등하면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타 지방성 법규 및 중국심사기관의 외자심사항목에서도 그러한 국산화율을 승인 조건의 하나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 등의 규정과 관행도 TRIM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향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盧炯星, op.cit., pp.14-18.

182) 沈敏榮, “WTO與國民待遇,” 『法學雜誌』, 2001년 제3기(총 제126기), pp.36-37.

183) 1987년 국가계획위원회가 공포한 《關於中外合資, 合作經營企業產品以產項進辦法》 제9조 및 1987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가 공포한 《中外合資, 合作經營企業機電產品以產進項管理辦法》의 규정 등이 아직도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盧炯星, op.cit. p.14.

에서의 우대조치는 WTO가입이후 내외자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노동법, 외국환관리 기타 영역에서 일반 중국기업(內資企業)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기초하여 중국국내에 설립된 중국기업(법인격을 갖는 경우에는 중국법인)이지만 외국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중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그와 같이 달리 취급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우대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와 차별의 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종래 중국내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은 부분도 있다. 그러한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간의 구별은 중국의 WTO가입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법제의 기본적인 정비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 10월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 및 2001년 3월의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은 부분적인 개정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상투자기업 관련법의 단계적인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¹⁸⁴⁾

물론 외국인투자를 위한 우대조치 그 자체가 WTO의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그러한 역차별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조치의 폐지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향후 내외자 평등의 원칙이 법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이후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增値稅(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일정한 수입에 대해 관세면제조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의 격감이 발생하자 그러한 우대조치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인우대조치의 항구성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84) 系賀了, 森川伸吾, 大西宏子, p.53,

넷째, 특정지역에 대한 우대조치가 축소될 것이다. 개혁개방초기부터 중국의 외자유대정책은 내륙지역에 비해 연해지역 특히 경제특구내의 기업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이러한 지역에 편중되는 외자유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은 내륙지역내 장려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발생 후 3년 동안 면세, 그후 2년간 50% 감면이라는 현행 조세감면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5년의 우대기간 만료후에도 3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15%만 징수하는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륙지역에 재투자된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이 25%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며 내륙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외자도입 우선 분야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설비, 관련기술, 부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에서의 제세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정부가 최근 내륙지역에의 투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내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WTO가입이후에는 중국이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는 상당한 축소될 것이다.¹⁸⁵⁾

다섯째, 외국자본의 시장침입의 허가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1992년 이후 외자에 대한 업종규제가 완화된 항목, 예컨대, 방직업, 화학, 석유공업, 건설업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확대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광산자원, 서비스무역, 여행자원의 개발, 수상운송 등에의 외자침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허가 기준의 완화·개방에 관한 세척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이상을 차지하던 제조업분야의 외자투자율이 낮아지고 종전에는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부동산과 호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WTO가입이후에는 금융, 통신, 유통, 전문 서비스 분야가 시장규제 완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다.

185) 姜一春, op.cit., pp.958-959.

- ② 선진국이 직접투자의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투자 경향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선진국에 의한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 ③ 중국에 진출하는 투자형태도 종래의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 이른 바 3자기업의 설립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M&A에 의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 투자 경향이 국경을 초월하는 M&A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WTO 개방에 대비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외자에 의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외자측에 대한 진출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종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장려, 제한, 금지되는 업종을 두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정부행정의 다른 레벨에서 직접심사하고 인가를 부여하였다. 향후에는 정부행정의 제한, 금지 항목의 심사와 장려, 우대항목의 자격 인정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등록 및 심사업무를 산업관리부문에 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3) 현행 합자경영기업법 등의 개정전망

1) 의 의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을 정리하여 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라는 3가지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한 외상투자기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비준제도(면허주의)를 폐지하고 완전한 내국민대우를 외국투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비준제도는 당장은 폐지하지 말고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될 법률을 현행 회사법의 특별한 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법에서 그러한 특별한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내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001년 3월 14일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主席團 제3회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 의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의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¹⁸⁶⁾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관한 많은 제안은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과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어서 당장 채택하기는 곤란하며¹⁸⁷⁾ 다시 조사와 논증을 거쳐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¹⁸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의 3개의 외자관련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형태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1993년 회사법이 제정되었지만 여기에서 불통일적인 면이 남아 있다. 예컨대 외자에 의한 투자총액과 경영기간, 중대사항의 의결요건 등은 회사법에서의 규정에 비교해보아도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된다. 향후 이러한 23개의 외자법률을 폐지하고 통일적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회사법에 상응하는 내용중에서도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합자경영기업법을 중심으로 외상투자기업법에 관한 중요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안 및 일부 학자, 변호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규제의 폐지

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제2항은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에서 외국측 당사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¹⁸⁹⁾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5년 공포한 『외상투

186) 이에 관한 내용은 인민일보(해외판) 2001년 3월 15일 참조.

187) 예컨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등의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형식상의 중외합자경영기업(중국어로는 假合資라고 함)을 설립하는 중국기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심사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등의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등이다.

188) 劉新宇, op.cit, p.584.

189) Ibid.

자기기업등기관리에 관리에 대해 공사등기관리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의 집행의견』 제1조에서는 「외국투자자와 국내기업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공사에서 외국투자자가 납입한 출자액이 등록자본 총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의 심사인가를 거쳐, 관계 외상투자기업등기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外資成分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자기업으로서 인가를 부여한 지방의 심사승인기관(대외경제무역위원회)이 있는 바 「25%미만의 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아니라 내자기업으로 취급된다면 그러한 심사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외자기업으로 심사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외자 비율이 25%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편의상으로 그 등기와 관련하여 내자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지방의 행정법규마다 동일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¹⁹⁰⁾ 이러한 실정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서는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도를 25%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¹⁹¹⁾

190)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1997년 공포한 503호 문서 「대외개방의 촉진과 외자의 이용확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4조는 내자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이 장려되며 외상투자자와 국내기업이 공동투자하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러한 외상투자자가 차지하는 자본비율이 등록자본액의 25%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영업허가증(국가가 금지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는 제외)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 기업법인영업허가증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일원화할 때까지, 중국은 국내기업에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행한데 반하여 외상투자기업에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행하였다. 외자 25%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1995년의 규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는데 반해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다는 점에서 외자 25% 미만의 기업의 성격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 외자의 투자비율의 최저한을 25%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25%미만의 외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외자성분을 갖는 내자기업으로 취급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합자경영기업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劉新宇, op.cit.

3) 합자경영기업 출자자의 채무부담과 리스크 배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합자경영기업출자자의 채무부담 및 리스크 배분에 대하여 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3항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의 각 당사자는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분을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의문이 생겨난다. 특히 각 당사자들로 하여금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의 채권과 채무는 합자경영기업의 권리의무이며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아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각 합자경영당사자들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만 투자비율에 합자경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자경영장사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 정부 심사부문이 합자경영파트너에 대하여 합자경영기업 자체의 채권채무의 부담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오해에 기초한 것일 것이다.¹⁹²⁾ 이 규정의 그와 같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단의 『위험 및 손실을 분담한다』라는 구절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중외공동관리규정의 폐지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에 대하여 중국측 당사자가 그 지배를 계속하고 외국의 선진적 관리경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합자경영기업법 제6조에서는 『중국측 당사자 또는 외국측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사장을 담당할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작경영기업법 제12조에서는 『중외합작당사자의 일방이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주임을 담당하며 타방은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부주임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국측의 합자경영기업 또는 합작경영기업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합자경영파트너가 복수인 경우, 중국측 당사자가 소액의 출자를 하고도 합자경영기업 또는 합작경영기업의 이사장(주임) 또

192) Ibid.

는 부이사장(부주임)에 취임할 수 있게 되어 출자에 따른 경영권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것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이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심의에서 중외 각 합자경영당사자들이 각각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장, 부사장을 담당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합자경영기업법 수정제안의 일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부터 제출되었다.¹⁹³⁾

5)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의 권한의 축소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심사·관리하는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은 자주성을 가진 것이며 중국의 WTO 이후에는 합자경영기업의 활동이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부문에 의한 지도, 감독은 합자경영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합자경영기업법 제9조의 개정예에 의해 향후 실시조례상의 10군데 이상의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¹⁹⁴⁾

그러나,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은 조만간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될 것을 예상된다. 그런데 조만간 실시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① 외국측 당사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얻도록 한 제30조,
- ② 합자경영기업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관부문의 심사·승인을 얻도록 한 제46조,
- ③ 합자경영기업의 기본건설계획을 주관부문의 계획에 편입시킨다는 제543조,
- ④ 합자경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을 주관부문으로 제출하도록 한 제56조,
- ⑤ 합자경영기업 청산은 주관부문의 인가 및 감독을 받는다는 제103조,

193) Ibid., p.585.

194) Ibid.

- ⑥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종업원의 출국절차에 대해 주문부문이 대행한다는 제114조 등이다.

6) 외환수지균형에 규정의 폐지

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시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의 외환수지는 일반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환수지균형의 문제는 종전부터 외국투자자의 불만을 사왔다. 그러므로 외환수지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자사 상품을 수출하는 외에 외환조달센터 등의 기관으로부터의 조달, 수입대체제품의 생산 및 기타 상품의 수출 등에 의한 종합적 외환수지균형 방법도 인정되어왔다는 점에서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요청을 굳이 법령에 규정할 의미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금융, 외환이체시장에서의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외환 수지균형의 요청 문제는 외국투자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고 있다.¹⁹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0년의 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관련 조문개정에 이어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의 관련 조문도 개정될 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⁹⁶⁾

뿐만 아니라 중국은 IMF 8조국으로 이행하게 되면 인민폐와 외환의 교환에 대해서 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요청하여 입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으며 은행구좌의 일원화 및 외환보유제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러한 제한이 외국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7) 이사회의 기능재조정

중국 국내기업에 관한 회사법에 비교해 볼 때, 합자경영기업의 출자자(합영당사자)의 권리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합자경영기업에서는 예컨대, 정관의 개정, 기업의 합병·분할·해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 그러나 회사법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주(출자자)는 주주이외의 자에

195) Ibid., p.586.

196) Ibid.

그 출자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에서는 「반드시 전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한 주주는 당해 양도분에 상응하는 출자분을 매입할 수 있으며 당해 양도출자분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양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자경영기업법의 경우에는 모든 출자자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 전원일치의 의결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합자경영기업의 출자자의 권리가 법률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에 비교해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며, 정관의 수정, 기업의 합병·분할·해산 등에 대해서 이사회 전원일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⁹⁷⁾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하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는 그를 파견한 합자경영당사자인 출자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출자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합자경영기업의 이익은 후순위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합자경영기업의 중요한 모든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는 현행법의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주주총회를 두어 주주총회를 합자경영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하여 회사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을 참조하여 합자경영기업³의 운영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¹⁹⁸⁾ 것이다.

8)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관리체제 (투자업종 규제)의 폐지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3조는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197) 2000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에서도 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 (下), 國際商事法務, Vol.29, No65(2001), pp.728-729..

198) Ibid., p,727

주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한 『외국인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지도하는 잠정규정』¹⁹⁹⁾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²⁰⁰⁾은 투자업종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가이드라인 관리는 중국의 외자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WTO가 주장하는 자유화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과학기술이 일취월장하는 오늘날에는 각 산업의 변화가 격심하여 새로운 업종이 소멸되기도 하고 출현하기도 하므로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의 대응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일부 실무자들은 법률이 禁止類과 制限類의 업종을 정하되,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체제를 조정하는 제안도 제기된 바 있다.²⁰¹⁾

9)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준칙주의)의 점진적인 실시

현재의 외국인투자심사인가제도는 과거보다 대단히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류, 제한류 업종 이외의 외국투자에 대해 국내기업(유한책임공사)에 대한 신고제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심사인가(승인제)를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²⁰²⁾

한편, 최근 모델계약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독자적인 내용을 둔 합자경영계약을 작성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합자경영계약서 등의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실시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합자경영계약서의 조항을²⁰³⁾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²⁰⁴⁾

199) 1987년 12월 제정, 1995년 6월 개정.

200) 1995년 6월에 공포되고 1997년 12월에 개정되었다. 현행 투자목록은 장려업종 185, 제한업종(甲) 26, 제한업종(乙) 85, 금지업종 31으로 도합 327개의 업종을 그룹화하여 열거하고 있다.

201)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의 섭외경제법 포럼에서 논의됨.

202) 劉新宇, op.cit.,(下) pp.727-728.

203) 실시조례는 14항목의 합자경영계약의 필요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자경영계약의 부속서류가 합자경영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204) 대외경제무역부는 1991년 7월 11일 『외상투자기업계약, 정관의 심사비준의 원칙 및 요점』을 공포하였으며 1996년 11월 5일에는 『부분업종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예컨대, 합자경영당사자(출자자)는 商權移管의²⁰⁵⁾ 협의서를 합자경영계약의 부속서류로 하여 제출하였는데, 심사기관으로부터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서 그러한 협의서는 합자경영당사자에 있어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대전제가 되고 이것을 합자경영계약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충분한 보증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강하게 외국 투자자로부터 제기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²⁰⁶⁾

그러므로 현행 외국인투자심사승인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정부가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합자경영계약서 자체에 대한 심사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거론한 것 이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상투자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자경영기업법에 삽입하자는 수정제안 그리고 외국측 당사자가 중국국내에서 얻은 외화이익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3. 외국인투자기업조세제도

(1) 내외자기업 세제일원화 문제

중국은 현재까지 법인세와 지방세에서 대내외 기업에 동일하지 않은 세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외자 기업의 차등과세는 우대정책의 산물로서 내자(중국) 기업들은 평균 33%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자기업들의 경우(회사 소재지가 경제특구, 기술개발구 등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 정도만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특히 개발구 등 외국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2減 3免'이라 하여 기업 설

심사비준의 원칙과 수단』 발표에 관한 통지』를 제정하였지만 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劉新宇, op.cit.(下), p.729.

205) 예컨대, 중국측 출자자의 거래처 및 취급 상품의 생산·판매업무를 합자경영기업에 이관시키는 등.

206) 劉新宇, op.cit.(下), p.728.

립후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첫 2년간은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고 3년 동안은 7.5%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우대조치를 적용받는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 특히 내외자 기업의 세계 일원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세무총국 고위 관계자도 최근 WTO 가입이 임박, WTO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마련을 위해 대외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세수정책을 철회해 기존 내외자 기업간의 차등 과세에 대한 일원화 방침을 표명하면서 세수정책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²⁰⁷⁾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학자는 “점진적인 세계개혁과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공평한 세금부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세수 차이는 수입 관세 감면과, 수출 후 관세환급, 기업소득세 감면 등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WTO 가입후 대폭적인 관세인하로, 관세 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우대정책의 효과는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다. 현재 소득세 감면은 아직까지 중국의 외자유치 우대정책의 주요한 내용이다. 시장개방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세 감면 정책은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낳을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소득세감면은 중국이 실시하는 산업 우선 발전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⁰⁸⁾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대우라 함은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2) 부분적인 외자유치정책의 유지

이에 반해 반드시 WTO 규범하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라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기업간의 기계적인 평등대우를 의미하

207) 중국은 WTO가입에 앞서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준비중이다. 그러한 조세개혁에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령상의 규율내용 차이를 단계적으로(step by step) 시정(rectify)하는 것도 포함된다. “Sweeping tax reforms prior to WTO entry,” 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13410.html.

208) 劉新宇, op.cit(下), p.728.

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특정한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⁰⁹⁾ 또한 중국 당국도 지속적인 외자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선별적인 우대조치를 앞으로는 계속할 것이며 기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외자우대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²¹⁰⁾ 세무총국 관계자는 외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 세제 및 투자 영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존 우대철회로 인한 외자기업의 반발을 감안해 금융, 보험, 광산품 탐사 및 개발 등의 시장개방 확대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중국의 중점 외자유치 분야인 하이테크, 농업, 에너지, 교통, 대형공업 등의 산업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우대정책의 전면철회는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조정세제 부분이 법인세와 같은 국세에 한정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15%라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일세법 실시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1-2년내에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통일세법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된다. WTO 가입후 중국은 계속 외상투자기업에 우대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외상기업이 기초시설과 고도의 신기술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209) 王嬌萱, “非歧視原則與中國實踐的協調,” 『中國律師』 2000.7.(총129기), pp.47-49.

210) “Preferential Treatment will Continue even after WTO entry, MOFTEC spokesman says,”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B200102630.asp>.

제 7 절 중국의 법집행의 실효성문제

1. 의 의

중국은 미국, EU 등과 쌍무적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국이 관세, 비관세, 서비스 시장접근 등에 관한 양허 내용을 충분히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입법 분야외에도 행정·사법분야에서 뿌리깊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잔재들 그리고 뿌리깊은 지방보호주의 등이 그 주요 논거가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법의 지배의 불충분성

중국은 법령, 정책, 관행을 WTO규범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야 하지만, 국제규범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내규, 지침, 메모 등이 많다. 또한 법령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법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중국의 낙후된 법조 전문인력 교육 및 공급, 관련 지식과 노하우 수준의 미흡함을 고려해 볼 때 불합리한 법령과 관행은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법적 분쟁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내법규와 WTO 규범과의 조화가 중국의 WTO 가입후에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

중국에서 미국, EU 등과 WTO가입협상을 벌이고 대외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은 각 부서와 각급 지방정부에 달려있다.²¹¹⁾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는 WTO규범을 비롯한 국제조

21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정비는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법에 대해서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해시도 많은 지방 법규를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비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hanghai to

약과 협정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당해 지방의 경제성장, 고용, 외환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각급 정부는 비관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묵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방주의의 확산이외에도 중앙정부가 WTO 협정과 관련 국내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는 행정단계별로 정보의 차단·왜곡현상으로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WTO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지방관리들에게 먹혀 들겠는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WTO협정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중앙정부가 그 의지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없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택동 시대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미시적 경영을 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에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양하였으며 그 결과 이제 중국은 실제로는 단일시장이라기 보다는 각각 독자적인 무역·투자 장벽을 가진 시장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markets)일 뿐이다.

예컨대, 중국은 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로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지방별 보호주의의 가장 좋은 사례중의 하나이다. 성과 시의 관리들은 현재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예컨대, 상해의 거의 모든 택시가 중외합영기업인 상해·폭스바겐사의 제품이다). 또한 그러한 관행을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은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경우는 자동차 가격이 50%까지 상승하기도 한다.²¹²⁾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중국 제조업자와 중외합영·합작기업들간의 문제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후에는 중국의 국가차원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align local regulations with WTO rules”, <http://www.chian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0701.asp>.참조.

212) Greg May, “Reality Check: Local Protectionism May Hamper China’s WTO Compliance”, http://www.nixoncenter.org/publications/reality01%20check /11_18_99 ChinaWTO.htm.

하더라도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와 유사한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현지 제조, 소개 및 서비스 시장을 중국의 다른 지방 및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방정부의 행동은 자동차 사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세계무역체제로의 편입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결여는 외국에 대해서는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자신의 지방에 있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²¹³⁾

카네기 국제평화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학자인 Pei Minxin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는 법원에서 타지방의 소송당사자에게 2:1로 유리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999년 8월 공영인 신화사는 소송가액의 총합계가 310억 달러에 해당하는 850,000건의 법원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지방의 관리들이 당해 지방의 기업에 불리한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기준의 준수에 대한 기타 많은 장벽들 예컨대, 만연된 부패, 밀수, 부정입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 잠식 및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들의 국가정책목표에 대한 현지 이익 우선적 입장 때문에 제거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3) Ibid.

제6장 결론

중국이 미국, EU 등과 타결한 양자협상을 통하여 중국이 약속한 사항을 보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쌍무적인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중국은 이를 중국의 국내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과 행정법규(국무원에서 제정)의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국내법 특히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관련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인터넷 통신사업은 외국인 투자불허 업종이며 통신기술 연구 등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쌍무적인 협상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국내법과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라, 향후의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어 중국의 WTO 실무작업단의 다자간 협상결과에 대한 조정작업과 이에 따른 WTO 가입의정서의 내용 및 그후의 중국의 구체적인 시행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법제의 정비와 운용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하여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반덤핑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에서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자로 시행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는 1994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연시켰던 장애요인등을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규제였다. 각종투자진입장벽이 문제였던 것이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의무,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 비율, 기술이전요구 등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였다. 이러한 각종 투자규제에 대해 특히 많

은 불만이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특히 미국이나 EU 등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업종별 진입장벽, 투자참여와 영업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위반되는 각종 법규, 정책, 관행들에 대한 철폐문제였다. 이러한 투자장벽의 완화는 제한적 수입제도의 완화와 함께 중국시장접근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의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WTO 가입이후 개혁, 개방이 더욱 가속화하고, 앞서 언급한 투자장벽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시장화가 촉진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또한, 중국의 법령, 정책, 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따라 투자타당성조사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 이후의 중국에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법적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분야, 금융분야, 유통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기회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양국간 무역거래가 일로 확장되어 왔는데,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8월 타결 지은 바 있다. 우리가 중국의 WTO 가입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13억 인구의 거대 중국이 세계경제 전반에 나섭으로써 세계경제와 국제경제 흐름에 심대한 영향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모든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 자체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제여건과 환경이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 무역시장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중국의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과 상품의 대중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투자관련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지고 예측가능해 짐으로써 우리 업계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그것은 중국이 WTO 가입 이전

에는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퍼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WTO 가입으로 자국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내 기업의 무역 및 투자진출에 있어서 안정성이 보다 향상될 것이다.

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이미 중국에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미국 등의 경쟁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중국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NTR) 대우를 받아온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WTO가입이후 대중투자는 중국의 늘어나는 구매력, 무역장벽의 단계적 축소, 보다 용이해진 시장접근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수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투자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¹⁴⁾. 특히 금융, 보험, 유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고,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의 중국통신, 금융·보험업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비스시장에 대한 무역 및 투자노력이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일변도의 투자패턴에서 벗어나, 유통, 광고, 자문,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중국의 서비스시장진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한·중간의 수출경합 관계 심화, 중국 내수시장확보를 둘러싼 서방제품과의 시장경쟁 심화 등이 예상되는바, 정부차원에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구조조정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업차원에서의 非價格 경쟁요소인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의 WTO가입은 폐쇄된 중국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우리의 각종 보호관세의 철폐로 인한 우리 나라 시장개방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4) 특히 중국의 WTO가입은 첫째, 법규·정책·제도상의 투명성(transparency), 내국민대우원칙, 외국인투자환경 등의 개선 둘째, 대외개방의 확대를 통한 중국경제의 시장화 가속, 내수시장 규모의 확대 셋째, 중국산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의무, 수출이행의무비율, 외환수지평형의무등 TRIMs 관련 투자규제 폐지 완화 등으로 한국의 對中 FDI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가입은 적어도 교역측면에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부와 기업차원의 세심한 對應戰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바,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政府次元의 對應 方案을 살펴보자. 첫째, 산업피해 구제제도(특히 Safeguard)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상마찰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여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일원화, 조정관세 부과기준의 과학화, 반덤핑 관세의 신중한 운영 그리고 주요국의 대중통상마찰사례 연구 및 중국의 가격 메카니즘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저가의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우리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측의 세이프가드발동 등 산업피해구제 제도 운용에 대한 중국 정부측의 이의제기와 항의가 잦아질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측의 저가 수출공세를 제어하면서 중국측의 산업피해 구제에 대한 항의와 통상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정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발동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경우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고,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수입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양곡관리제도, 농업보조금제도, 수입제한제도 및 관세체계도 WTO 체제에 부합되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긴급관세나 조정관세, 기타 수입규제조치 역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신중히 부과하여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원산지 표시도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가격체계·가격구조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간의 소모적 反덤핑관세의 부과나 상호무역보복 조치는 양국간의 무역을 축소시키고, 비싼 수입품의 구입을 강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덤핑마진을 조사하여, 중국의 逆보복조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만 중국은 원가개념이 희박하고, 가격 및 조세제도가 복잡하며, 저가 중국산 제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중국의 상품별 가격결정 메커니즘, 상대가격구조, 조세체계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음, 企業次元의 對應 方案을 살펴보자. 첫째, 수출상품 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며, 구조전환 노력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시장에서의 한·중 상품 간 수출경합관계의 심화, 국내시장에 대한 중국 제품의 수입수요 증대, 중국 내수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 심화는 우리의 산업구조 및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의 퇴출·업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적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기업차원의 기술개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자동차·가전분야 부품·반제품 수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에도 자동차·하이테크 가전 등 유치산업 분야는 고관세와 구입보조금 등으로 계속 보호할 예정이다. 예컨대 자동차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기존의 진입규제정책(이른바 3大·3小·2微)을 유지할 것이고, 금융·보험·농산물 시장의 경우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조치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수송기기·전자기기용 부품 및 부분품, 첨단소재, 농업용 생산재, 선진기술,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설비 및 동 부품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므로 이들 분야의 대중수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라이선싱 및 인수합병(M&A) 방식에 의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투자 위험이 큰 기업신설형 직접투자보다는 부품 수출이나, 라이선싱, 인수합병식에 의한 직접투자로 위험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 규모가 11위이고 무한한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WT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도 제도적으로 확고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체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된다. 현재 WTO가 추진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 國家教委社科司編, 『中國社會主義建設』(遼寧人民出版社, 1996), p.158;
宋濤主編 『政治經濟學教程』(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 王超英, 孟憲剛, 藏耀明, 『對外貿易法實用問答』, (北京:中國商業出版社, 1994).
- 姜一春, “中國のWTOに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 羅勝福, “中國開放法律服務市場之我見”, 『中國律師』, 2001,1(총 제123기).
- 王家福, “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 『中國法律』, 2001년 1기(제99기).
- 張桂紅,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總第102期(2001.4).
- 肖永平, 胡英慶, “加入WTO與我國仲裁法律制度改革”, 『中國法律』, 2001.2, (총 제100기).
- 系賀了, 森川伸吾, 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29, No.1(2001).
- 曹建明, 賀小龍, “加入WTO餘我國對外經貿立法”, 『中國法學』, 2000년 1기 (총 제93기).
- 王廣耀, “論我國憲法結構的完善”, 法商研究, 2000년 제5기.
- 張乃根, “論WTO與我國的法律保藏機制”, 復旦學報. 1999년 제5기,
- 曹建民, “WTO法律體制餘中國相關法律,法規和定策措施比較”, 中國工商管理研究, 2000년 제9기,

참고문헌

-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 4 (총 제96기),
- 江偉, 王景琦, “WTO與中國民事司法制度的完善,” 『中國法學』, 2000.4(총 제96기)
- 王先東, 何紹軍, “入世在即,《公社法》修改不容緩,” 『中國律師』, 2001.3(제 125기),
- 楊振山, “社會主義市場經濟與中國物權法制度,” 『法學雜誌』, 2001년 제2기 (총 제125기)
-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雜誌』, 2001년 제21기 (총 제125기),
- 石佑啓, “WTO與中國行政法治建設的影響,” 『中國法律』, 2001년 제1기(총 제 99기),
- 揚解君, “WTO加盟餘中國行政法的任務,” 『中國法學』, 2000년 제6기(총 제98기).
- 楊景宇, “目前形勢與法制工作 - 加入世貿組織對法制工作帶來的影響,” 『法學雜誌』, 2001년 제1기(총 제99기).
- 江偉, 王景琦, “WTO協議與中國民事司法制度的完善”, 『中國法學』, 2001년 제1기(총 제99기).
- 于安, “WTO協定的國內實施問題,” 『中國法學』, 2000년 제3기(총 제95기).
-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년 제3기(총 제95기).
- 鄭成思. “WTO與知識財產權研究,” 『中國法學』, 2000년 제3기(총 제95기).
- 甘文, “WTO與司法審查,” 『中國研究』, 2001년 제7기(총 135기).

方浩, 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律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년 제2기(총 제125기)

安心, “WTO《丁部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2(총 제100기).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1998년 제13기

沈敏榮, “WTO與國民待遇,” 『法學雜誌』, 2001년 제3기(총 제126기)

系賀了, 森川伸吾, 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29, No.1(2001).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下) 國際商事法務, Vol.29, No. 6(2001).

王嬌萱, “非歧視原則與中國實踐的協調,” 『中國律師』 2000.7.(총129기).

“中國反傾銷和反補貼條例實施后境內第一起反傾銷案”,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landmark_chi.htm.

王勝明, “合同法的立法背景,指導思想及適用範圍,”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龍翼飛,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保障法律制度,”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expert1_chi.htm

蔣志培, “中國知識產權的司法保護與展望”,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obser1_chi.htm.

KIEP Weekly Review, 2001년 9월 17일.

射手矢好雄, “中國ビジネス最前線”<43>, NBL No.697(2000.9.15).

참고문헌

- “MOFTEC official promises transparent legal system after WTO entr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1901.asp>.
- 程法光, “中國涉外稅收政策和稅制發展趨勢”, 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
- Will Martin & Christian Bach, “The Importation of State Trading in China’s Trade Regime”, in F. M. Abbot(ed.), *China in the World Trading System: Defining The Principles of Engagement* (Kluwer, Cambridge, 1998).
- Mark Williams and Zianhua Zhong, “The Capacity of Chinese Enterprises to Engage in Foreign Trade: Does Restriction Help or Hinder China’s Trade Relations”, *J. Transnational L. & P.* Vol.8(1999).
- David Blumenthal. “‘Reform’ or ‘Opening’? Reform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WTO Access- The Dilemma of Applying GATT to Marketing Economies”, *UCLA Pac. Basin L.J.* Vol.16(1998).
- Huang Yiping & Ron. Duncan, “How Successful were China’s State Sector Reform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es*, Vol. 24(1997).
-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 Law Center- 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ring_2000.htm.
- Greg May, "Reality Check: Local Protectionism May Hamper China's WTO Compliance", http://www.ixoncenter.org/publications/reality01%20check/11_18_99ChinaWTO.htm.
- John Schauble, "China needs more reforms, report finds," <http://www/theage.com.au/bus/20001020/A61462-2000Oct19.html>.
- Li Zhongzhou,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he Impacts on its External Trade Law: Presentation at the German-Chinese Colloquy. Hamburg, 11-12 June, 1998", <http://www3.itu.int/missions/china/lionwto.htm>.
- John Eichelberger and Annabel Allen, "A Legal Perspective: The Impact of WTO on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Internet/E-commerce Sector," <http://www/erinscoie.com/resource/intldocs/wtoimpact.htm>.
- William J. McMahon, "Cina-U.S. Reach WTO Deal",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NewArchive/secure/1999/november.
- Bruce Stokes, "The China WTO Dilema," <http://socrates.berkeley.edu/~briewww/forum/berkeley2/strokes.html>.
- Lester Gesteland, "China's Ban on Internet Foreign Investment: A WTO Negotiating Plo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1999/September>.
- Xing Fan, "China's WTO Accession and Telecom Liberalization",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

참고문헌

ocom/currentnews/secure/c0003.

Brett Williams, "China and the WTO Working Papers 200/1: China's Accession to GATT and the Control of Imports of Goods by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China", <http://law.and.edu.au/china-wto/seminars/seminar1/C&WTONo.1.htm>.

The United States-China Business Council(1988), "China and the WTO: Critical Issues and Objectives", June 1988
rmflrh "Market Access and Protocol Commitments", <http://www.uschina.org/public/wto/html>. August 1999.

USTR (199a), "U.S. China Sign Historic Trade Agreement", Dec.14, 1999, pp.1-3, <http://www/ustr/gov/releases/1999/11/9-95html>.

Stanley Lubma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Unfinished business in Genev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

Wayne M. Morrison, "IB91121: China-U.S. Trade Issu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000.9.20.) <http://www/cnie.org/nle/econ-35.html>.

Joseph J. Borich, "China, The WTO, an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pcom/currentnews/secureC0001.

Max Baucus, "PNTR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5>.

- Joseph Fewsmith, "The Impact of WTO/PNTR on Chinese Politics," <http://www/nbr.org/publications/analysis/vol11no2/essay2.html>.
-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 James H. Nolt, "China in the WTO: the Debate," Foreign Policy in Focus, Vol.4, No.38(1999), <http://www.foreignpolicy-infocus.org/briefs/vol.4/v4n38china.html>.
- USTR(1999). "USTR Barshefsky's Press Remarks Following Negotiations with China on the WTO".
- Ingo, M.D. & Ng. F., "Distortionary Effects of States Trading in Agricultur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915, World Bank Washington 1998, <http://www.worldbank.org/html/dec/publications/workpapers/WPS1900serious/wps1915.pdf>, p.5.
- Greg Mastel, "Enforcing a China Deal on the WTO", Journal of Commerce - September 24, 1999,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5.htm>.
- "No Permanent MFN For China: Legal Issues in the Congressional Debate over Permanent MFN for China", March 1, 2000, <http://no2permanentmfn.house.gov/Barenbergstat.htm>.
- "Summary of U.S.-China Bilateral WTO Agreement", <http://uschina.org/public/991115a.html>.

참고문헌

- “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
-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
- “WTO entry to benefit U.S. companies despite problems”,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e/C000110652.asp.
-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 “China to Align Its Laws with WTO, Newspaper,”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anuary/C0001103>.
-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 “China’s Net Czar Downplays WTO Effect On High Tech Industry,”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infotech/NewsArchive/Secure/1999/november/C>.
- “Sweeping tax reforms prior to WTO entry,” 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13410.html.

“Preferential Treatment will Continue even after WTO entry, MOFTEC spokesman says,”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B200102630.asp>.

“Shanghai to align local regulations with WTO rules”, <http://www.cni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0701.asp>.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update_chi.htm.